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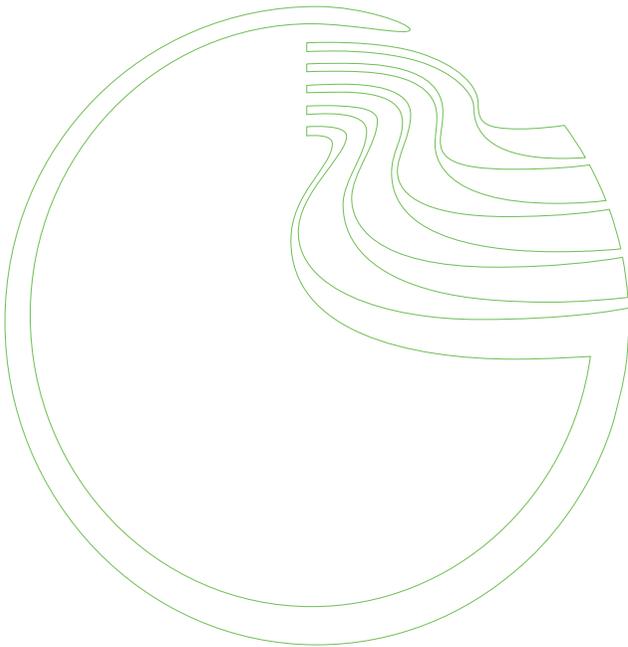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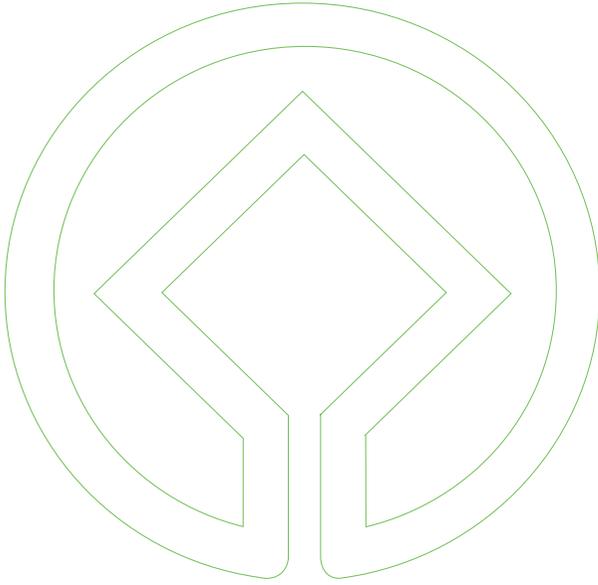


# 국제보호지역

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람사르습지

# 국제보호지역

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람사르습지



#### 일러두기

이 책에서는 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람사르습지를 총칭하여 '국제보호지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생물권보전지역이나 세계지질공원은 보호구역이 아닌 곳도 포함하고 있어서 '국제지정지역'이라는 용어가 더 정확하지만 일반적으로 '국제보호지역'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서 여기서는 그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 목 차

- 04 국제보호지역 안내
- 10 세계유산
- 54 생물권보전지역
- 100 세계지질공원
- 138 람사르습지
- 188 맺음말

# 국제보호지역 안내

## 인류의 자산, 국제보호지역

1872년에 미국에서 옐로우스톤이 국립공원으로 세계에서 처음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다. 그 이래로 국립공원 제도는 이웃 국가로 확산되면서 생물다양성, 생태계, 지질·지형학적 가치가 뛰어난 곳을 지정하여 국내법으로 보호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1967년 지리산 국립공원을 시작으로 최근인 2016년에 지정된 태백산까지 22곳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고 있다. 국립공원은 육지뿐 아니라 바다까지 아우르고 있다. 또한 필요와 목적에 따라 정부에서는 천연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 등의 보호지역을 지정, 다양한 생태계와 생물종을 보호하고 있다.

국제보호지역은 국립공원과 같이 한 나라의 정부가 아니라 지역이나 국제기구가 지정하여 보호하는 곳을 뜻한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국제보호지역으로는 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 람사르습지, 그리고 세계지질공원을 들 수 있다. 많은 나라에서 이런 국제보호지역을 지정하여 세계적인 인지도를 높이고, 관광 진흥 등 지역사회의 발전 방안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제보호지역은 언제 시작되었을까?

산업 발전과 도시의 확장으로 자연이 훼손되고 환경이 오염되면서 자연 환경이 영구적인 것이 아니며, 인간의 활동으로 인류의 소중한 자산이 사라질 수 있다는 인식이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에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자연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1971년에 ‘특히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이 이란 람사르에서 채택되고, 유네스코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하는 ‘인간과 생물권(MAB) 프로그램’이 국제 정부 간 사업으로 설립되었다. 이어서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를 위한 협약’이 1972년에 채택되어 자연과 문화를 연계한 보전이 시작되었다. 또한 유엔인간환경회의가 열리고, 환경 문제를 전담하는 유엔 산하 기구인 UNEP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21세기 들어서는 2015년에 세계지질공원이 유네스코 공식 프로그램으로 승인되었다.

1970년대부터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시작된 국제보호지역은 해당 유산을 한 나라의 것이 아닌 인류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세계적으로 보호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국제보호지역은 국제기구가 스스로 알아서 해당지역을 지정하고 보호해주는 것은 아니다. 국제기구나 협약의 회원국이 신청한 것에 대해서만 심사하고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그래서 여러 나라는 자신의 국가에 있는 자산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보호하기 위해 국제보호지역 지정에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가보다는 지자체가 국제보호지역 지정에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지역사회를 알리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보호지역에 접근하는 것이다.

## 국제보호지역의 특징과 신청방법

지역사회의 자원을 보전하면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방안인 국제보호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각 보호지역의 특징을 알아야 적합한 보호지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람사르협약에서는 물새 서식지, 어류 서식지, 희귀한 습지 등으로 중요한 곳을 람사르습지로 등록하여 협약 가입국이 습지 보전 및 교육 활동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유네스코 MAB에서는 생물다양성이 뛰어난 곳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생물권보전지역은 핵심·완충·협력구역을 갖추어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면서 동시에 그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위한 연구, 교육 등 지원 활동을 하는 지속가능발전의 학습장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보호해야 할 핵심구역뿐 아니라 논밭과 거주지 등 주변의 넓은 지역을 협력구역으로 포함하여 생태관광, 환경교육, 지역 특산물 발굴 등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을 장려한다. 그래서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로만 이뤄진 생물권보전지역은 이러한 3가지 기능(보전, 발전, 지원)을 기능을 수행할 수 없어 지정을 해제한 사례도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은 자연과 문화를 동시에 다루면서 문화경관 등 인간의 활동이 자연에 미친 영향까지 유산에 포함하고 있다. 세계유산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인류의 유산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탄자니아 세렝게티, 호주의 산호초 군락인 대보초, 에콰도르의 갈라파고스,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 등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곳은 대부분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되어 있다.

이 제도들 중 제일 마지막에 탄생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생물권보전지역처럼 보호할 곳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포함하여 하나의 공원으로 지정한다. 세계지질공원은 지질유산을 발굴하고 보호하면서 이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한다. 지질공원에서는 지질관광과 교육, 협력 업체 선정, 지질트레일 코스 운영 등 지질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이 시도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지질유산에 대한 인식의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다.

세계유산과 람사르습지는 협약에 가입한 국가만 신청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세계유산협약은 유네스코 회원국이 가입할 수 있으며, 매년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을 등재한다. 세계유산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그리고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하는 복합유산으로 이뤄져 있다. 자연유산 213곳을 비롯, 문화유산 869곳, 복합유산 39곳 등 현재 1,121곳이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되어 있다. 1,000곳이 넘는 곳이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어서 세계유산의 질 관리를 위해 신청 건수를 통제하고 있어 세계유산 신청과 등재 모두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8년에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하였고, 2007년에 ‘제주도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자연유산 목록에 등재되었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유네스코 회원국이 신청할 수 있으며, 매년 열리는 MAB 국제조정이사회

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세계유산, 세계지질공원과 달리 현장 실사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평가하며, 해당 지역이나 국가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운영하는 편이다. 2019년 7월 기준으로 701곳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1982년 설악산을 시작으로 제주도(2002년), 신안 다도해(2009년), 광릉숲(2010년), 고창(2013년), 순천(2018년), 강원생태평화(2019년), 연천 임진강(2019년) 등 8곳이 지정되어 있다. 생물권보전지역은 두 개 이상의 국가가 함께 참여하는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통한 국가 간 협력을 강조한다. 현재 유럽과 중남미 등을 중심으로 21곳이 접경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다양한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세계지질공원은 전문가로 구성된 세계지질공원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심사를 하지만, 유네스코 집행이사회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아 지정된다. 다른 제도와 달리 세계지질공원은 신청하기 이전부터 지질공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을 신청서에 담고 현장 실사를 할 때에도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자체평가서’ 양식이 있어서, 신청하는 곳은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참고할 수 있다. 지질공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곳은 ‘aspiring geopark’이라는 자격으로 2년마다 열리는 네트워크 회의에 참여하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다른 제도에 비해서 네트워크 활동을 강조하는 것도 지질공원의 특징이다. 또한 4년마다 재인증을 하여 활동을 엄격히 평가하는 것도 특징이다. 현재 147곳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로 유럽과 중국에 집중되어 있으나 중남미와 아프리카로 확장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제주도(2010년), 청송(2017년), 무등산권(2018년) 등 세곳이 지정되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몇몇 나라에서 별도의 국가지질공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람사르습지 지정과 관련된 람사르협약은 별도의 사무국을 두고 있지만 협약에 가입할 때는 유네스코에 기탁하므로 람사르습지도 유네스코와 연계되어 있다. 협약에 가입하고자 할 때 동시에 람사르습지 1곳 이상을 람사르습지 목록에 등록해야 한다. 다른 제도와 달리 람사르습지는 당사국이 신청했을 때 기술적 미비 사항이 없다면 모두 등록된다. 등록을 까다롭게 하지 않는 대신 관리에 더 중점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인류의 유산 보호에는 회원국의 자발적인 노력이 있어야 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7에 람사르협약에 가입하여 현재 대암산 용늪 등 23곳이 람사르습지에 등록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람사르습지는 비교적 면적이 작지만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 면적보다 넓은 곳이 하나의 람사르습지인 곳도 있어 크기가 아주 다양하다. 그리고 현재 등록 수도 다른 제도에 비해 가장 많은 2,342곳이다.

이처럼 국제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수가 늘어나다 보니 중복으로 지정되는 곳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주도가 생물권보전지역(2002년), 세계유산(2007년), 세계지질공원(2010년), 람사르습지(각각 2000년, 2009년, 2010년, 2015년)로 중복지정되어 있다. 고창 생물권보전지역(2013년)에도 세계유산(2000년)이 있고, 신안 다도해(2009년)와 순천(2018년) 생물권보전지역도 세계유산 신청을 해서 올해 현장 실사를 받았다. 연천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2019년)도

## <한국의 국제보호지역>

### ● 세계유산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 (2007)

### ● 생물권보전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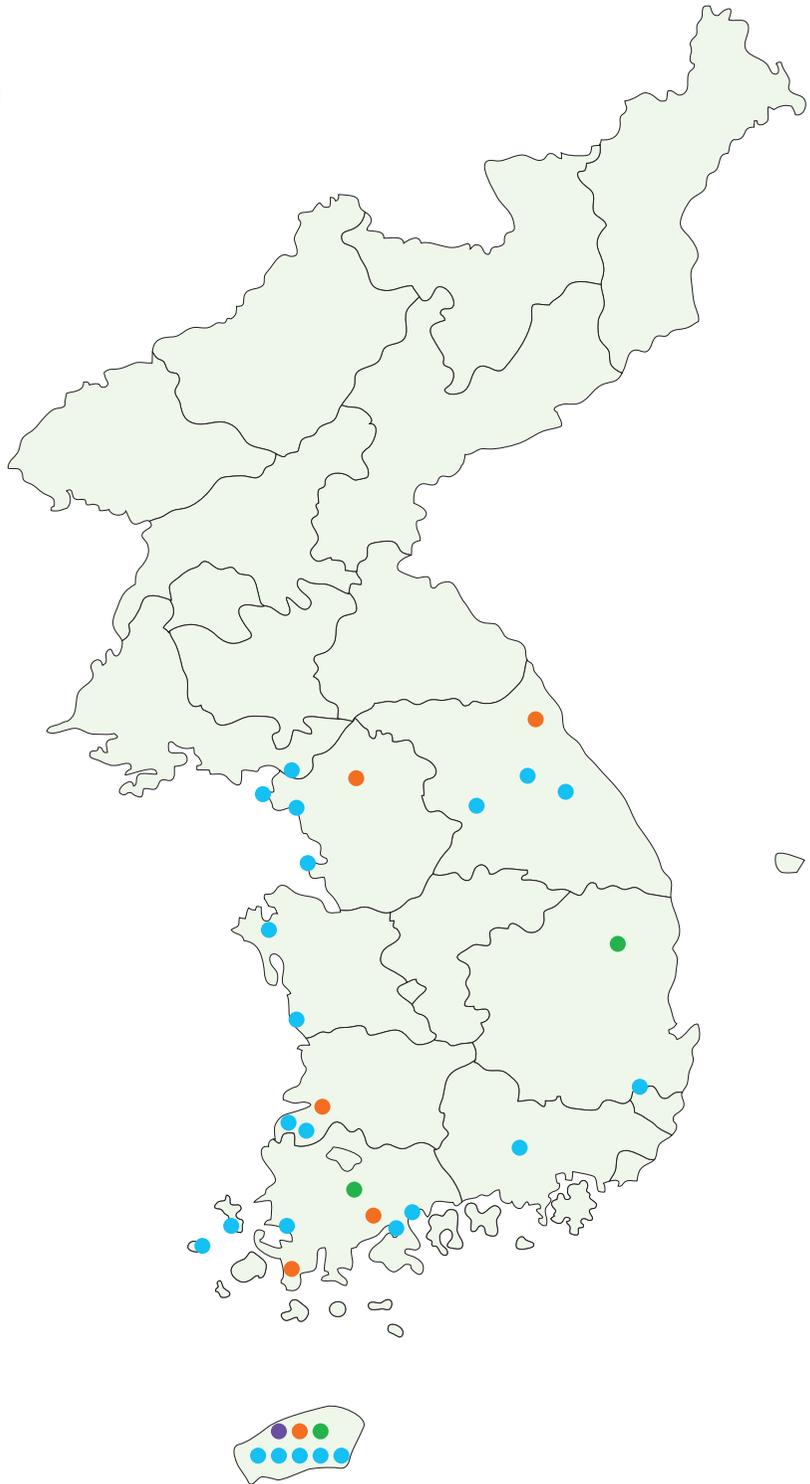
설악산 (1982)  
 제주도 (2002)  
 신안 다도해 (2009)  
 광릉숲 (2010)  
 고창 (2013)  
 순천 (2018)  
 강원 생태평화 (2019)  
 연천 임진강 (2019)

### ● 세계지질공원

제주도 (2010)  
 청송 (2017)  
 무등산권 (2018)

### ● 람사르습지

대암산용늪 (1997)  
 우포늪 (1998)  
 신안장도 산지습지 (2005)  
 제주 물영아리오름 (2006)  
 무제치늪 (2007)  
 두웅습지 (2007)  
 제주 물장오리오름 (2008)  
 오대산 국립공원 습지 (2008)  
 강화 매화마름 군락지 (2008)  
 제주 1100고지 (2009)  
 제주 동백동산 습지 (2011)  
 고창 운곡습지 (2011)  
 한강밤섬 (2012)  
 제주 숨은물뱅덕 (2015)  
 한반도습지 (2015)  
 순천 동천하구 (2016)  
 순천만·보성갯벌 (2006)  
 무안갯벌 (2008)  
 서천갯벌 (2009)  
 고창·부안갯벌 (2010)  
 증도갯벌 (2011)  
 송도갯벌 (2014)  
 대부도갯벌 (2018)



세계지질공원 신청서를 제출하여 역시 올해 현장 실사를 마쳤다.

## 중복지정지역 관리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중복 지정지역이 늘어나고 있어, 지역을 홍보하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방문객뿐 아니라 지역주민에게도 혼동을 야기하기도 한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홍보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커지고 있다.

지정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지정 목적에 맞는 관리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유네스코는 생물권보전지역의 경우 용도구역을 갖추지 않은 곳들은 핵심·완충·협력구역을 구비하여 보전, 발전, 지원 등 생물권보전지역의 세 가지 기능을 잘 수행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람사르습지 등 국제보호지역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 돕고, 자신의 지역에 적합한 제도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신청할 때 참고하는 길잡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 또한 중복지정지역 지정과 관리에 대해서도 그간의 국내외 경험을 바탕으로 몇가지 제안을 담았으니, 지자체와 연구 기관, 시민사회 등 국제보호지역과 관련된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세계유산

## 세계유산의 정의와 지정 목적

세계유산이란 1972년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세계유산협약)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orld Heritage Committee)가 인류전체를 위해 보호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를 인정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한 유산을 말한다. 따라서 세계유산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자연지역과 문화재 또는 문화지역을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계유산의 유형은 크게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문화유산은 인류가 자연과 더불어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문화적 소산으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유적, 건축물,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장소 등이 포함된다. 자연유산은 지형·지질학적, 생물학적 생성물로서 보존 또는 자연 경관상 특별한 가치가 있는 곳으로 지형·지질학적 생성물, 생물학적 군락, 멸종 위기 동식물과 서식지, 생물다양성이 뛰어난 곳을 의미한다. 복합유산은 문화와 자연의 가치를 모두 포함한 유산을 말한다.

자연유산의 대상에 대해 세계유산협약 제2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물리적 또는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그러한 생성물의 집합체로 구성된 자연의 특징물로서, 미학이나 과학적 관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것
- 과학 또는 보존의 관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지질학적·지문학적 생성물과 멸종 위협에 처한 동식물 종의 서식지로 구성된 경계가 명확한 지역
- 과학, 보존 또는 자연미의 관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자연적 장소 또는 경계가 명확한 자연지역

## 지정 수단: 세계유산협약

세계유산협약은 UN 회원국 간의 국제조약이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문화 및 자연유산을 파악하여, 보호·보전·소개하고 이를 미래 세대에 전승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세계유산협약은 문화 및 자연유산이 개별 국가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게 있어 환산할 수 없는, 즉 대체 불가능한 자산이라는 인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처럼 유산이 갖는 예외적인 특별성으로 인해 해당 유산의 일부라도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니며, 또한 해당 유산을 위협하는 요소들로부터 그 자체로 특별히 보호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세계유산협약은 잠재적인 지역들을 발굴하는 것에 대한 당사

국의 역할과 유산을 보호하고 보전할 당사국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각국은 협약 비준을 통해 자국 영토 내 세계유산을 보호할 것을 서약한다. 2019년 9월 현재 세계유산협약 가입국은 193개국이며, 우리나라는 1988년에 가입했다.

세계유산 목록은 단지 리스트가 아니며, '인류의 유산'이기에 단지 유네스코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가 협력하여 보전 및 관리하는 의무를 지닌 이러한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해 1972년 세계유산협약이 채택되었으며, 세계유산협약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세계유산협약의 이행을 위한 운영 지침(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이 1977년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채택되었다. 이후 운영 지침은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개정되어 왔는데 가장 최근에는 제41차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반영하여 2017년 28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운영 지침은 세계유산협약 이행에 대한 주요 지침을 담고 있으며, 등재 신청 과정을 비롯하여 세계유산에 대한 주요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참고 자료에 나와 있는 추천 자료 목록도 수록되어 있다.

## 등재 기준

세계유산의 등재 기준은 모두 10개 항목이다. 이 가운데 자연유산은 등재 기준 (vii)~(x)의 4개 항목 중 어느 한 항목에만 부합하면 등재 기준의 요건을 갖추게 된다. 세계유산 운영 지침 제77조에서 제시된 자연유산 관련 등재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등재 기준 (vii)  
최상의 자연 현상이나 뛰어난 자연미와 심미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을 포함한다
- 등재 기준 (viii)  
생명의 기록, 지형 발달에서 현재 진행 중인 중요한 지질학적 과정, 또는 지형학이나 자연지리학의 중요한 특징을 포함하여, 지구 역사의 주요한 단계를 나타내는 탁월한 사례다
- 등재 기준 (ix)  
육상, 민물, 해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동식물 군집의 진화 및 발달에 있어 현재 진행 중인 중요한 생태학적·생물학적 과정을 나타내는 탁월한 사례다
- 등재 기준 (x)  
과학이나 보전의 관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위협에 처한 종의 서식지를 포함하여 생물다양성의 현지 내 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자연 서식지를 포함한다

## 등재 현황

2019년 9월 현재, 167개국에 총 1,121개의 유산(문화유산 869건, 자연유산 213건, 복합유산 39건)이 등재되어 있다. 자연유산 가운데, 두 개 이상의 국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유산으로 포괄되는 월경유산은 39건이다. 연속유산은 61건이 등재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국경을 초월한 국가 간 연속유산은 11건이 있다. 지역별 자연유산 등재 건수는 아프리카 지역 38건, 아랍지역 5건, 아태 지역 67건, 유럽 및 북미 지역 65건,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지역 38건이다.

자연유산 등재 기준별 등재 건수를 살펴보면, (vii)이 적용된 유산은 119건, (viii)이 적용된 유산은 78건, (ix)가 적용된 유산은 114건, (x)이 적용된 유산은 135건으로 지형지질과 관련된 유산의 수가 가장 적고, 생물다양성 보전 가치로 등재된 건수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 등재 경향

세계유산위원회는 1978년 12건의 세계유산을 등제한 이후 매년 평균 약 28건 정도의 유산을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고 있다. 등재 시작 다음 해인 1979년 유럽 및 북미 지역의 문화유산이 25건이나 등재되었고, 그 해 총 등재 건수도 45건이나 된다. 이는 초기 10년간 등재 건수의 평균과 비교해 볼 때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이다.

1980년대 들어 1987년과 1989년도를 제외하고 한 해 유산 등재 건수가 20건대 후반으로 매해 거의 비슷한 등재 건수를 보인다. 1990년대 초반에는 세계유산이 특정 지역과 문화유산에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특정 국가에 유산 등재가 편중되는 현상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으나, 문화권(지역)별로 보면 1990년대까지도 유럽 및 북미 지역의 유산 등재 편중 현상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지역별·종류별 편중 현상을 막기 위해 세계유산위원회는 1994년 ‘글로벌 전략’을 채택하였고, 1996년 아프리카 지역과 아랍 지역의 일부에서 유산이 증가되긴 하였으나, 전체적인 유산의 등재 경향에 대한 불균형 해소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지역으로는 유럽 및 북미 지역이, 유산 종류로는 문화유산에 대한 편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2000년에는 무려 61건이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이에 2002년 제26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 해에 신청하는 유산 건수를 전체 30건으로 제한하였고, 이로 인해 등재 건수도 함께 줄어들었는데 이 해의 세계유산 등재 건수는 총 9건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은 후, 세계유산위원회는 2003년 전체 신청 건수를 40건으로 상향 조정했고, 다음 해인 2004년에는 문화유산 편중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별 신청 건수를 총 2건으로 하고 이 경우 반드시 한 건은 자연유산이나 복합유산을 포함하는 조건을 제시하였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2000년 중반 이

후 세계유산의 지역별·유산 종류별 편중 현상이 완화되었다. 2016년 터키에서 개최된 제40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2018년부터 위원회에서 매년 검토하는 유산을 40건으로 제한하고 당사국의 신청 건수도 유산 종류에 상관없이 1건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2007년 제31차 세계유산회의에서 ‘세계유산 전략목표’로 ‘5C’를 채택하였다.

- 신뢰성Credibility: 논리성에 기초하여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함
- 보전Conservation: 보전을 위해 법적 안전장치를 포함한 신청 주체의 강한 의지가 포함되어야 함
- 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 가치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충분한 능력
- 소통Communication: 이해 당사자 간의 끊임없는 소통
- 공동체Communities: 전통적 이해 당사자로서 유산의 실제적 관리 주체

이러한 전략 목표의 이행에 중점을 둔 세계유산 등재 전략은 등재 기준에 따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규명하는 전통적인 전략 이외에도 더욱 다양하고 복합적인 전략들이 수행되고 있다.

전략 목표의 채택 이후 세계유산 등재 경향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경관에 대한 개념의 확대와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과거, 경관은 자연유산 분야에 시작되었는데 주변 환경이나 유산적 요소로서의 경관을 의미했다. 그러나 문화유산 분야로 확대되면서 역사정원historic garden,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 역사도시경관historic urban landscape으로 점점 진화되고 있는 중이다. 이는 유산의 개념이 ‘기념물’에서 ‘생활유산’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문화경관은 생활 공간이기 때문에 보전·관리가 어렵고 대상 지역이 넓은 특징이 있다.

둘째, 점 단위 유산이 아닌 입체적 단위로 유산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주민들의 참여와 무형적 요소가 중시되는 경향이 있다. 유산의 보전에 있어 공간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체적 단위가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연속유산의 등재 신청이 증가되고 있다. 2013년의 경우 확대를 포함한 신청 유산 수는 36건인데 이 가운데 12건이 연속유산으로 전체의 3분의 1에 이른다. 또한 기존 등재 유산의 확장을 통한 연속유산의 등재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확장 등재된 58건 세계유산 가운데 1980년대는 5건, 1990년대는 21건, 2000년대는 32건으로 증가세를 보인다(박소현, 2013 세계유산포럼). 이러한 경향은 월경유산과 국가 간 연속유산을 장려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국가 간 연속유산은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인류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전하는 세계유산협약의 기초와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제협력 및 공유적 접근을 통해 보다 나은 관리와 보전 실천을 위한 도구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보전·관리 체계가 강조되어 등재보다는 관리와 사후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관리 계획은

세계유산 등재 이후 채택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기술하는 부분으로 최근에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기술하는 추세이며, 이행 여부는 6년마다 실시되는 정기 보고서를 통해 세계유산위원회에 보고된다. 관리의 방법으로는 문화유산에 있어서 가치의 이해와 속성의 입증 을 통해 유산을 관리하고, 가치들 사이의 대립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가치에 바탕을 둔 관리’의 개념이 대두되어 강조되고 있으며, 자연유산으로도 파생되어 생물다양성에 있어서는 ‘생태계 기반의 관리’ 또는 생물다양성과 어업행위와의 관계에 따른 관리를 의미하는 ‘공동체 기반의 관리’의 관리 개념들이 창조되고 있다. 덧붙여 미래 세대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방문객의 압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유산관광 프로그램, 모니터링 프로그램 등 유산이 갖고 있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보호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방안들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마지막으로, 등재 기준의 적용이 더욱 강화되어 비교연구가 강조되고 있다. 2014년 38차 세계유산위원회 결정에 따라 세계유산의 수가 1,000개를 넘어서게 됨에 따라 신청 유산에 대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차별성을 입증하기 위한 비교연구의 비중이 증가되고 있다. 특히 자연유산뿐만 아니라 문화유산에 있어서도 차별성을 입증하기 위해 과학적 자료에 기초한 다양한 비교·분석표를 제시 하고 있다.

표 1. 연도별 자연유산 심사 건수 및 등재 건수

구분	세계유산위원회 심사 건수	IUCN 등재 권고 수	등재 건수
2017년	8건 (신규 6건, 확대 1건, 보류 1건)	4건 (신규 2건, 확대 1건, 보류 1건)	5건 (신규 3건*, 확대 2건)
2018년	8건 (신규 6건, 확대 1건, 보류 1건)	2건 (신규 2건)	6건 (신규 3건*, 확대 1건, 복합 2건)
2019년	9건 (신규 8건, 확대 1건)	5건 (신규 4건, 확대 1건)	6건 (신규 4건, 확대 1건, 복합 1건)

\* IUCN 권고에 따르면 2017년과 2018년 각 1건씩이 보류였으나,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로 결정되어 신규로 분류됨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된 IUCN 세계유산평가 보고서를 근거로 세계유산의 등재비율을 분석해보면,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최근 3년간 자연유산의 자문 기구인 IUCN에 의한 등재 권고 수보다 등재 수가 더 많은데 이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신청 당사국의 다양한 노력으로 IUCN의 권고 내용에서 상향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표 2>는 세계유산위원회 결정 내용을 바탕으로 결정이 변화된 사항을 분석한 것으로 당사국의 노력으로 상향되는 경

우는 있으나 하향되는 경우는 없음을 보여준다. 또한 권고가 유지되는 경우는 등재 불가인 경우만 2017년과 2019년 각 2건씩만 존재하고 있었으며, 2018년 반려 권고를 받은 유산 1건의 경우, 당사국에서 신청을 철회하였다.

표 2. 자문 기구(IUCN)의 권고에 대한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 변화

구분	상향 조정					권고유지
	보류(R) → 등재(I)	반려(D) → 보류(R)	반려(D) → 등재(I)	등재 불가(N) → 반려(D)	등재 불가(N) → 보류(R)	등재 불가(N) → 등재 불가(N)
2017년	—	1	1	—	—	2
2018년	4	—	—	1	—	—
2019년	—	—	1	—	—	2

\* 2019년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오스트리아, 독일, 헝가리의 '로마 제국의 국경 - 다뉴브 라임스'는 헝가리 정부에서 계획 중인 부다페스트 인근 개발계획에 따라 유산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면서 자문 기구의 '등재' 권고에도 불구하고 '보류'로 하향 결정되었음.

## 월경유산과 연속유산

월경유산transboundary property은 둘 이상의 인접한 당사국의 국경에 걸쳐 있는, 육지나 해상에 위치한 유산을 의미한다. 이러한 월경유산의 장점 중 하나는 현재의 정치적 국경과 상관없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전체 지역과 속성을 하나의 유산에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곧 여러 나라가 공유하게 되는 유산을 통해 국가 간의 평화와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월경유산은 국가 간 다른 보호법 적용 등 하나의 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통합 보호 및 관리 체계를 수립하는 데 있어 여러 나라의 기간과 조정과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 많이 노력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 지침에서는 유산 관리를 자문하는 통합 관리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기구의 설립을 권고하고 있다.

연속유산serial property은 하나의 영역 안에 포함되지 않는 개별 혹은 별개의 일련된 유산을 의미한다. 각 구성 요소는 단일 국가 내에서 지리적으로 근거리 또는 장거리에 위치할 수 있다. 다만 각각의 구성 요소는 경관, 생태, 진화 또는 서식지 면에서 기능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각 구성 요소가 반드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는데 즉 연속유산은 그 전체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나타내야 한다(운영 지침 137항). 연속유산은 경계에 있어서도 구성 요소별로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이 설정되므로 개별 구성 요소에 대한 경계 설정 근거를 제시해야만 한다(경우에 따라서는 별개의 구성 요소가 하나의 완충구역 내에 있을 수도 있다).

국가간 연속유산transnational serial property은 연속유산의 다른 형태로 여러 구성 요소가 단일 국가에 있지 않고 여러 국가에 있다는 점만 연속유산과 다르다.

연속유산의 각 구성 요소는 전체로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각 구성 요소의 선정에 대한 명확한 논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비교·분석에 있어서도 구성 요소의 선정 논리를 설명하여야 한다. 운영 지침(137~139항)에 따라 연속유산의 일부만을 우선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는 향후 연속유산으로 신청할 기타 요소를 밝히고 이를 설명해야 한다. 또한 각 구성 요소가 기능적으로 연관되어 있는지, 모든 구성 요소를 포괄하는 전반적인 관리 체계가 있는지도 기술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연속유산은 각 구성 요소가 포함된 전체로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세계유산 목록에서도 한 건으로 간주한다.

#### • 사전 조정 절차

사전 조정 절차upstream process는 세계유산의 등재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개발도상국을 위해 도입된 새로운 개념이다. 이 과정은 자문 기관과 사무국이 신청서 작성이나 제출에 앞서 주 당사자들에게 직접 자문, 협의 및 분석의 형태로 사전 지원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것이다. 즉, 역량이 부족한 국가들에게 자문 기구인 IUCN에서 전문가를 파견하여 해당 유산을 점검하고 등재 신청에 필요한 자문을 해주는 절차를 의미한다. 2011년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10개의 시범사업들을 선정하고 2015년 제39차 위원회부터 경과 보고를 진행하였는데 나미브 사막 모래바다(나미비아), 하일지역 바위그림(사우디아라비아), 프레이벤토스 문화산업 경관(우루과이)의 3건이 등재에 성공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35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운영 지침에 공식 정의를 포함시키고, 제71항과 제122항을 개정하여 사전 조정절차를 공식적인 절차로 추가하였다.

사전 조정 과정이 모든 원조 요청 국가에게 동등하게 이용될 수 있게 보장하고, 특히 충분한 자원이 부족한 국가가 사전 조정 과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사전 조정 요청은 운영 지침 61c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과 10월 31일 접수하며, 이에 따라 우선순위가 조정된다(양식 다운로드 <http://whc.unesco.org/en/upstreamprocess/>).



**그림 1.** 다양한 유산 유형 간 이론적 차이를 보여주는 그림  
(출처: Preparing World Heritage Nominations 2nd Ed., 2011)

## 신청 절차

세계유산 등재절차는 세계유산 운영 지침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즉, 1차로 해당 유산을 잠정 목록에 올리는 과정과 그 이후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작성, 제출, 심사 및 결정의 과정을 포함하는 2차 과정으로 나뉜다(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문화재청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에 관한 규정'[2006. 03. 16. 제정 예규 제50호/2015. 08. 12. 전부개정 문화재청 예규 제148호] 참고).

세계유산의 등재는 잠정 목록을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잠정 목록은 당사국 정부에서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 적합하다고 판단한 유산 목록을 의미한다. 즉, 잠정 목록은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할 만한 잠재적 가능성을 갖고 있는 유산으로 현 단계에서는 부족하지만 신청요건을 갖추어 정식으로 신청할 만한 후보 유산의 성격을 갖고 있다. 잠정 목록의 등재는 특별한 등재 절차 없이 신청 당사국에서 심의하여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즉, 잠정 목록의 등재는 당사국의 심사에 의해 결정된다.

세계유산 운영 지침에 따르면, **잠정 목록**은 연중 언제라도 제출할 수 있다. 잠정 목록을 통해 전 세계 유산의 관리 동향 및 향후 추진 업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협약 가입국가들에게 매 10년마다 잠정 목록을 재정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잠정 목록이 중요한 이유는 등재 신청서 제출일 최소 1년 전에 반드시 잠정 목록에 등재되어 있어야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운영 지침 제65조).

### • 우리나라에서 잠정 목록 등재

잠정 목록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해당 지자체, 학회 및 단체의 발의로 정식으로 문화재청에 잠정 목록 추진의사가 접수되어야 한다. 문화재청장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세계유산 분과위원회 및 유적 해당 분과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잠정 목록에 올릴 수 있는 가치 유무를 판단하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소정의 양식에 의거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함으로써 잠정 목록을 등재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보통 연 1회 제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등재를 담당하는 문화재청에서는 최근 잠정 목록 등재 및 관리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잠정 목록의 등재 단계에서부터 실제 등재를 신청할 수 있는 유산만을 잠정 목록에 등재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또한 기존의 잠정 목록 등재 유산에 대해서도 세계유산 운영 지침의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실제 신청 노력이 없거나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명확하지 않은 잠정 목록 등재 유산은 삭제를 예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잠정 목록 등재 절차 및 내용>

일정(기한)	절차 및 내용
<b>세계유산센터에 정식 신청서 제출 1년 전까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잠정 목록 대상 유산 신청</li> <li>- 시·도지사,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소정 양식에 의거, 신청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잠정 목록 대상 유산 선정</li> <li>-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 또는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신청한 유산 중에서, 혹은 문화재청장의 직권에 의해 등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산을 선정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잠정 목록 대상 유산 조사</li> <li>-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 위원 등 관계 전문가 2인 이상으로 조사단을 구성, 서류 검토 및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잠정 목록 등재 신청 대상 확정</li> <li>- 동 조사보고서를 참고로 문화재위원회(세계유산분과, 해당 문화재분과)에서 등재 신청 대상을 확정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잠정 목록 등재 신청서 감수 및 보완</li> <li>- 시·도지사,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작성, 제출한 신청서의 내용을 검토·수정하여 확정한다.</li> <li>* 자문, 협의: ICOMOS 한국위원회[문화유산], IUCN한국위원회[자연유산], 유네스코 한국위원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잠정 목록 신청서를 유네스코 사무국에 제출(외교부 경유)</li> </ul>

세계유산의 브랜드를 활용한 홍보효과 상승으로 모든 세계유산협약 당사국들의 등재 노력도 해가 거듭될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당사국별로 국내 절차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 우리나라의 국내 절차**

2010년대에 들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잠정 목록 등재를 앞다투어 추진하였다.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국가별 신청 건수가 2건으로 제한됨에 따라 잠정 목록 등재 유산의 실제 신청을 위한 노력도 과열되었다. 이에 따라 2015년 문화재청에서는 관련 규정을 전체 개정하여 양질의 신청서 확보와 신청 유산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시켰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유산의 등재 절차는 다시 국내 절차와 국외 절차로 나뉘진다.

국내 절차는 '잠정 목록 등재 → 우선 등재 목록 선정 → 등재 신청 후보 선정 → 최종 등재 신청 대상 선정'의 4 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등재 목록 선정'은 매년 개최되는 문화재청 세계유산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되는데 국내의 잠정 목록 유산 중 잠재적 가치가 높은 2~4개의 유산이 선정된다. 우선 등재 목록으로 선정되어야만 문화재청으로부터 신청서 작성을 위한 '국가보조금' 교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9년 7월 현재 우선 등재 목록에 포함된 국내 유산은 가야 고분군이 있다(국내 신청 3단계를 통과하여 세계유산센터에 신청되었다가 철회된

경우에는 잠정 목록의 단계로 회귀된다.)

두 번째로 ‘등재 신청 후보’ 선정은 등재 신청서 제출 전년도 12월 말 동 위원회에 의해 선정된다. 이는 2~4개의 우선 등재 목록 중 신청서 작성이 진행되어 차차년도 2월까지 등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유산 중 2건을 선정하는 과정이다(2019년 7월 현재 없음).

마지막으로 ‘최종 등재 신청 대상’ 선정이 있는데 등재 신청 후보로 선정된 유산 2건 중 신청서 초안 작성이 완료되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최종 1건의 유산을 제출 전년 7월말까지 선정하는 것이다(제40차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8년 2월 2일 이후 신청 유산은 자연, 문화, 복합 등 유산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1국가 1건으로 제한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4배수에서부터 최종 신청 유산까지를 지속적으로 줄임으로써 신청 유산 과정의 투명성과 신청서 작성의 질을 높일 수 있다(해당 자료는 문화재청 홈페이지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공개([http://www.cha.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1019&mn=NS\\_03\\_03\\_04](http://www.cha.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1019&mn=NS_03_03_0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우리나라의 국내 절차>

시기	절차 및 내용
신청서 제출 3~4년 전	○잠정 목록 등재
신청서 제출 2~3년 전	○우선 등재 목록 선정(2~4건) - 잠정 목록 등재 유산 중 잠재적 가치가 높은 유산 - 우선 등재 목록 선정 이후 ‘잠정 목록 지원사업’ 대상이 되어 국가보조금 교부 시작
신청서 제출 전년도 12월 말	○ 등재 신청 후보(2건) - 우선 등재 목록 중 신청서 작성이 일정 부분 완료된 유산
신청서 제출 전년 7월 말	○ 최종 등재 신청 대상(1건) - 등재 신청 후보 중 신청서 초안 작성이 완료된 유산

국내 절차를 통해 최종 등재 신청 대상으로 선정된 유산은 영어 또는 불어로 번역 작업을 거쳐 신청서 제출 전년도 9월 30일까지 초안을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한다. 세계유산센터는 세계유산 운영 지침에 의거 신청서 세부내용이 아니라 신청서 작성 항목에서 누락된 내용이 없는지, 제시된 도면이 확인 가능한 것인지 등의 형식 요건의 완성도completeness를 확인한다. 세계유산센터의 기술 검토technical review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지만 형식적 측면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 신청서 접수 자체가 불가하게 되므로 가능한 기술 검토를 거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세계유산센터에서는 10월 31일까지 기술 검토 결과에 보완 사항을 적시하여 당사국에 전달한다. 이후 각 신청기관에

서는 보완 작업을 실시하고 통상 외교 문서로 2월 1일까지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세계유산센터의 기술 검토 이후 전문가들의 의견(문화재청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통상 2회 이상)을 수렴하여 작성된 신청서 최종본을 문화재청에 제출하고 외교부를 거쳐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한다.

제출된 신청서는 세계유산센터에서 문화유산의 경우 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와 ICCROM(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에, 자연유산의 경우에는 IUCN(세계자연보전연맹)에 평가를 의뢰한다. 통상 신청 연도 5~7월 경 자문 기구에서는 외부 검토자와 현지 실사자를 구성하여, 하반기에 현지 실사를 진행한다.

현지 실사는 자문 기구로부터 파견된 전문가 1~2명에 의해 진행되는데, 신청서에 제시된 탁월한 보편적 가치보다는 보호 관리에 중점을 둔다. 우선 현지 실사자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설정된 유산구역의 경계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유산의 경계 설정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려(deferral)의 사유가 된다. 또한 현지 실사자들은 신청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협 요인들을 확인하고 위협 요인들이 어떻게 관리되어 유산의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여기에 더하여, 지역주민들(연속유산인 경우, 구성 요소별로 지역주민들), NGO,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등재 신청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과의 협력에 대해서도 파악한다. 이는 신청 유산의 통합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기능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신청된 등재 기준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 검토자들은 신청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내용과 비교·분석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즉, 신청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과학적인 근거에 부합되는지, 비교·분석의 방법이 적절하며 누락된 사항은 없는 것인지를 검토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외부 검토와 현지 실사는 10월 말까지 마무리된다. 이후 외부 검토와 현지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 연도 하반기와 신청 연도 다음 해 상반기에 총 2회의 패널회의가 진행된다. 1차 패널회의에서는 신청 유산에 대한 종합적인 심의를 진행하고 이때 추가 자료가 필요할 경우 당사국에 신청 연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운영 지침 149항). 신청 당사국은 해당 내용을 신청 연도의 다음 해 2월 28일까지 자문 기구에 송부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보완서류는 신청서의 일부로 간주된다. 이후 2차 패널회의를 통해 도출된 최종 평가 의견(권고 사항)은 보고서로 작성되어 신청 연도의 다음 해 5월경 세계유산센터로 제출되며, 일반에 공개된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매년 6월말에서 7월 사이에 개최되며, 위원회는 자문 기구의 의견을 바탕으로 신청 유산의 등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신청 유산에 대한 평가는 ‘등재Inscription’, ‘보류Referral’, ‘반려Deferral’, ‘등재 불가Not to inscribe’의 네 가지로 구분된다. 등재는 신청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서술이 채택되었

고, 이러한 가치를 보호·관리하는 제도가 구비되었음을 의미한다. **보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유한 유산이지만 일부 내용에 대한 미비한 자료가 있는 경우이거나 통합보호 체계 부족 등 일부 내용이 부족한 경우로 3년 내에 신청서를 수정·보완한 후 재신청하면 현지 실사 없이 재심의를 진행 된다. 3년을 초과하여 신청이 이뤄진 경우에는 현지 실사부터 다시 단계를 거쳐야 한다. **반려**는 등재 신청서에 탁월한 보편적 가치 규명을 위한 심화 연구 및 비교·분석을 통한 차별성이 부족한 경우로 상당한 부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거나 설정된 유산경계가 완전성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신청서 수정 및 보완, 현지 실사 등 모든 평가 과정이 다시 수행되어야 한다. **등재 불가**는 신청서에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입증과 보호 및 관리 체계에 대한 서술 모두 채택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표 3. 세계유산 평가 및 등재 결정 개관

일정	절차 및 내용
신청 전년 9월 3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서 초안 송부(당사국 → 세계유산센터)</li> <li>○ 신청서 초안의 완성도에 대한 기술 검토(세계유산센터) : 형식 요건 충족 여부 확인</li> </ul>
신청 연도 2월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서 접수 마감(세계유산센터)</li> </ul>
신청 연도 5~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문 기구 평가단(외부 검토자와 현지 실사자) 구성</li> </ul>
신청 연도 8~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 실사 및 외부 검토</li> </ul>
신청 연도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패널회의</li> </ul>
신청 연도 다음 해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문 기구의 추가 요청 자료 신청 당사국 송부</li> </ul>
신청 연도 다음 해 2월 2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 당사국의 보완 자료 최종 접수</li> </ul>
신청 연도 다음 해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차 패널회의</li> </ul>
신청 연도 다음 해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문 기구 보고서 권고안 도출(자문 기구 → 세계유산위원회)</li> <li>- 등재, 보류, 반려, 등재 불가 4단계로 권고안 송부 및 결과 공개</li> </ul>
신청 연도 다음 해 6~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유산위원회 등재 결정</li> <li>-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자문 기구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등재 여부(4단계) 최종 결정</li> </ul>

등재 불가의 경우 한번 불가 결정이 나면 해당유산은 다시 신청할 수가 없다. 다만, 이 경우에 제출하는 대상의 명칭이 새롭게 변경된 경우에는 동일한 대상도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 잠정 목록 등재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반려와 등재 불가의 권고를 받을 경우, 세계유산위원회 이전의 평가 단계에서 해당 국가에서 등재 신청을 철회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1996년 설악산, 2008년 남해안 일대 공룡화석지, 2016년 한양도성이 현지 실사를 마쳤으나 자문 기구의 등재 불가 권고에 따라 세계유산위원회 이전에 신청서를 철회하였다.

## 신청서 작성

세계유산 신청서는 전문적인 학술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는 문서이며, 논문이나 전문 학술지와는 분명히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전문적인 용어의 사용은 자제하고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게 작성하는 게 좋다. 자문 기구의 전문가가 평가하지만 실제 등재 여부는 정부 대표들로 구성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의결되기 때문이다. 신청서 작성을 위한 기본 배경은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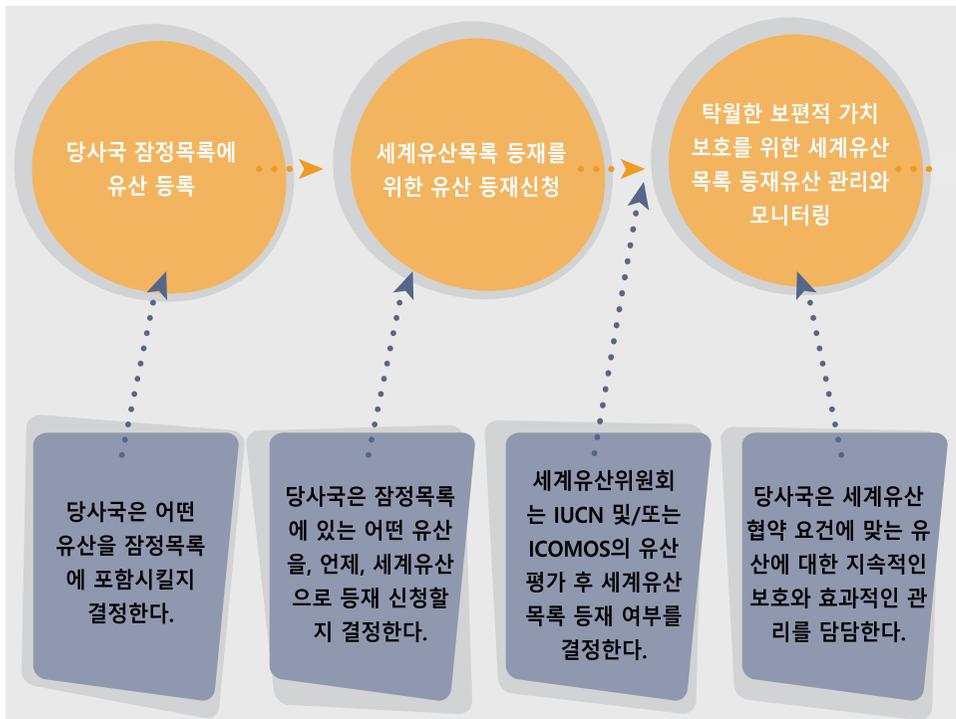


그림 2. 신청 당사국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등재과정과 주요 의무사항에 대한 다양한 절차 요약  
(출처: Preparing World Heritage Nominations 2nd Ed., 2011)

신청서 준비를 위한 단계 혹은 순서는 중요한 문제다. 이는 반드시 따라야 하며, 이해 당사자들 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참여가 수반되는 상호 작용 과정임을 인식해야 한다. 신청서의 준비 순서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신청서 준비 순서 개요

(출처: Preparing World Heritage Nominations 2nd Ed., 2011)

신청서는 장별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3장은 신청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유산에 대한 종합 설명과 등재 기준 부합성, 진정성과 완전성, 보호관리 체계, 그리고 비교·분석이 포함된다. 따라서 신청서의 작성은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확인한 후, 신청서 준비 순서에 따라 비교·분석(신청서 3.2항)을 통해 비교우위 속성을 명확하게 하고 등재 기준에 부합하는 내용(3.1.b항)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을 기초로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재수정하여 신청 유산 전체에 대한 간략한 종합 내용(3.1.a항)을 작성한다. 이후 이러한 가치를 포괄하기에 충분한 유산경계를 설정하고 이를 완전성(3.1.c항)과 진정성(3.1.d항)으로 연결하여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제안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유지시키기 위한 보호 체계와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을 포함하여 신청 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 관리 체계(3.1.e항)에 대한 핵심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3장의 기술을 마무리한다. 3.3항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기술문으로 3장을 재요약하는 부분으로 등재 이후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개요Executive Summary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기술'에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된다).

다음으로는 나머지 장의 해당 항목들을 유산의 가치와 구체적으로 연계시켜야 한다. 2.a는 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지리적 위치, 물리학적 특징을 먼저 기술하고, 등재 기준의 속성들에 대해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상세하게 설명한다. 추가적으로 연속유산의 경우에는 각 구성 요소의 특징과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서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2.b는 역사를 기술하는 부분으로 해당 유산이 유산의 속성과 그 가치를 어떻게 발전시켰는지를 설명한다.

4장은 3장에서 기술한 속성과 가치에 대한 현재의 보전 상태(4.a항)와 유산에 영향을 주는 요소(4.b항) 즉 위협 요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 상태를 기술하는 부분이다.

5장은 보호 관리와 관련된 부분으로 제시한 속성과 가치들이 어떠한 법적 체계에서 효과적으로 보호되고 있으며(5.b항),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5.c항), 또한 어떤 계획들이 시행되고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지(5.d항)를 기술한다. 덧붙여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보호를 위한 관리 계획과 통합 관리 체계와 그 체계 내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역할 분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술하는 것도 포함된다(5.e항). 보호관리에서 중요한 사항인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자원과 재정 규모(5.f항), 유산교육에 해당하는 전문지식과 훈련기관에 대한 사항(5.g항)과 유산관광과 관련된 방문객 시설과 기반시설(5.h항), 그리고 인식 증진을 위한 홍보 프로그램(5.i)에 대해 기술한다.

6장은 속성의 변화를 감지하여 적절한 대응을 위한 모니터링의 핵심지표와 항목(6.a항)과 모니터링 담당 기관(6.b항), 이전에 발간된 모니터링 또는 연구 보고서(6.c항)에 대해 기술하는 곳이다.

이처럼 장별 내용을 가능한 한 쉽게 작성하려면 세부 자료는 부록에 실고 본문에는 핵심 메시지만 담아 관련 내용이 지나치게 자세하게 설명되어 논점을 흐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나머지 장들은 상대적으로 작성하기 쉬운 부분에 해당하며, 2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 작성된 이후에 이를 토대로 마지막 단계에서 작성하는 것을 권장한다. 각 장의 세부 항목에 대한 필수 요소들과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운영 지침 부록 신청양식을 참고한다. (이 신청양식에는 150단어 이내, 1~3쪽 분량, 1:25,000 지도 사용과 같은 반드시 지켜야 할 매우 구체적인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

## 탁월한 보편적 가치 작성

세계유산은 기본적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으로 온 인류가 공동의 책임 하에 잘 보존해야 할 유산을 의미한다. 따라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개념은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된 유산들과 관련된 모든 활동과 세계유산협약 전체에서 강조되고 있다. 세계유산 운영 지침 제49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정의하고 있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란 국가의 경계를 넘고, 현재와 미래 세대의 모든 인류에게 있어 공통적으로 중요할만큼 특별한 문화 및/또는 자연적 중요성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유산의 영구적 보호는 국제사회 전체에 있어 최고의 중요성을 갖는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 목록에의 등재 기준을 규정한다.

이 개념은 1972년 세계유산협약이 제정될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2005년에서야 개념이 정립되고 이에 따라 운영 지침이 확정되었으며 시대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세계유산 신청 및 평가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왜 유산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신청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기술하는 것은 유산의 어떤 속성 attribute이 보호되어야 하는지를 명시함으로써 관리 방향을 설정하고, 유산의 보존 상태 평가에 대한 지침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신청서에 기술된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세계유산위원회 및 자문 기구에 있어서도 모니터링을 위한 필수적인 참고 사항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등재 기준 충족’, ‘완전성과 진정성’, 그리고 ‘보호와 관리’에 의해 지탱되며, 동시에 이 세 가지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평가를 위한 기준이 된다. 세계유산 운영 지침 제78조에서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완전성 및/또는 진정성의 요건 또한 충족시켜야 하며, 해당 유산의 안전장치를 확보하기에 충분한 보호 및 관리 체계를 구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유산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등재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유산은 관련된 완전성과 진정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리고 유산은 보호와 관리를 위한 요구를 충족해야 하는 것이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평가를 위한 세계유산협약 상의 평가 기준은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전 세계의 모든 우수한 유산의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제적 관점으로 이러한 유산 중에서 가장 탁월한 목록을 선택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적이거나 지역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는 유산들이 자동적으로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되는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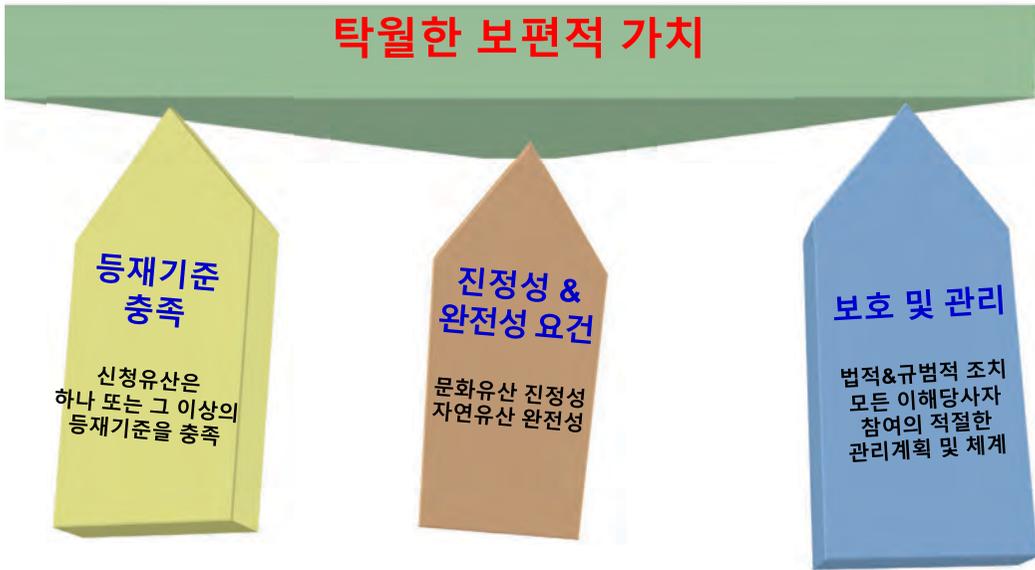


그림 4.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입증을 위한 기준과 조건

세계유산 목록에 유산을 등재하기 위한 기준과 조건은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평가와 세계유산의 보호와 관리에 대한 국가위원회의 역할을 안내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평가를 위한 기준은 10개의 등재 기준이 있으며,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조건은 완전성과 진정성으로 구분된다.

신청서의 핵심은 왜 신청 유산이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가를 입증하는데 있다. 신청서 작성 초기에 진행되는 구체적인 작업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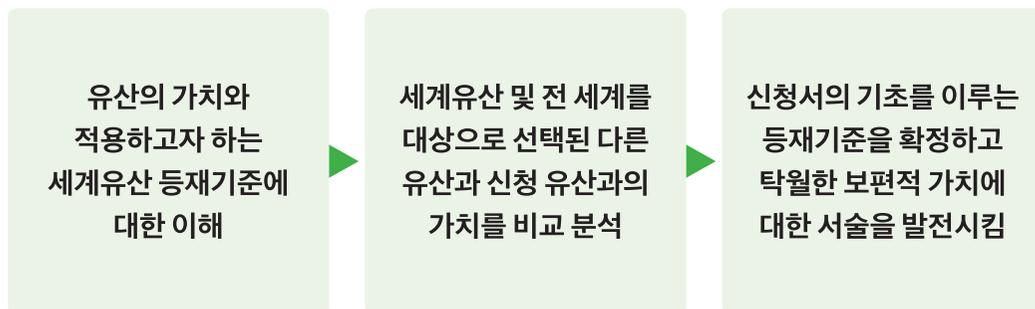


그림 5.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 입증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의 단계

(출처: Preparing World Heritage Nominations 2nd Ed., 2011)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기술은 추후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기술문에 포함되

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해하기 쉽게 짧은 내용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첫째, 유산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설명과 유산의 성격, 해당 유산이 잠정적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유, 유산의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속성에 대한 요약이 포함되어야 한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하여 등재에 실패한 경우가 많다. 그 유형을 살펴보면, 너무 광범위하거나 협소해서 그 중요성을 정의한 것이 모호한 경우, 총괄적으로 중요성에 대해 정의하지 않고 일련의 특징들을 모아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기술한 경우, 국제적 중요성 없이, 지역적 또는 국가적 중요성만으로 등재 타당성을 제시하는 경우, 적절한 국제적 비교·분석이 부족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신청 유산의 중요한 가치 입증을 위한 기술문 사례:

미스테인 큰 포인트 (캐나다, 2016년 등재, <https://whc.unesco.org/en/list/1497>)

캐나다 동부 뉴펀들랜드섬의 남동쪽 끝 부분에 있는 화석 유산인 '미스테인 큰 포인트'는 17km 길이로 펼쳐져 있는, 좁은 띠 모양의 험준한 해안 절벽이다. 본래 깊은 바다에서 융기한 이 해안 절벽은 에디아카라기(5억 8천만~5억 6천만 년)부터 형성된 거대 생물 화석군이 있는 가장 오래된 사례로 알려져 있다. 이 화석들은 지구 생명의 역사에서 중대한 분수령인 시기를 대변하는 것으로, 마이크로 생물체가 30억 년 동안 지배적 진화를 마친 후 생물학적으로 복잡한 거대 유기체로서 출현했음을 입증하고 있다.

속성이란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연관되거나 이를 표현하는 여러 측면을 의미한다. 속성은 진정성과 완전성을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며, 보호 관리의 중심이 되기에 반드시 확인되어야 한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속성의 유형에는 형태와 디자인, 재료와 물질, 용도와 기능, 전통, 기법, 관리 체계, 위치와 주변 환경, 언어, 다른 형태의 무형유산, 정신과 감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운영 지침 제82조). 자연유산의 경우에는 시각적 또는 미적 중요성, 물리적 특징물이나 자연적 서식지 범위의 규모, 물리적 또는 생태적 과정의 온전성, 자연스러움, 자연적 시스템의 온전성, 희귀종의 종수와 개체 수, 희귀성이 속성의 예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속성과 관련된 신청 유산의 가치와 연계하여 작성된 기술문은 모호하거나 불완전하거나 속성을 나열만 하거나 관련 없는 내용으로 작성되어서는 안 되며, 가치를 명확하고 종합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필수적인 특징과 속성을 선택해야 한다.

• 속성과 관련된 신청 지역의 가치가 연계된 기술문의 기술문 사례:

오가사와라 제도 (일본, 2011년 등재, <https://whc.unesco.org/en/list/1362>)

유산은 30여 개 섬이 세 그룹으로 나누어져 서로 모여 있으며, 7,393ha의 지표면을 차지하고 있다. 오가사와라 제도는 경관이 매우 다채로우며, 멸종 위기종인 오가사와라 큰박쥐(Bonin Flying Fox)와 멸종위기종인 조류 195종을 비롯한 풍부한 동물들의 서식지다. 441종의 자생식물이 자라고 있으며, 수많은 종의 어류, 고래류, 산호가 서식하고 있다. 오가사와라 제도의 생태계는 많은 고유종과 더불어, 다양한 진화 과정을 반영하고 있으며, 그것은 동남아시아와 및 동북아시아에서 기원된 식물종의 풍부한 조합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적으로 중요하다는 이유로 또는 전 세계에 하나만 존재한다고 해서 인류 모두가 보편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은 아니다. 즉, 국제적 중요성, 차별성, 유일성 등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구성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동일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 등재 기준 적용과 작성

세계유산의 등재 기준은 모두 10개 항목이다. 이 가운데 자연유산은 등재 기준 (vii)~(x)의 4개 항목 중 어느 한 항목에만 부합하면 등재 기준의 요건을 갖추게 된다(운영 지침 제77조에서 제시된 자연유산 관련 등재 기준 참조).

등재 기준 (vii)에서 중요한 사항은 뛰어난 자연미와 미학적 중요성이다. 이 등재 기준에 있어서는 명확한 평가 근거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다만 본 등재 기준은 소위 ‘wow factor’로서 작용한다. 등재 기준 (viii)의 중요 요소는 지구 역사의 주요한 단계를 나타내는 탁월한 사례다. 이러한 등재 기준 하에서 신청 유산은 주요 진행 중인 과정 또는 자연지리학적 중요성을 속성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등재 기준 (ix)에서는 생태·생물학적 과정이 중요한 요소다. 신청 유산의 속성에서 제시한 생태·생물학적 과정이 유산 지역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만 한다. 등재 기준 (x)에서는 신청 유산 지역이 풍부한 생물다양성과 위협에 처한 종의 서식지로서 역할하고 있는지가 핵심 요소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기술과 등재 기준의 선택에는 분명하고 논리적인 연관성이 필요하다. 연관성이 불분명한 경우 선택된 등재 기준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기술 내용은 선택한 등재 기준을 충족시킨다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왜 신청 유산이 그러한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설명해야 하며,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전달하는 속성을 명시해야 한다. 이는 반드시 비교·분석에 의해 비교우위가 설명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등재 기준 부합성의 근거를 설명함에 있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사실과 함께 신

청 유산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 유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그러한 속성을 느끼거나 경험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기술문과 등재 기준 서술 사례:**

**와덴해 (네덜란드·독일·덴마크 2009년 지정, 2014년 확대,**

**<https://whc.unesco.org/en/list/1314>)**

와덴해는 세계에서 가장 넓고 훼손되지 않은 조간대 모래 및 갯벌 체계로서, 이 지역 대부분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과정은 아무런 방해 없이 진행되고 있다. 1,143,403ha의 유산은 육지, 바다 그리고 담수 환경 사이에 넓은 전이지대를 포괄하며, 까다로운 환경적 조건에 특별히 적응한 생물 종이 풍부하다. 이곳은 세계적으로 철새들이 찾는 가장 중요한 지역들 중의 한 곳으로 여겨지며, 철새들이 이동하는 다른 주요 지점의 연결망과 이어진다.

• 등재 기준 (viii)

매우 역동적이고 자연적인 과정이 유산 대부분의 지역에서 방해받지 않고 진행되어 가지각색의 다양한 보호사주섬, 조수로, 갯벌, 조류세곡, 염습지와 기타 연안 퇴적 특징들을 만들어냈다.

• 등재 기준 (ix)

유산의 종 풍부성에 기초가 되는 전이지대가 육지, 바다와 담수 사이에 폭넓게 자리하고 있다. 와덴해는 생체량의 생산성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 가운데 하나이며, 유산이 부양하는 수많은 어류, 조개류, 물새가 이를 가장 명확하게 입증하고 있다. 유산은 철새에게 핵심적인 장소이며, 유산의 생태계는 와덴해 경계 너머의 야생동물 개체들도 유지한다.

• 등재 기준 (x)

염습지에는 약 2,300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해양 지역이나 기수역에서는 좀 더 많은 2,700종이 서식하며 30종의 번식 조류가 있다.

610만 마리의 조류가 동시에 머물 수 있고, 매년 평균 1,000만~1,200만 마리의 철새가 유산 지역을 거쳐 간다. 이곳은 먹이를 얻기 쉽고 방해 요소가 적은데 이러한 이유로 와덴해는 이동성 종들의 생존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와덴해는 철새의 동대서양(East Atlantic)과 유로-아프리카 이동로가 잘 작동하게 하는 필수적인 중간 기착지다. 세계적 규모의 생물다양성이 와덴해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 비교·분석 서술

등재 기준의 부합성은 전 세계 유사 유산들과 비교·분석을 통해 차별성과 비교우위 도출로 강화된다. 즉, 비교·분석은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에 신청될 수 있는 비슷한 가치를 포함하여 전 세계에서 동일한 지리문화 지역 또는 자연 유산이 없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교·분석은 세계유산 목록

록에만 국한되어 비교해서는 안 되고, 신청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관련된 전 세계의 모든 유산을 비교해야 한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비교·분석은 상호 의존적이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비교·분석을 위한 전제 조건이 되는데, 비교·분석을 통해 도출된 속성과 특징이 바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되기 때문이다. 자연유산의 경우 비교·분석을 위해 반드시 참고해야 할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 세계유산 목록
- 신청 관련 서류, 자문 기구 평가서, 세계유산 목록 상에서 이미 비교된 유산들에 대한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문
- 등재 추천이 되지 않았던 유산들의 정보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중요한 단계 또는 시초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줌
- 동일국 또는 다른 국가들의 잠정 목록
- IUCN 주제 연구
- 보호지역에 관한 데이터베이스(WDPA: [www.wdpa.org](http://www.wdpa.org))
- 유엔환경계획 세계자연보전모니터링센터(UNEP-WCMC: <https://www.unep-wcmc.org>)

비교·분석은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관련 특징이 어떻게 조합을 이루는지를 정의하는 데서 출발하여 여러 속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즉, 신청 유산에는 어떤 특별한 중요성이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비교·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비교우위에 대한 입증을 통해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결론지을 수 있으며, 동시에 비교·분석 과정을 통해 신청 유산의 보다 나은 가치가 무엇인지 확실해지며, 이를 근거로 보호 관리 체계가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비교·분석에 있어 자연유산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연속유산의 경우에도 단일 유산과 동일한 원칙으로 비교·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연속유산의 경우 중요한 또 다른 측면은 왜 연속유산의 구성 요소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선정 논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유사 유산과의 비교와 해당 구성 요소 선정의 타당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비교·분석은 총 4단계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1단계는 이미 등재된 유사한 세계유산과 비교이며, 2단계에서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사한 속성을 지닌 지역과 비교한다. 3단계는 지역 내의 유사 유산과의 비교이며, 마지막 4단계는 신청 당사국 내의 유사 유산과의 비교다. 이러한 4단계 전략을 통해 단일유산은 물론이며 연속유산에서 강조된 구성 요소 선정의 근거까지도 제시할 수 있다.

비교·분석을 할 때 고려해야 할 핵심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다(Preparing World Heritage Nominations, 2nd Ed., 2011).

- 분석은 가능한 한 엄격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항상 넓은 범위를 유지하는 한편 해당 분석의 객관성을 왜곡할 수 있는 국가적 자존심과 같은 사안은 배제해야 한다.
- 국내외에서 획득할 수 있는 최선의 학술 정보를 근거로 해야 한다. 미출간 보고서나 관리대장 같은 회색 문헌은 신청서에서 여러 논문과 출판물이 언급되는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 주제 연구는 출처를 밝혀야 하나 전체 분석을 전개하는 배경 정보로 사용한다. 관련 주제 연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 자연유산은 세계적인 기준에서 보전상의 우위를 평가하는 작업이 매우 유용하며 이는 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자연유산의 경우 국제보전협회의 생물다양성 고밀도 지역 또는 WWF의 세계생태지역 200 등). 그러나 그러한 평가에는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답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다. 비교·분석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해당 유산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독특한지를 규정할 수 있는 세계적인 기준의 평가 내용을 우선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 비교·분석의 초안이 완성되었다면 추가 정보를 획득하고 의견을 청취하며, 관련 내용을 검증할 수 있도록 국내외 여타 유수의 전문가들과 이를 공유할 것을 권한다. 자문 기구는 당사국의 요청 시, 의견 제시 혹은 동료검토를 진행할 수 있는 주요 전문가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초안은 전체 등재 신청 과정 상 중요한 단계로 인식해야 한다.

차별성이 우수하거나 유일성이 강조된 유산의 경우에는 비교·분석의 방법을 조금 달리할 수도 있다. 즉, 동일한 속성들에 대해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통해 비교우위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속성들이 전 세계 유사 유산에는 존재하지 않음을 근거로 속성이 없는 유사 유산들을 제외해가며 해당 유산의 유일성을 강조하는 방법이다.

**• 비교·분석과 결과문의 사례: 파파하노모쿠야키아 (미국 2010년 지정)**

**세계유산지역과의 세계적 비교(생물 분야)**

가. 대상 지역

- 환초(atoll)와 보초(reef) 관련: 동 렌넬 섬, 알다브라 섬, 아틀다 로카
- 해양 요소: 뉴칼레도니아 라군, 갈라파고스, 대보초, 코코스 섬, 캘리포니아 만, 하와이 화산국립공원, 통가리로 국립공원, 투바타하 보초

나. 해양의 풍부함과 고유성 비교

- 보초 어류 - 산호 - 해조류 - 무척추동물

다. 육상의 풍부함과 고유성 비교

**보초 군도의 물리적 특징에 대한 세계적 비교(지질 분야)**

가. 대상 지역: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의 군도들

나. 화산 활동 빈발지의 군도 형성 비교

화와이 섬, 소시에테 제도, 일르 마흐키스, 오스트랄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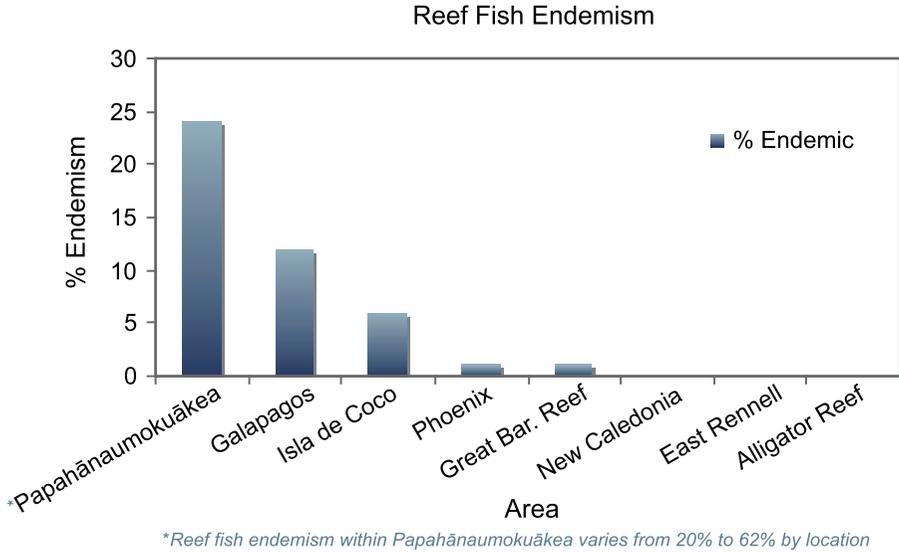


Figure 3.5: Comparison of World Heritage Site reef fish endemism rates (Source: PMNM)

(출처: Papahānaumokuākea 세계유산 신청서, 2010)

**결과문**

지구의 섬과 산호섬의 약 75%는 태평양에서 발견된다. 심한 열대성의 태평양 유역에서의 화산 섬, 낮은 보초섬들, 그리고 환초 산호섬들은 태평양 극서부의 팔라우에서부터 태평양 동남부에 있는 프랑수아 폴리네시아까지 14,800km 이상의 거리에 걸쳐 있다(Bryan 1953, Wiens 1962, Maragos and Holthus 1995, Maragos et al 1996, National Geographic 1999). 전 세계의 이러한 넓은 구역에서 하와이 군도는 유일하게 한정된 거대 해양 생태계로 인식되고 있다. 태평양의 나머지 부분에서 남동, 중앙, 북서, 남서 태평양의 지역들은 유사한 차별성을 갖고 있지 않으나, 생물학적으로 관련된 시스템과 함께 지리학적으로 분리된 지역으로 간주되고 있다(Maragos et al, 2008).

앞서 언급했듯이, 태평양에 있는 수많은 섬, 환초 산호섬들, 군도들 가운데, 갈라파고스 군도의 섬들은 생물학적 동물군을 가장 밀접하게 비교할 수 있는 곳이지만, 파파하노모쿠아키아와 자연적, 문화적, 역사적인 관계는 없다. 이 두 가지 요소는 파파하노모쿠아키아가 대체할 수 없는 장소라는 사실에 대한 차별성을 가진 예다. 상당한 수준의 보호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타 태평양 지역들

은 팔라우 관할권과 중앙 태평양 지역 내의 피닉스 섬 보호지역의 무인 산호섬과 낮은 보초섬 지역의 소수의 섬들과 보초들뿐인데 피닉스 섬 보호지역의 무인 산호섬과 낮은 보초섬들은 최근 키리바티 정부에 의해 세계에서 가장 넓은 해양 보호지역 중 하나로 지정되었다.

중요성과 해양 지역으로서 파파하노모쿠아키아와 근접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세계유산 유물들은 필리핀의 투바타하 보초와 호주의 대보초, 뉴칼레도니아의 초호, 벨리즈 보초가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유산들은 고립된 일련의 섬보다는 거대한 대륙 지역의 거초와 비교될 수 있으며, 저마다의 대륙적 암상과 호주 및 중미의 대양을 향해 경사진 지역과 보다 근접성이 있다. 이러한 근접성으로 인해, 인접한 거대 대륙 육지부로부터 초래되는 유출수와 퇴적 작용뿐만 아니라 농업에서 비롯되는 해충과 영양분과 같은 것들이 이러한 지역들에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군도에 있는 무인도이자 왕래 없는 지역으로서 파파하노모쿠아키아는 거초와 연계된 어떤 스트레스 요인도 없다. 덧붙여, 대보초와 벨리즈 보초는 다른 육지부와의 근접성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역의 대표성이 해양 동물군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파파하노모쿠아키아에서는 특별하고 높은 지방 고유도를 지닌 동물군이 발견된다. 대보초 해양공원 당국은 공원의 99% 이상에서 통제된 관광을 허락하고 있는데 파파하노모쿠아키아에서는 이와는 차별적으로 전체 지역에서 극히 일부분인 미드웨이 환초에서만 허락되고 제한된 여가 활동이 허가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출입이 금지된다.

## 완전성 서술

완전성integrity은 자연유산이 갖고 있는 속성의 전체성wholeness 및 온전성intactness을 가능하는 척도다. 그러므로 완전성의 요건에 대한 진단에는 당해 유산이 1)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표현에 필요한 요소 일체를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는지, 2) 본연의 중요성을 부여하는 특징과 과정을 완벽하게 구현할 만큼 어느 정도 충분한 규모인지, 3) 개발 또는 방만으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어느 정도 문제를 앓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연유산의 경우에는 생물·물리학적 과정과 지형적 특징이 상대적으로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충분한 규모나 생물학적 다양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완전성은 유산의 유기적인 완결성에 관련된 요소다. 유산의 전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요소들이 충분히 구비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유산의 일부 요소는 그 중요성이나 가치가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전체의 일부분으로서 의미가 있다면 유산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완전성의 개념은 유산의 관리 계획의 수립이나 운영에 있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완전성은 개별 유산의 의의를 종합적인 맥락에서 정의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완전성은 모든 유형의 유산에서 요구되는 것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전달하는 속성의 완성도와 온전함을 의미한다. 완전성에 대한 기술은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전달하고, 그 가치

를 상실했거나 관련 특징이나 속성을 유산 지역이 모두 포괄하고 있다는 것과 현재의 보전 상태가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이며, 그 가치가 위협받고 있지 않음을 설명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자연 유산에서 특히 완전성의 조건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설정된 유산구역이 등재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속성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등재 기준 (x)에 해당하는 멸종 위기종을 신청한 경우, 서식지, 채식지, 번식지를 유산구역이 모두 포괄하고 있는지를 기술문에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완전성의 유산의 경계 설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또한 자연유산에서는 자연적 온전성(natural intactness)과 함께 보호 및 관리에 의한 보전적 온전성(conservative intactness)에 대해서도 기술하는 것이 좋다.

**• 완전성 기술의 사례: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신청서(2019)**

신청 유산의 유산구역은 복잡한 퇴적시스템에 의해 형성되는 높은 지질다양성, 멸종위기종 및 고유종 등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지와 갯벌 생태계 등과 같은 신청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구성하는 속성들을 고려하여 경계를 정하였다.

따라서 신청 유산의 유산구역은 독특한 생태학적 군집의 진화를 보여주는 모래, 펄, 암반 등 다양한 서식지와 이를 기반으로 서식하는 멸종 위기 철새, 고유종을 포함한 높은 생물다양성 그리고 퇴적에 영향을 주는 조수로, 조류세곡 등 지질지형학적 특징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더욱이 연속유산으로서 신청 유산은 퇴적물의 발원지에서 최종적으로 퇴적물이 쌓이는 최종퇴적 지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독립적인 단일 퇴적물 순환계에 해당된다. 신청 유산의 구성 요소는 각각 독특한 갯벌 순환과 퇴적 양상을 보이는 퇴적시스템을 지닌 네 가지 유형과 다양한 펄갯벌 퇴적 형성 결과를 포함하는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신청 유산은 인간의 활동으로 영향을 받은 지질학적 및 생태학적 요소들이 겨울의 강한 계절풍과 여름철 태풍 등으로 인해 다시 원래 상태로 복원되는 등 여러 보전 노력을 통해 온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 보호 및 관리

세계유산은 유산 속성의 보호를 위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존재해야만 한다. 보호조치는 당사국의 보호법, 조례, 규정 등 명문화되어 보호와 관리가 수행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보호지역은 신청 유산의 속성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충분히 넓은 지역이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보호지역의 설정 즉, 유산의 경계 설정은 완전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서는 관리 계획의 마련이 중요하다. 유산의 보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법적 보호 체계와 관리 체계를 갖추고 효과적 시행도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다수 관람자에게 개방되는 유산의 관리와 그 보전에 대한 적절한 행정적 체계의 증거를 제출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유산의 등재에 있어서 관리 계획의 구비 여부 및 충실성 정도는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고 있다.

세계유산은 등재 이전에도 중장기 관리 계획이 구비되어야 하며, 등재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관리 계획에는 이해관계자의 참여, 계획 주기와 집행, 평가 및 환류, 자원 배분, 재난 관리 등의 내용들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세계유산 관리에 있어서 보전 계획 개념을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관리 계획은 단순히 등재 유산의 유리에 관한 사항뿐 아니라 지역 주민의 참여, 교육·홍보, 관광, 도시 계획과 경관 관리 등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도구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최근 관리의 개념은 과거보다 발전하여 ‘가치에 바탕을 둔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치에 기반한 관리란 가치의 이해와 속성의 입증을 통해 유산을 관리하고, 가치들 사이의 대립을 관리하는 것이다. 즉, 가치를 먼저 이해하고 그러한 이해를 기반으로 가치를 입증하고, 가치를 포함하고 전달하며, 구체화하는 ‘속성’을 기반으로 유산을 관리하고 가치들 사이의 대립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자연유산의 관리와 관련한 IUCN 자원 매뉴얼 IUCN Resource Manual Series은 ‘세계자연유산의 관리(Managing Natural World Heritage, <http://whc.unesco.org/en/managing-natural-world-heritage/>)가 있다.)

## 정기 보고

정기 보고(Periodic Report)는 자기보고의 과정이며 가능한 한 각 지역의 당사국들이 주도해야 한다(운영 지침 제200조). 정기 보고는 세계유산유산 협약 적용에 대한 당사국의 평가 제공과 등재된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유지에 대한 평가, 변화하는 환경과 보전 상태에 대한 최신 정보 제공, 그리고 협약 이행과 세계유산 보전에 대한 당사국 간의 지역 협력 및 정보, 경험 교류의 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기 보고는 당사국 내에서 세계유산협약이 현장의 관리자까지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이며, 실질적으로 협약의 보전·관리 개념들을 현장에서 이행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구다. 정기 보고는 1) 정기 보고를 하는 행위 자체를 통해서 국가의 주무 부처에서부터 현장 관리자까지 역량이 강화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2) 정기 보고를 통해서 동일한 지역권 내에서 많은 국가가 유사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더욱 공동의 입장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온라인 틀(<http://whc.unesco.org/en/periodicreporting/>)을 활용하여 6년 주기로 작성한다. 2차 정기 보고(2008~2015) 이후 정기 보고 반영 기간(2015-2017)을 거쳤으며, 전문가 그룹의 권

고에 따라 3차 정기 보고는 2018년 아랍국가들의 보고를 시작으로 아프리카 지역, 아태 지역,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지역, 유럽과 북미의 순으로 진행된다.

정기 보고서는 2개의 섹션으로 구분되어 있다. 섹션 I 은 당사국이 채택한 법과 행정 규정, 그리고 협약 적용을 위해 취한 다른 조치들, 해당 분야에서 획득한 구체적인 경험을 다루는데 이것은 특히 협약의 구체적인 조항에 명시된 일반적인 의무와 관련된 사항이다. 섹션 II는 당사국 영토 내에 있는 특정 세계유산의 보전 상태를 다루는 부분이다. 정기 보고서도 세계유산 신청서와 마찬가지로 문서이며, 섹션 I 은 주로 당사국의 주관 부처와 협력에 의해 작성되고, 섹션 II는 해당 유산의 관리자(전문가)에 의해 작성된다.

표 4. 정기 보고서 양식과 주요 작성 내용

<b>섹션 I</b> - 당사국의 세계유산협약 적용과 관련된 것으로 당사국이 채택한 입법, 행정 관련 규정과 이 협약을 적용하기 위해 채택한 그 밖의 활동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 - 기존 정보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해당 분야에서 습득한 구체적인 경험 내용을 제공	
<b>1장 서문</b>	- 당사국 명과 협약 비준 또는 수락 연도를 제시 - 보고서 섹션 I 의 준비에 참여한 집단과 기관에 대한 정보를 기술
<b>2장 다른 협약, 프로그램, 권고와의 시너지</b>	- 다자간환경협정을 비롯해 기타 유네스코협약, 프로그램, 권고 간 잠재적인 시너지에 대한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함 - 당사국은 세계유산위원회가 채택한 정책의 이행 정도에 대한 내용도 기술하여야 함
<b>3장 잠정 목록</b>	- 잠정 목록의 준비 과정, 사용된 도구와 지침, 잠정 목록에 등재된 유산의 다른 협약들과의 잠재적 시너지효과, 세계유산과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2015)에 따른 해당 과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기술
<b>4장 등재 신청서</b>	- 세계유산 목록 등재를 위한 유산 신청 과정, 사용된 도구와 지침, 세계유산과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에 따른 해당 과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기술
<b>5장 일반정책 개발</b>	- 유산의 보호와 보전을 위한 법적 체계와 그 효율성에 대한 정보를 기술
<b>6장 유산의 각종 목록</b>	- 국가적 중요성을 갖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목록의 현황과 이를 작성하는 데 활용된 과정에 대한 정보를 기술
<b>7장 보호, 보전, 제시를 위한 지원 현황</b>	- 자연유산의 확인, 보호, 보전, 제시를 위해 당사국 영토 내에서 제공되는 지원, 그리고 관련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협력에 대한 정보를 기술

<b>8장</b> 재정 현황과 인적 자원	- 자연유산의 보전과 보호를 위한 자원의 이용 가능성과 적절성에 대한 정보를 기술
<b>9장</b> 역량 개발	- 세계유산 역량 전략(2011)에 따라 유산의 보전, 보호, 제시와 관리 분야의 역량 구축에 대한 정보를 기술
<b>10장</b> 세계유산 관련 정책과 자원 조달	- 세계유산의 보호, 보전, 제시와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법안, 정책, 조치에 대한 정보를 기술
<b>11장</b> 국제협력과 자금조성	- 자연유산 분야에서 다른 당사국과 협력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기술
<b>12장</b> 교육, 정보, 인식 증진	- 의사결정자, 유산 소유자, 일반인, 특히 젊은 층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호와 보전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해 행한 조치를 기술
<b>13장</b> 결판과 권고 실행	- 질문에 제시된 답변을 기준으로 섹션 I 의 각 항목에 근거하여 주요 결론을 도출 - 당사국의 세계유산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기술의사결정자, 유산 소유자, 일반인, 특히 젊은 층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호와 보전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해 행한 조치를 기술
<b>14장</b> 세계유산협약 이행 모범 사례	- 당사국에서 이행한 세계유산 보호, 확인, 보전, 또는 관리의 모범 사례가 있을 경우 해당 정보를 기술
<b>15장</b> 정기 보고 활동 평가	- 정기 보고 이행 양식과 내용, 과정을 평가 - 여기에는 정기 보고 목적 달성의 정도, 생산된 자료의 이용 방법, 응답자들에게 주어진 훈련과 지침이 포함됨

## 섹션 II

- 특정 세계유산의 보전 상태를 기술
- 유산 차원에서의 협약 이행에 대한 정보를 개별 유산별로 작성

<b>1장</b> 세계유산 자료2장 세계유산 보호 근거가 되는 기타 협약/ 프로그램	- 유산에 대한 기초 정보(유산명, 등재 연도, 지리적 좌표, 지도, 소셜미디어의 존재) 또는 이와 관련하여 유효한 기존의 정보를 기술 - 섹션 I 을 준비하는 데 참여한 조직 또는 주체에 대한 정보 기술
<b>2장</b> 세계유산 보호 근거가 되는 기타 협약/ 프로그램	- 해당 유산과 관련된 다른 협약과 프로그램(유네스코와 기타)들의 시너지 - 이들과 연관된 협약과 프로그램들 사이의 기존 협력과 통합의 정도에 대한 정보를 기술

<b>3장</b>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기술과 속성의 정의	- 속성과 현재 상태, 지난 정기 보고 주기 이후 상태의 경향에 대해 기술
<b>4장</b> 유산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	- 해당 유산에 현재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거나 향후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성이 큰 다양한 요소에 대한 정보를 기술
<b>5장</b> 유산의 보호와 관리	- 관리의 실제 문제들 - 유산과 그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보호, 관리, 모니터링의 효율성에 대한 정보를 기술
<b>6장</b> 재원과 인적 자원7장 학술연구와 연구 프로젝트	- 사용할 수 있는 자원, 관리에 요구되는 예산의 적절성, 그리고 유산을 위해 사용 가능한 인적 자원과 역량의 수준에 대해 기술
<b>7장</b> 학술연구와 연구 프로젝트	- 해당 세계유산의 가치와 속성과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는(과학적, 전통적) 지식의 적절성과 관리상 요구 내용 -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이해를 높이는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기술
<b>8장</b> 교육, 정보, 인식 증진	- 교육, 정보, 해설과 인식 증진을 위한 일반적 활동 - 해당 유산에서의 유산교육과 인식 증진 프로그램의 존재 여부와 효율성 기술

## 대응 모니터링

대응 모니터링(Reactive Monitoring)은 사무국인 세계유산센터와 유네스코의 다른 부서들, 그리고 자문 기구들이 위협을 받고 있는 특정 세계유산의 보전 상태에 대해 세계유산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다. 당사국에서는 이를 위해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거나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또는 보전 상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구체적인 보고서와 함께 영향성 연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미 등재된 유산은 위원회 검토 이전 연도 12월 1일까지, 위협에 처한 유산 목록에 있는 유산과 긴급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유산 검토 해당 연도의 2월 1일까지 표준 양식에 따라 사무국을 통해 위원회에 제출한다.

위원회는 세계유산 목록 삭제를 방지하기 위해 당사국에 최대한 기술적 협력을 제공함과 동시에 자문 기구 등을 통해 보전사업의 진행 과정을 감독한다. 이러한 대응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는 등재 유산의 위협에 처한 유산 목록 등재와 삭제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 위험에 처한 목록과 삭제

등재와 마찬가지로 세계유산의 삭제는 세계유산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진행된다. 운영 지침에 따르면, 등재된 유산에 대한 세계유산 목록에서의 삭제 절차는 위험에 처한 유산 목록 등재와 정기 점검 결과에 따른 최종 삭제의 2단계로 구분된다.

해당 유산이 심각하고 구체적인 위험으로 인해 위협을 받거나 유산의 보전을 위해 중대한 활동이 필요한 경우 세계유산위원회는 해당 유산을 위험에 처한 유산 목록에 등재할 수 있다. 즉,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목록은 '주요 작업이 필수적이며 세계유산협약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보전물(협약 제14조 4항)'을 의미하는데 위험에 처한 유산은 국가위원회에서 위험 요소를 2~3년 이내에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며, 처리하지 못했을 때에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삭제를 결정할 수 있다. 단, 위험 목록 자체가 블랙리스트는 아니다.

위험에 처한 유산은 크게 '확인된 위험 유산'과 '잠재적 위험 유산'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확인된 위험 유산은 특정적이거나 입증된 촉박한 위험에 직면한 유산으로 예를 들어 본질 또는 구조의 심각한 악화나 등재된 종 개체수의 심각한 저하가 발견되었을 때를 의미한다. 잠재적 위험 유산은 고유 특징에 대한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위협에 직면한 것으로 예를 들어 지역 개발 계획 또는 군사적 대립으로 인한 위협의 영향을 주거나 (공고는 정부의 불안정으로 5개의 모든 유산이 위험에 처해 있음), 관리 계획 또는 체계가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것과 같이 정부의 지원 자체가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매년 평가를 통해 위험에 처한 유산을 결정하며, 2019년 9월 현재 위험에 처한 유산은 53건이 있다. 이 가운데 자연유산은 17건으로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아프리카 12건, 아태지역 2건, 유럽 및 북미 1건,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지역 2건이다. 아프리카 지역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데 이는 예산 부족과 내전 등 불안정한 국가 상태로 인해 유산의 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세계유산위원회가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해당 유산이 확실한 위험과 잠재적인 위험의 기준에 해당해야 하며, 기준은 <표 5>와 같다.

<표 5>의 기준에 해당하는 유산에 대해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매년 심의를 실시하고 출석 위원국 2/3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위원회는 필요한 시정조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당사국에 제안하고 당사국은 위험에 처한 유산 목록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기금의 상당 부분을 위험에 처한 유산의 보전 상태 개선을 위한 지원금으로 할당하고 있다.).

위험에 처한 유산은 매년 보전 상태를 점검받게 된다. 정기점검 결과를 토대로 추가 조치 필요 여부, 위험 요소가 제거되어 위험에 처한 유산 목록에서의 삭제 여부, 세계유산 목록 등재 결정에 근거가 된 특징을 상실할 정도로 훼손된 경우 세계유산 목록에서 삭제할지를 당사국과 협의하여 결정하게 된다.

표 5. 위험에 처한 세계(자연)유산 목록 등재 기준(운영 지침 179조~180조)

등재 기준	등재 기준
<b>확실한 위험</b>	유산이 다음과 같이 구체적이고 이미 확인된 즉각적인 위험에 직면한 경우  i) 유산에 대한 법률적 보호의 사유가 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유한 멸종위기종 또는 기타 종이 질병과 같은 자연적 요소나 수렵 같은 인위적 요소로 인해 개체 수가 현저히 감소 ii) 정주지, 유산의 중요 부분을 수몰시키는 저수지 조성, 살충제 및 비료 사용 등 산업 및 농업 개발, 주요 공공사업, 채굴, 오염, 벌목, 땃감 수집 등으로 유산의 자연미나 학술적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 iii) 유산의 경계나 상류 지역에서 유산의 완전성을 위협하는 인간의 침해
	유산이 다음과 같이 그 본질적 특성에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에 직면한 경우  i) 해당 지역의 법률적 보호 지위의 변경 ii) 유산 지역 내 또는 유산에 위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계획된 재주주 또는 개발 사업 iii) 무장 충돌의 발발 또는 위협 iv) 관리 계획이나 관리 체계의 부족, 부적절성, 불충분한 이행 v) 기후, 지질 또는 다른 환경 요소들의 위협적 영향

세계유산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 관련 유산을 세계유산 목록에서 삭제하기 위한 절차를 채택하였다.

- 해당 유산이 세계유산 목록 등재 결정 근거가 된 특징을 상실할 정도로 훼손된 경우
- 등재 신청 당시 이미 세계유산의 본질적인 특성이 인간의 행위로 인해 위협받고 있었던 경우
- 그리고 신청 당시 당사국이 제안한 필요한 시정조치가 제시된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

상기에 해당하는 정보가 당사국이 아닌 정보원로부터 입수한 경우 세계유산센터는 관련 당사국과의 협의하에 정보의 출처와 내용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검증하고 해당 당사국의 의견을 구한다. 또한 세계유산위원회는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검토하여 결정하는데 출석 위원국 2/3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세계유산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당사국과 협의하지 않는 한 관련 유산을 세계유산 목록에서 삭제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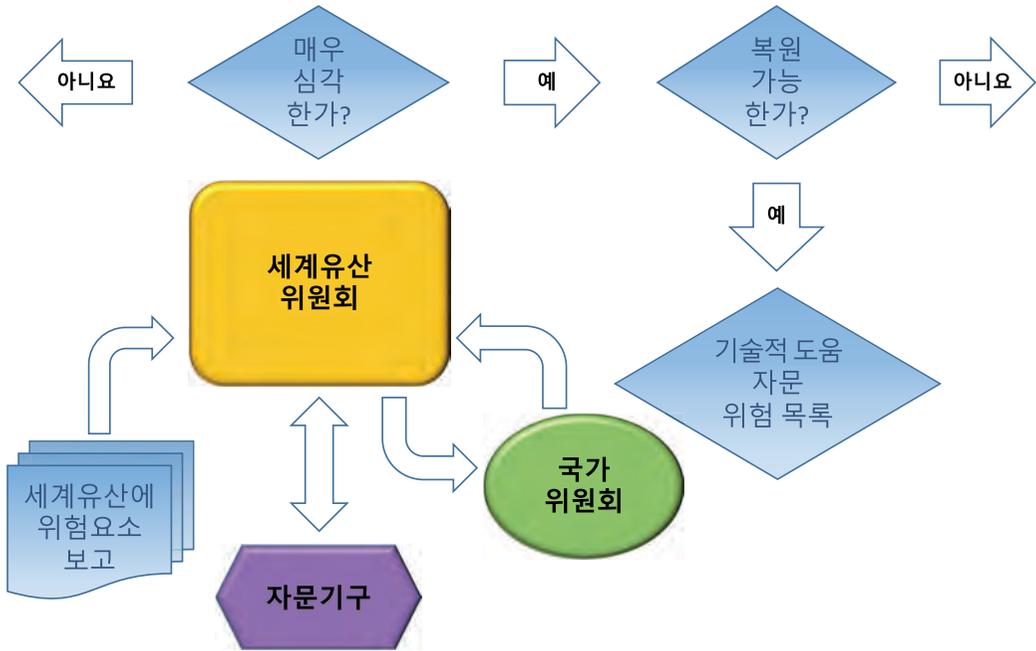


그림 6. 위험에 처한 유산 목록 등재에 대한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 과정

지금까지 삭제된 유산은 오만의 자연유산인 아라비아 오릭스 영양 보호지역(2007년)과 독일의 문화유산인 드레스덴 엘베 계곡(2009년)이 있다. 아라비아 오릭스 영양 보호지역은 1994년 등재 당시 사막의 생물지리학적 지대로 위험에 처한 종인 아라비아 오릭스 영양의 유일한 방목지대로 다양하고 독특한 사막 생태계의 복원 과정을 잘 나타내고 있어 등재 기준 (x)에 부합되었다. 그러나 그 지역에서 석유가 발견된 이후 오만 정부가 보호지역을 90%까지 줄였으며, 이로 인해 서식지는 파괴는 물론이며 밀렵으로 인해 개체 수가 450개체에서 65개체로 급감하였다. 겨우 4쌍의 번식 쌍은 희귀 멸종위기종인 아라비아 오릭스 영양의 미래 생존 가능성을 불확실하게 만들었다. 세계유산 위원회는 당사국과 광범위한 회의를 거쳤으나 보호지역의 일방적인 축소와 탄화수소 탐사 계획의 진행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완전성이 훼손된다고 판단하여 삭제를 결정하였다. 이는 세계유산제도가 만들어진 이래 첫 번째 삭제 사례다.

## 세계유산 관리

세계유산의 준비 단계에서 등재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세계유산 등재 추진의 또 다른 의미 가운데 하나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청 유산의 가치에 대한 보호 체계와 관리 체계가 강화된다는 것이다. 세계유산의 등재 과정에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참여와 이를 통한 협치 체계의 확립은 심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이다. 세계유산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과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지역 주민: 지역 주민은 단순한 이해 당사자가 아닌 지역의 소유자이며 동시에 신청 유산의 보호 및 관리에 있어 직접적이고 최우선적인 핵심 주체
- 정부 기관: 보전을 위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예산 및 행정적 지원
- 지방정부: 보호 및 관리의 실질적인 이행을 담당하고 예산 집행과 행정적 지원
- 대학 및 연구 기관: 유산의 가치를 입증하고 보호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과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과학적인 자료 제공
- NGO: 유산의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특히 지역주민과의 접촉을 통한 인식 증진 프로그램 운영)
- 유산기업(지역기업): 유산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후원
- 관광객: 유산을 느끼고 보전에 대한 인식 증진과 후원 및 모니터링 참여

다양한 이해 당사자를 입증하고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 포함하는 것은 신청 유산에 대한 이해와 미래에 대한 책임을 이들과 공유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동시에 이는 투명성과 책임감을 증진하여 이후 평가 과정에서 타당성과 진정성을 입증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유산 신청을 위한 전담 기구를 운영하는 것은 세계유산 신청매뉴얼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세계유산의 보호 및 관리의 컨트롤 타워로서 세계유산 신청에 있어 전담 조직이나 전담 기구의 유무에 따라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필수 요소가 되었다. 최근에는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보호는 물론이고 지속적 관리에 대해 이전보다 강화된 조치를 요구하는 추세다. 특히 이러한 전담 기구는 등재 과정에서 통합 관리를 위한 충분한 연습이 실행되고, 등재 이후에는 곧바로 세계유산 관리를 위한 전담 기구로 전환되어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관리 기구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과 소통을 통한 상향식 정책 결정 구조를 갖는 것이 필요하며, 지역 주민들에 의한 실제적 관리, 전문가들에 의한 학술연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과 행정지원과 같은 구성원들의 역할과 실제적 이행이 중요하다. 관리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은 크게 관 주도형 민관 협력체, 관주도 민간 전문 기관 위탁형, 민관 협력형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별 장단점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관리 기구 유형별 장단점

구분	장점	단점
관 주도형 민관협력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해 당사자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 계획 작성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니터링 등 학술 용역 필요</li> <li>•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한 많은 시간 필요</li> <li>• 즉각적인 자료 대응이 어려움</li> </ul>
관 주도 민간전문기관 위탁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지식 기반의 학술자료 생성 가능 (즉각적인 자료 대응 가능)</li> <li>• 다양한 관리 사업 가능</li> <li>• 전문지식 기반의 학술자료 생성 가능 (즉각적인 자료 대응 가능)</li> <li>• 다양한 관리 사업 가능</li> <li>• 참여 기관 간 및 이해 당사자 간 의견 조율 용이</li> <li>• 예산 절감(사업비 직접 집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많은 예산 소요(간접비 소모율 높음)</li> <li>• 민관학 간 의견 조율에 많은 시간 소요</li> </ul>
민관협력체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지식 기반의 학술자료 생성 가능 (즉각적인 자료 대응 가능)</li> <li>• 다양한 관리 사업 가능</li> <li>• 참여 기관 간 및 이해 당사자 간 의견 조율 용이</li> <li>• 예산 절감(사업비 직접 집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 파견에 따른 참여 기관의 부담</li> </ul>

관리 기구(또는 추진 기구)의 설립을 위해서는 유산을 직접 관할하는 지방정부의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실무협의회에서는 사무국의 위치 및 조직 구성, 예산 규모 및 지원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합의된 결과에 따라 법인 형식의 관리 기구 설립을 위한 발기인 대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중앙정부의 승인을 얻는 과정이 진행된다.

관리 기구의 조직은 관리위원회, 사무국, 자문위원회, 지역주민협의체 네트워크, 그리고 연구팀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 관리위원회는 최고의결기구로서 유산의 통합 관리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최종 결정, 예산 승인 및 결산 심의의 역할을 담당한다. 관리 기구의 주요 사업에 대한 원활한 예산 지원 등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결정 권한이 있기에 관리위원회의 임원 중 당연직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고위직(인사권과 예산 집행 권한이 있어야 하며, 대한민국의 경우 기초단체는 기초단체장)이 맡는 것이 통합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실무위원회는 추진 전략의 수립 및 이행, 추진 정책의 발전, 등재사업추진 사업의 수행 감독 등 추진 사업 및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실무위원회의 당연직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사업 의결권을 가진 직

급 광역단체의 국장급, 기초단체의 과장급)이 적당하며, 선임직에는 분야별 전문가가 포함된다. 특히, 실무위원회에는 참여 기관의 지역주민 대표를 포함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틀 구조를 정립하여야 한다. 사무국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사무국장을 맡고, 전문 지식을 갖춘 자체 직원은 연구기획팀에 두어 연구사업에 대한 관리와 다양한 등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행정지원팀은 참여하는 각 지방정부의 파견직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행정 전문성을 높임과 동시에 참여 지자체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협력 체계를 강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조직 구성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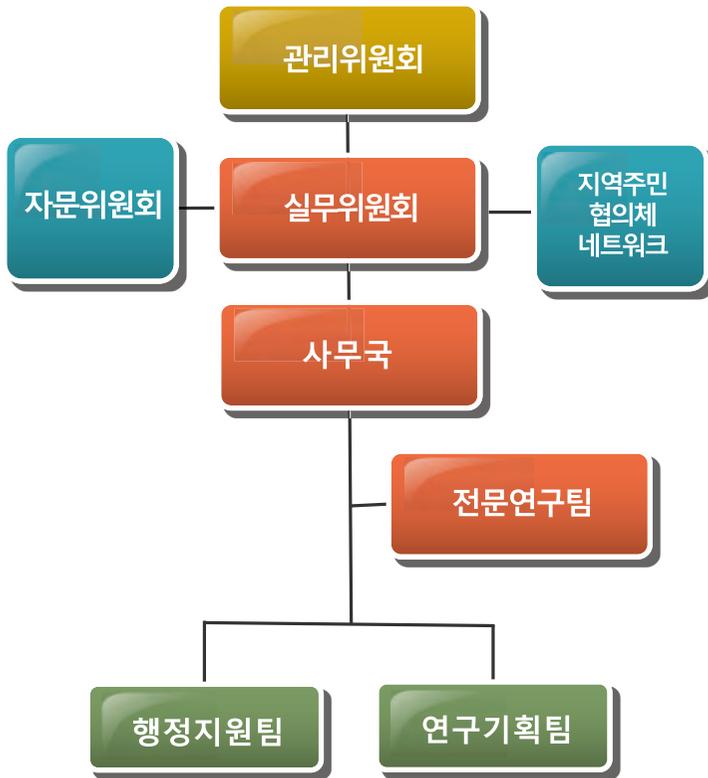


그림 7. 관리 전담 기구의 조직 구성(안)

지역주민은 유산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유산의 관리를 담당하는 실행 주체다. 지역주민들은 유산에 대한 현명한 이용과 유산 변화에 대한 기초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또한 오랫동안의 토착 지식을 바탕으로 유산의 항구적인 지속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유산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전문 모니터링과 학술 연구를 시행한다. 정부기관은 유산의 보전을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유산기업은 유산의 보전을 위한 후원을 한다. NGO들과 개인들은

유산의 보전을 위한 사회 각층에서 다양한 운동과 활동 전개하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방문객 (특히 유산 관광객)들 또한 유산을 느끼고 감상함으로써 유산보호에 대한 인식 증진이 이뤄지게 된다.

이처럼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을 하나의 포괄적 형태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세계유산 협의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를 통해 특별한 관심사에 대한 공동체의 소유권과 강조된 이슈들을 촉진할 수 있고, 유용한 인적 자원과 물질적 자원이 증가된다. 또한 NGO의 경우 해당 지역이 처한 현실에 관여하여 있어 지역의 여건과 필요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NGO와 학술 기관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며, 산업, 무역 협회, 시민 단체는 능력 배양과 인식 증진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즉, 이해 당사자들은 세계유산 관리사업 이행을 위한 필수적인 파트너인 것이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의 제안이 정책으로 실현되고 정부 기관의 지원에 따라 연구모니터링이 수행되며 이는 자료로 축적되어 보다 나은 보전을 위한 계획의 밑거름이 됨과 동시에 지역 활성화와 지역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유산관광과 미래 세대 전승을 위한 유산교육의 자료로 활용되는 선순환 구조를 갖게 된다.



그림 8. 이해당사자의 통합과 구성원들의 역할

관리의 핵심은 등재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미래 세대에까지 전승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유산의 속성에 변화를 일으키는 위협 요인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 등재 신청 당시에 제안했던 모니터링 지표에 대한 지속적인 변화를 관측하고 예측하여 항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특히 등재 이후에는 모든 면에 있어 등재 신청 과정보다 열의가 감소될 수 있으며, 특히 세계유

산의 브랜드만을 추구하여 방문객 증가로 인해 유산이 훼손되는 사례는 수없이 많다. 따라서 신청서를 통해 제안한 관리 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관리 우수 사례: 와덴해 세계유산

와덴해는 북해의 연안 지역인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에 걸쳐 있는 지역으로 면적은 11,456.1km<sup>2</sup>이며 지형지질학적 가치, 생태생물학적 가치, 생물다양성의 가치 기준인 등재 기준 (viii), (ix), (x)에 부합되어 2009년 네덜란드와 독일의 와덴해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2014년 덴마크까지 확대 등재되었다.

와덴해는 약 14,700km<sup>2</sup>의 와덴해 3국 협력지역을 설정하여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 지역 중, 11,200km<sup>2</sup>는 유럽연합법률(조류법, 서식지법, 물체계법, 해양전략체계법)과 국제협약(세계유산협약, 람사르협약) 등에 의해 법적 보호지역(국립공원지역 등), 세계유산지역, 특별민감해역으로 관리되고 있다. 와덴해 3국은 보전 정책을 상호 협력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력 정책은 크게 와덴해 관리 원칙, 와덴해 계획, 3국 공동 모니터링 및 평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모니터링 및 평가 프로그램은 와덴해 보호 및 관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와덴해 생태계의 연구역사는 모니터링, 정책 등을 근간으로 100년 이상 계속되었고 수많은 책으로 발간되었다. 3국 공동 모니터링은 모니터링 및 평가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데 이 모니터링의 목적은 와덴해 생태계의 현재 상태를 과학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와덴해 관리 계획에서 설정한 생태적 목표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데 있다. 모니터링의 핵심은 모니터링 항목의 선정, 항목별 모니터링 수행 방법론 개발 및 정착, 모니터링 수행, 모니터링 후의 생태계 현황 평가, 정책 제안서 작성의 5개항으로 구성된다. 이들 일련의 작업은 아래 그림의 모니터링 조직에서 이행하고 그 결과를 3년마다 개최하는 와덴해 3국 심포지엄에서 정책보고서 형식으로 정리하고 있다. 모니터링 항목은 해수 및 퇴적물, 염습지, 사구, 갯벌해역, 외해역, 어류, 철새, 젖먹이동물 등이며, 부문별로 자세한 조사항목 및 조사 시기, 장소 등이 정해져 있다.

2010년 덴마크 질트에서 개최된 정부 간 회의는 와덴해 3국 협력의 의사결정구조를 개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러한 개정은 전문가그룹과 의사결정 기구 간의 긴밀한 관계에 기초하여 협치 기능을 갖고 있었으나, 새로운 유럽연합법률과 국제협약, 생태계 기반 접근법의 발달, 이해 당사자의 중요성 제고 등으로 기존의 협치 구조가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좋은 협치의 원칙을 기초로 의사결정구조를 와덴해 3국 정부위원회, 와덴해 위원회, 와덴해 공동사무국으로 하고, 와덴해 협의회와 업무그룹의 자문과 협조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것으로 개편되었다.

결국 와덴해 3국의 보전정책은 와덴해 전체를 하나의 생태 단위로 보전하기 위해 모니터링, 평가, 권고, 정책 수립, 이행의 단계를 거치며 이를 다시 모니터링에 피드백하는 과정을 통해 정책을 수립하며, 생물종 및 서식지와 같은 자연과 인간의 문화와의 조화 및 인간 이용과의 조화,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관광, 휴양, 교육 등 자연을 있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생활을 영유함과 동시에 방문지로서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넓은 와덴해 전체 지역의 보호를 위해서는 통합 관리 체계 구성이 필수적이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기초하여 1978년부터 네덜란드, 독일 그리고 덴마크는 생태적 관점에서 와덴해 보호 및 보전을 위해 협력을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1982년 와덴해 3국은 와덴해의 보호와 관련된 각국의 활동, 연구, 조사, 논의를 중심으로 와덴해 보호를 위한 공동선언문(2010년 개정)을 채택하였고, 이후 1987년 와덴해 공동사무국을 개소하였다. 공동사무국은 전체 와덴해 관리의 컨트롤 타워로서 협력체의 활동을 지원·촉진·통합하는 역할을 실시하고 있으며, 와덴해의 보전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공동사무국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6명의 상근 직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유는 공동사무국이 단순한 행정 기관이 아닌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실현시키는 실행 기관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덧붙여 공동사무국은 와덴해 3국간 협의체의 운영을 전담하고 있는데 기본 원칙은 최대한 환경 교란 없이 자연적인 진행 과정에 의하여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또한 와덴해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고, 이해 당사자 간 보전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방안을 찾고자 농업, 에너지, 수산, 공업, 항만, 자연보호, 관광, 휴양 부분과 지방 및 지역정부, 3국 협력 대표가 참여하는 와덴해 포럼(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래 세대로의 전달을 위해 와덴해 3국 협력 25주년인 2003년 국제와덴해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문&김,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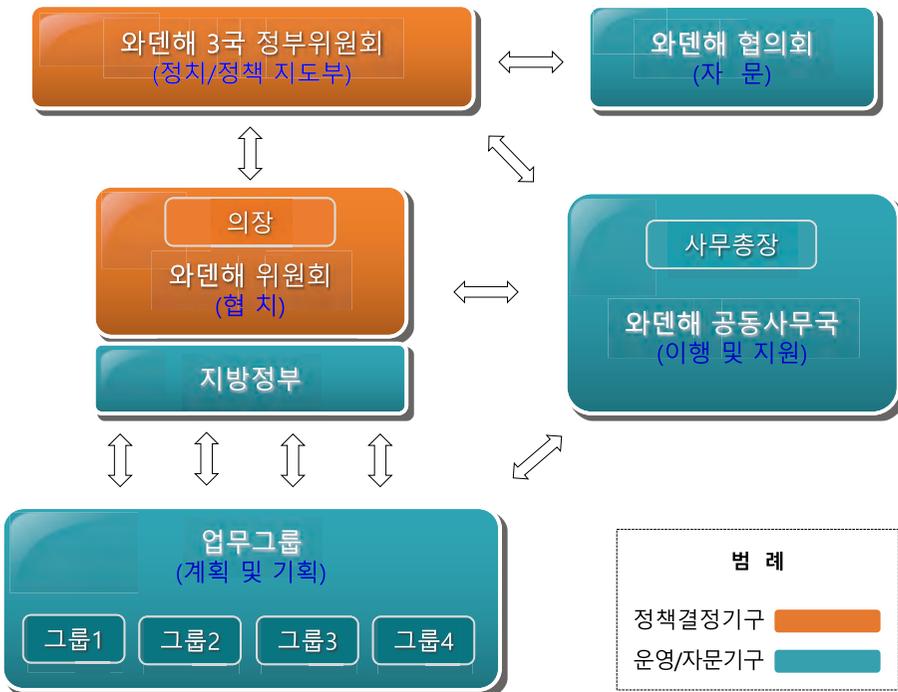


그림 9. 와덴해 3국 협력체의 정책 결정 조직도  
(출처: Jens E. & Harald M, 2012)

## 세계유산 등재와 지속가능발전

세계유산 목록 등재는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등재를 위한 3가지 요건 중 하나는 보호 및 관리 체계의 구축이며, 이는 다른 국제지정지역보다 강력한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고 있다. 당사국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보호법의 적용은 지속가능발전 목표 14(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해양, 바다 및 해양자원 보전 및 지속가능한 사용)과 15(육상 생태계의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 황폐화 중지, 역전 및 생물다양성 손실 중지)의 실현에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세계자연유산의 등재 기준 (viii), (ix), (x)은 지형지질학적 가치, 생물생태학적 가치, 그리고 생물다양성 가치와 멸종위기종의 보전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목표가 지향하는 바를 이행하는 것이다.

또한 간접적으로는 8(모두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과 13(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행동의 실시)과도 연계된다. 세계유산 등재 이후 브랜드 가치가 크게 향상되므로 해당 세계유산의 방문객이 증가하는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무수히 많다. 이러한 관광객 증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보전을 기초로 한 자연과의 균형을 유지하는 1차 생산과 3차 서비스업의 증가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함께 고용 증대를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등재 유산을 통한 자연 생태계의 보전은 급격한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추는 데 기여하며,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자연을 보호하는 최고의 방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세계유산과 다른 국제보호지역

세계유산과 다른 종류의 지정지역(람사르습지 사이트,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등)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다. 세계유산은 비교·분석에 기초하여 명확하게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입증되어야 하며, 기타 지정지역들은 잠재적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세계유산 등재를 신청하는 유산은 개별 유산의 가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막연히 자유와 평화를 위한다든지, 지나치게 어떤 특정한 건축 양식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유산의 가치와 특징을 정확히 분석하고 제시하기 위한 정밀한 국내외의 비교 연구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세계유산과 다른 종류의 지정지역을 구분 짓는 두 번째 요소는 세계유산이 보전과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람사르습지는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습지를 보전함과 동시에 현명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정지역 지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생물권보전지역은 지역

사회의 노력과 건전한 과학에 기초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발전을, 마지막으로 세계지질공원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지질지역 보호 및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처럼 다른 지정지역 프로그램은 보호와 보전을 통한 지속가능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것에 중점을 두지만, 세계유산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보전을 통한 미래 세대의 전승을 강조하고 있다. 즉, 세계유산은 철저한 보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유산의 보호 체계는 신청 당사국에서 신청 유산의 보호를 위해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한 국내법의 적용을 요구하기도 한다.

세계유산의 세 번째 특성은 위험에 처한 유산 목록이 있으며 실제 세계유산 목록에서 삭제된다는 것이다. 람사르습지는 관리에 중점을 두지만 지정 시에 제안했던 특성이 훼손된 경우에도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지정을 해제한다. 4년마다 재인증 절차가 진행된다. 재인증 심사에서 “yellow card”를 받게 되면, 2년 이내에 지적된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세계지질공원의 자격이 박탈된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지정 이후 10년마다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정기 보고 내용을 검토한다. 2020년까지 모든 생물권보전지역이 세 가지 기능(보전, 발전, 지원)을 모두 충족시키기를 독려하는 “우수화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생물권보전지역은 세계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에서 권고하고 있다. 반면에 세계유산은 6년마다 국가별로 정기 보고서를 작성하여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신청 당시의 가치가 훼손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위험에 처한 유산 목록에 등재된다. 당사국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노력과 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세계유산 목록에서 삭제되며 현재까지 2건, 즉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각각 1건이 삭제되었다.

마지막으로 세계유산이 다른 지정지역과 구분되는 특성은 사전 조정 절차upstream process 제도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잠재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으나 신청 역량이 부족한 저개발국과 개발도상국의 세계유산 등재를 돕기 위해 IUCN이나 유네스코에서 재정과 기술을 지원하는 제도다.

## 주요 용어

### · 세계유산위원회 World Heritage Committee

4년의 임기를 가진 21개 위원국으로 구성되며, 적어도 1년에 한번(6월 또는 7월) 회의를 개최함.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등재와 위험에 처한 유산의 등재와 등재된 유산의 삭제를 결정하고, 세계유산기금의 사용, 총회보고에 관한 중요 결정기구로서 역할을 수행(위원국 현황은 <http://whc.unesco.org/en/committee/> 참조)

### · 세계유산센터 World Heritage Center

세계유산위원회의 사무국으로서 1992년 설립되어 특정 기구로 인정되고 있음. 세계유산센터는 총회와 세계유산위원회의 회의 조정,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이행, 연구 및 보고의 협조, 국가위원회에 국제적 원조, 세계유산협약의 증진 도모 등과 같은 일들을 수행

### ·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세계유산위원회의 자연유산에 대한 자문 기구로 세계유산의 보전 상태 모니터링과 국제적인 조력을 위한 요청들을 검토하고, 특히 세계유산 목록 등재를 위해 신청된 유산을 평가하여 세계유산위원회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는 역할을 담당

### · 세계유산 목록 World Heritage List

자연, 문화, 복합유산을 구성하고 있는 유산의 목록

### · 잠정 목록 Tentative List

세계유산의 예비목록으로 당사국의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세계유산센터에 제출

### · 탁월한 보편적 가치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

국가, 인종, 종교를 넘어 인류 누구나 보편적으로 '보전하여 미래 세대에 전달해야 할 가치'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세계유산의 핵심 개념

### · 유산구역 Property Area

신청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모두 포괄하고 있는 지역으로 당사국의 보호 체계에 따라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등재 이후 세계유산지역으로 인정됨.

### · 완충구역 Buffer Zone

유산 지역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완충시켜주기 위해 설정된 지역으로 외부의 일반적인 지역보다는 강화된 수준의 제한 사항이 필요함. 다만, 공식적인 세계유산지역으로 인정되지는 않음

### · 통합 관리 Integrated Management

지역주민, NGO, 정부 기관,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협치에 의한 신청 유산의 보호뿐만 아니라 위협 요인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와 이를 위한 모니터링을 포함하는 개념

### · 국제중복지정지역 Multi-Internationally Designated Areas, MIDAs

유네스코의 3개 지정 프로그램(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과 랍사르 습지 가운데 2개 이상으로 중복지정된 지역

## 참고 문헌

- 고철환, 2009, 『갯벌 관리 정책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 와덴해 3국과 우리나라 갯벌 관리를 대상으로』, 국토해양부.
- 문경오·김준, 2013, 「와덴해 세계유산의 보전·이용 정책과 시사점」, 『리전인포』 제302호, 전남발전연구원, pp. 8~12.
- 박소현, 2013, 「외국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사례와 등재 경향」, 『2013 세계유산포럼』, ICOMOS 한국위원회, 문화재청, 제주특별자치도, 2013. 7. 3. ~ 7. 5.
- Engels, B., Koch, P., and Badman, T., 2009, Serial natural World Heritage properties, IUCN World Heritage Studies No. 6, IUCN Programme on Protected Area, Bfn and IUCN, Gland, Switzerland.
- IUCN, 2019, IUCN World Heritage Evaluations 2019.
- IUCN, 2018, IUCN World Heritage Evaluations 2018.
- IUCN, 2017, IUCN World Heritage Evaluations 2017.
- IUCN, Managing Natural World Heritage (<http://whc.unesco.org/en/managing-natural-world-heritage/>)
- Jens E. & Harald M., 2012, “Wadden Sea World Heritage: recent progress in protecting and managing the world’s largest tidal barrier island system”, CWSS.
- Magin., C and Chape., S., 2004, Review of the World Heritage Network: Biogeography, Habitats, and Biodiversity, UNEP-WCMC, Gland, IUCN.
- Montira H. Unakul, 2011, “World Heritage Site: What are the Stakeholders”, UNITAR 2011 Series, UNITAR Hiroshima Office.
- UNESCO, 2017, Operational Guidelin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http://whc.unesco.org/en/guidelines/>)
- UNESCO, 2012, Managing Natural World Heritage.
- UNESCO, 2011, Preparing World Heritage Nominations 2nd Edit..
- UNESCO, 1972,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http://whc.unesco.org/en/conventiontext/>
-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http://whc.unesco.org/>.
-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Summary Records, 2018, WHC/18/42.COM.
-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Summary Records, 2017, WHC/17/41.COM.
- UNESCO World Heritage List <http://whc.unesco.org/en/list>.

# 생물권보전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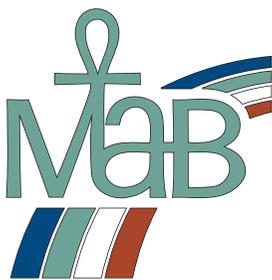
## 생물권보전지역의 정의와 지정 목적

생물권보전지역을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많이 제기하는 질문은 “생물권보전지역은 무엇을 보전하는 것인가?”, “지금 잘 보전하고 있는데 뭘 또 보전해야 하나요?”, “그린벨트와 비슷한 건가요?”,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지역인가요?” 등이다. 이는 그간 보전지역의 목적과 보전지역을 대하는 사람들의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명칭에서 이미 많은 사람, 특히 지역주민들은 보호해야 할 지역을 법으로 정해 놓거나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지역 등으로 규정하고, 보전지역은 곧 규제지역이라는 다소 방어적이고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기도 한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인간과 환경 사이의 균형 있는 관계를 촉진하고 개선하기 위해 과학적 토대를 구축하고자 하는 정부 간 과학 사업인 유네스코의 「인간과 생물권(MAB) 프로그램」의 특별전문위원회에 의해 1974년에 창안되었다(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 및 세비야전략).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인간과 환경 사이의 균형 있는 관계를 촉진하고 개선”하고자 만들었다는 점이다. 그동안 많은 보호지역은 환경의 보전(conservation, 더 심층적으로는 보존(preservation)을 목적으로 인간의 간섭을 최소화하거나 사전에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어왔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생물권보전지역은 인간의 활동과 생활도 환경의 일부로 보는 관점에서 건강한 환경과 지속가능한 인간의 생활·발전 즉, 자연환경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의 ‘균형’을 중요시한다.

생물권보전지역의 ‘생물권(biosphere)’은 지구 표면에서 생물이 살고 있는 장소 즉 대기권의 하부, 수권의 전부, 암석권의 최상부를 지칭하며, 인간도 생물권의 중요한 구성 요소다. 생물권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생태계다.



- 파란색: 물 - 육상과 바다의 담수와 해수 모두
- 녹색: 숲, 관목지, 초지
- 흰색: 물을 보유하고 있어 다른 시스템이나 바다로 천천히 되돌려보내는 눈 덮인 산
- 빨간색: 사막과 물 이용에 주의가 필요한 육상

그림 1. 인간과 생물권(MAB) 프로그램의 로고

(출처: MAB한국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unesco-mab.or.kr/v2/programme/mab01.html>)

따라서 생물권보전지역은 「인간과 생물권(MAB) 프로그램」의 세계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의 지원을 받아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거나 손실을 저감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사회·경제·

문화·환경 조건을 통합적으로 향상시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를 실행하기 위해 생물다양성의 증진에 대한 과학적 지식과 지역의 거버넌스 참여를 강조한다.

## 지정수단: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과 세비야 전략

생물권보전지역은 각국 정부가 신청하며 해당 지역이 속한 국가의 주권 영토로서 계속하여 존재하면서 국제적 인정을 받는다. 즉, 그 지역이 속해 있는 회원국의 주권하에 놓여 있으면서, 1995년 세비야회의에서 결정되고 같은 해 유네스코 정기총회에서 승인받은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에 따라 각 국가는 그 나라의 법률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생물권보전지역의 특성과 변화는 세비야회의 이전과 이후로 크게 변화가 나타나며,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생물권보전지역의 의미를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생물권보전지역을 지정하는 인간과 생물권(MAB) 프로그램(이하 MAB로 표기함) 초기(1976-1994년, 세비야회의 이전)에는 자연자원의 보전과 과학적 연구, 교육에 중점을 두고 국립공원과 같은 기존의 법정 보호지역을 그대로 생물권보전으로 지정(1982년 설악산 생물권보전지역 사례)한 사례들이 대부분이었다. 협력구역이 거의 없이 특히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구성되어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기능을 실행할 여지가 거의 없었다.<sup>1</sup>

그러나 1995년 스페인 세비야에서 개최된 제2차 생물권보전지역세계대회에서는 102개국 및 15개 국제기구에서 400여 명의 전문가가 참가하여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WNBR)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는 21세기를 위한 생물권보전지역의 역할에 대한 검토와 함께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룬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 초안 작성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이 회의에서 작성된 「세비야전략」이 제13차 국제조정이사회의 강력한 지지를 받아 생물권보전지역의 이행 전략으로 지지받았다.

「세비야 전략」에서는 생물권보전지역이 21세기 우리가 직면하게 될 인구성장과 자원 배분, 에너지와 천연자원 수요 증가, 경제의 세계화, 교역 유형이 농촌 지역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 차별성의 소멸,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권의 중앙 집중과 어려움, 기술 혁신의 불균등 확산 등 인간의 영향이 더욱더 심각하게 증대하고 있는 미래 사회에 대한 건전한 과학의 기반 위에서 좋은 실천 사례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특히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과 자원의 합리적 이용 관점에서 다양

1 1995년 이전 지정된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세 가지 용도구역을 도입한 비율(마드리드행동계획)

1976-1984년까지 지정된 곳 : 23%

1985-1995년까지 지정된 곳 : 65%

성의 결합 등 인간 측면을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를 위해 핵심구역, 완충구역, 협력구역의 세 가지 용도구역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각 구역에서의 역할과 활동이 강조되었다.

세비야 전략 채택 이후 13년 동안 빠른 속도로 진행된 기후변화 문제, 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 손실의 가속화, 환경변화를 일으키는 급속한 도시화 등 지구적 쟁점과 문제가 생기거나 심화되는 상황에 MAB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시급해졌다. 이에 2008년부터 2013년까지 MAB와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의 활동 방향을 제시하고자 MAB의 비전과 사명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31개 목표와 65개 행동을 4가지 주요 영역으로 규정한 「마드리드행동계획(MAP)」이 2008년 승인되었으며, 31개 목표에 대한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의 행동, 대상, 성공지표, 파트너십, 실행 전략과 평가 체계를 제시하였다.

「마드리드행동계획」의 4가지 주요 영역과 이에 속해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력, 관리, 소통: 생물권보전지역의 지구, 지역, 국가, 지방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의 학습장으로서의 기능을 위해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운영과 홍보를 강조
- 용도구역-기능과 공간의 연계: 통합과 공동 관리를 통한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지식 창출을 위해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통해 용도구역을 설정하고 보전과 발전 협력 전략을 피할 것을 강조
- 과학과 역량 증진: 변화하는 생물권보전지역의 적응 및 회복력 관리를 위한 과학적 전문성 강화 강조
- 파트너십 강화: 파트너십의 부가가치인 관리전략의 효율성 향상, 이해관계자의 태도 변화, 상호 이해 증진, 정보에 근거를 둔 의사결정, 인식 증진,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등을 강조

2015년 6월에는 새로운 10년을 위한 「MAB전략」(2015~2025년)이 수립되었고, 2016년 페루 리마에서 열린 '제4차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총회'에서 2016-2025년까지 MAB전략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을 담은 「리마행동계획」을 채택하였다.

「리마행동계획」은 2025년 동안 지속가능발전 모델로서 생물권보전지역의 경험과 교훈을 회원국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하고, 확산하며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지속가능발전 및 계획을 위한 평가와 고품질 관리, 전략 및 정책을 지원하고자 하고 있다. 새로운 「MAB 전략」(2015-2025)과 「리마행동계획」(2016-2025)은 세계 곳곳의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생물다양성 감소, 기후변화, 빈곤, 물·식량 안보 등 전 지구적 과제에 대한 지역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확산하여 인간과 환경의 웰빙을 보장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실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이를 주요 참고로 하여 각 MAB 국가위원회에서 자체적인 전략과 실행 계획을 준비할 것

을 강력하게 권고하였다. 각 국가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자체적인 전략과 실행 계획을 통해 생물권 보전지역이 지속가능발전 모델지역으로 거듭나고 이러한 세계적 네트워크를 통해 전 지구 차원에서 「리마행동계획」이 실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듯 생물권보전지역은 초기 자연자원의 보전과 과학적 연구, 교육에 중점을 둔 자연 및 환경보전 중심에서 「세비아 전략」을 통해 보전과 자원의 합리적 이용 관점에서 인간 측면의 반영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였고, 이후 빠르게 변화하고 지구적 쟁점이 된 기후변화 문제, 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 손실 가속화, 급속한 도시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역 네트워크 중심 행동, 파트너십을 강조한 「마드리드행동계획」, 그리고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모델로서의 생물권보전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리마행동계획」의 수립과 이행에 이르기까지 환경과 인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변화와 대응을 계속해오고 있다.

또한 가장 최근인 2019년 6월 열린 제31차 MAB 국제조정이사회에서는 「리마행동계획」의 이행에 대한 회원국들의 활동 보고가 있었다. 여기서는, ‘생태관광을 위한 지속가능한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위한 영국 국가보고서가 소개되는가 하면, 스페인에서는 일반 대중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에 노력을 기울이고, 이와 동시에 청년 네트워크를 보유하는 등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홍보와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과 실행 부분에서 많은 국가가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강조한 바 있다.

이로써 생물권보전지역은 단순한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지역, 선언적인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논하는 지역이 아닌 실질적인 인간생활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모델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생태관광, 생물권보전지역의 홍보와 지역 내·외 커뮤니케이션 전략, 그리고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사업과 같은 마케팅 분야 등에 점차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하고 있다.

## 지정 기준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 제3조에 따르면, 생물권보전지역은 지역적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보전을 위한 접근법을 모색하고 제시하기에 적합한 지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정도로 다른 보호지역과 다르게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중요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보전은 경관과 생태계, 종, 유전적 변이의 보전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하고, 발전은 사회·문화적으로 그리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인간 발전을 촉진하는 것, 지원은 지방·지역·국가·지구 차원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보전 문제와 관련된 시범사업과 환경교육, 훈련, 연구와 모니터링을 지원함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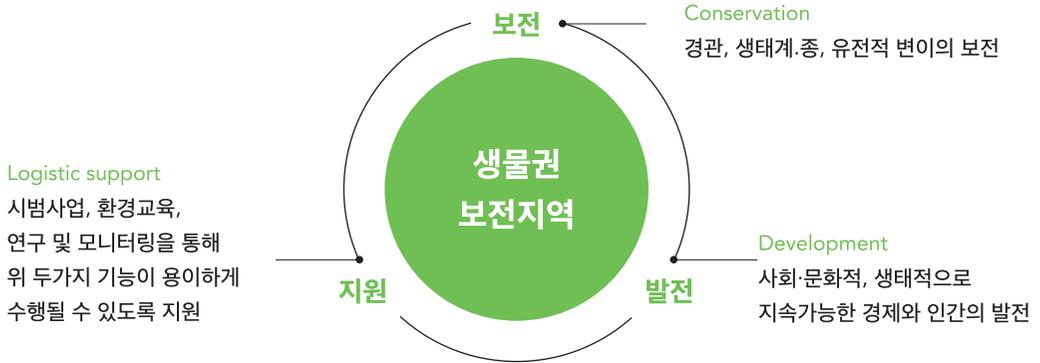


그림 2. 생물권보전지역의 세 가지 기능

(출처: MAB 한국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unescoab.or.kr/v2/biosphere/aboutbr.html>)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생물권보전지역은 다음의 지정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 ① 인간 간섭의 점진적 변화를 포함하여 주요한 생물지리학적 지역을 대표하는 생태계의 한 부분을 포괄하여야 한다.
- ②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이 있어야 한다.
- ③ 지역적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접근 방법을 모색하고 실험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④ 생물권보전지역의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여야 한다.
- ⑤ 적절하게 핵심구역, 완충구역, 협력구역을 설정하고, 각 구역이 해당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핵심구역
    -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 목적에 따라,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충족할 만큼 충분한 규모를 갖춘 법적으로 구성된 지역으로서 장기적으로 보호되는 지역
    - 경관, 생태계, 종 및 유전자 변이의 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보호되어야 함
  - 완충구역
    - 보전의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활동만이 수행되는 지역으로 핵심구역에 인접하거나 이를 둘러싸면서 명확히 구분되는 지역
    - 종 이동과 유전자 교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접한 핵심구역, 협력구역과 생태적 연결성이 유지되어야 함
    - 환경교육, 휴양, 건전한 생태관광, 과학적 연구, 모니터링 등 보전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할 수 있음

• 협력구역

- 사회문화적,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인간 발전을 장려하는 활동이 활발하게 허용되는 구역
- 농업, 주거지 등 기타 용도로 이용되며 여러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생물다양성 보전과 조화로운 지역 발전 계획을 실행할 수 있음



그림 3. 마드리드행동계획에서 제시한 생물권보전지역 용도 구분 기본 방향

(출처: UNESCO MAB 홈페이지 브로슈어.

[http://www.unesco.org/new/fileadmin/MULTIMEDIA/HQ/SC/images/Eglish\\_MAB\\_leaflet\\_2018.pdf](http://www.unesco.org/new/fileadmin/MULTIMEDIA/HQ/SC/images/Eglish_MAB_leaflet_2018.pdf))

- ⑥ 무엇보다도 생물권보전지역의 기능을 실행하고 고안하는 데 관심이 있는 공공 기관, 지역공동체, 그리고 민간인들이 적절한 범위 내에서 관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 ⑦ 더불어 다음을 위한 조항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 완충지역에서 인간의 이용과 활동을 관리하기 위한 메커니즘
  - 생물권보전지역을 위한 관리 정책이나 계획
  - 이러한 정책과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지정 기관이나 메커니즘
  - 연구, 모니터링, 교육·훈련을 위한 프로그램

## 지정 현황

생물권보전지역은 1976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가 구성된 이후, 2019년 12월 기준으로 124개 국가 701곳(접경지역 21곳 포함)이 지정되어 있다. 이중 아프리카는 29개국 79곳, 아랍 12개국 33곳, 아시아·태평양 24개국 157곳, 유럽·북미 38개국 302곳, 중남미 21개국 130곳이 지정되어 있다. MAB의 「세계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WNBR)」는 국가 간·지역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지식과 경험의 공유, 역량 구축 및 홍보를 통해 국제 협력을 꾀하고 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학습의 장소로, 특히 국경을 넘나드는 지역 지정을 통해 국경을 넘어 평화 체제의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 간 생물권보전지역인 접경생물권보전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접경생물권보전지역은 2개 이상의 국가가 함께 신청해야 하므로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가 간의 약속과 협력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으며, 현재 31개국 21개의 접경생물권보전지역이 있다.

국내 생물권보전지역은 1982년 설악산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시작으로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2002년), 신안 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2009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2010년), 고창 생물권보전지역(2013년), 순천 생물권보전지역(2018년),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2019년)과 연천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2019년)이 지정되어 있다.

그중 제주도, 신안 다도해, 고창, 순천, 연천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은 단일 지자체 중심의 생물권보전지역이고, 그 외 설악산, 광릉숲,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은 복수의 지자체가 협력을 통해 운영하는 생물권보전지역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설악산 생물권보전지역과 신안 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은 2016년에,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은 2019년에 생물권보전지역 지정과 확장을 결정하는 유네스코 MAB국제조정이사회에서 확장 신청을 승인 받았다.

국내 생물권보전지역은 다른 여러 MAB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법정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받을 때 국내법으로 이미 보호를 받고 있는 곳을 핵심구역 등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MAB와 관련한 국내 법제도는 「자연환경보전법」(제21조 2, 제49조 13), 「유네스코 MAB 한국위원회 운영규정」(2009년 12월에 제정된 환경부 훈령)에 일부 지원 근거가 있다.

국내 생물권보전지역의 운영 방향을 결정하고 국내 활동을 지정하는 한국의 MAB 활동은 그동안 자연·사회 과학 학제 간의 접근과 연구, 한반도 비무장지대(DMZ) 보전을 위한 지원·협력 체계, 최근에는 생태관광, 지역 상품 브랜드 사업 등 지역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데 노력해 왔으며, 동북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EABRN, East Asian Biosphere Reserve Network,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WNICBR, World Network of Island and Coastal ‘Biosphere’ Reserves와 같은 지역 및 주제 네트워크 설립을 주도하고 지원해 왔다.



그림 4. 국내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현황  
(출처: 2019-2020 세계생물권보전지역 지도 한글판(2019))

1982년 설악산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본격적인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MAB가 도입된 지 40여 년이 되어가는 한국의 생물권보전지역은 양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더욱 발전된 역할과 기여를 하도록 요청받고 있다. 『한국 MAB전략과 행동계획 2016-2025』에서는 생물권보전지역이 국제적인 생태적 가치 인증 수단에 그쳐서는 안 되며, 과도한 개발과 이용,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변화 등 여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보전을 기반으로 한 지역발전 모델’로 발전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생물권보전지역의 경험과 성공 사례가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보전 정책과

한반도 생물다양성 보전 협력을 강화하는 밑거름이 되어야 함을 또한 강조하면서, 국제 MAB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북한과 저개발국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향후 10년간 한국 MAB의 주요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 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실천 모델로서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인식 확대
- ② 지역주민의 참여와 지역사회 주도성을 강화하여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발전·지원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
- ③ MAB, 생물권보전지역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확충
- ④ 동북아·국제 MAB 협력 체계의 효과적 운영과 지원을 위한 국가적 역할 강화
- ⑤ 통일을 준비하는 한반도 생물다양성 보전 체계 구축 및 다자 간 교류 협력에 기여

## 생물권보전지역의 신청 절차 및 경향

생물권보전지역은 'MAB 국제조정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생물권보전지역을 지정하며, 유네스코 회원국과 준회원국은 누구나 등재를 제안할 수 있다.

<관련 조직 및 기구>

- 국제 MAB 사무국: 유네스코 부속으로 프랑스 파리 소재의 유네스코 본부 생태 및 지구과학국에 소속되어 있음. 국제 MAB 사무국은 세계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의 기능과 향상에 책임을 지며, 개별 생물권보전지역과 전문가들 사이의 상호 교류와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함. 또한 사무국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생물권보전지역의 목록과 목적, 그리고 상세한 내용이 기술된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완·간행하여 배포하는 역할을 함.<sup>2</sup>
- MAB 국제조정이사회(MAB-ICC): 유네스코 총회에서 선출된 34개의 회원국으로 구성됨. 통상적으로 1년에 한 번 소집되어 MAB 사업의 이행, 과학적 내용, 국제 공조 등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지도하고 감독하며, 새로운 생물권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기존 지역에 대한 정기보고서를 살펴 보고 필요한 결정을 내리는, MAB의 최고 의결기구임.
- 의장단: 6개 대륙의 대표로 구성되며, MAB 국제조정이사회를 지원함. 의장단은 34개 이사국 중

2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1996) 제10조

에서 선정된 6개국 출신의 1명의 의장과 5명의 부의장(이 중 1명은 기록자)으로 구성됨.

- 국제생물권보전지역자문위원회: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정과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12인으로 구성됨.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MAB 국제조정이사회에 새로운 지역의 지정과 관련된 과학적·기술적 문제에 관해 검토한 결과를 권고하고, 세계생물권보전지역네트워크에 포함된 지역의 정기적 보고서를 검토하는 등의 역할을 함.

생물권보전지역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MAB 국제조정이사회에 의해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정된다.

- ① 회원국 내 신청 지역(신청인)은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 4조에 정의된 기준을 고려(유네스코가 제공한 양식이 있음)하여 지정 신청서를 각국의 MAB 국가위원회에 제출한다.
- ② 각국의 MAB 국가위원회는 서류 검토와 함께 현장 실사를 시작하여 신청인에게 검토 의견을 송부하고, 신청인은 보완된 신청서를 다시 MAB 국가위원회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검토까지 완료되면, 유네스코 국가위원회와 유네스코 대표부를 통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최종 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한다.
- ③ 사무국은 내용과 지원 서류를 검토하여 자료가 미비할 경우 신청 국가에 누락된 정보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한다.
- ④ 생물권보전지역 국제자문위원회가 이 신청서를 검토하여 MAB 국제조정이사회에 추천한다.
- ⑤ MAB 국제조정이사회가 지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 ⑥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MAB 국제조정이사회의 결정을 해당 국가에 알려준다.
- ⑦ 회원국은 세계 네트워크 내에서 해당 생물권보전지역이 완전히 기능할 수 있도록 생물권보전지역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개선 노력을 기울이며, 적절히 확대하도록 장려된다. 생물권보전지역을 확대하려고 하는 경우, 면적을 대폭 조정(협력구역 확보 등 용도구역의 변경과 조정)하려고 할 때에는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 위의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고, 일부 소폭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기보고서 내에서 관련 내용을 수정하여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설악산, 신안 다도해 및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의 경우에는 용도구역 조정으로 인해 신청서를 새로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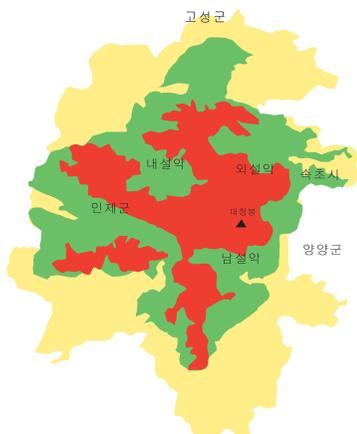
「세비야 전략」 수립(1995년) 이전에 지정된 많은 생물권보전지역은 기존의 보호지역을 그대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핵심 보전지역을 중심으로 세 가지 용도구역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관리와 운영이 이루어져 특히 발전 기능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세비야 전략은 각 생물권보전지역이 용도구역을 규정에 맞게 갖추고 세 가지 기능을 모두 실현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이를 준수하기 위한 출구전략(exit strategy)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이는 용도구역의 명

확한 구분과 충분한 면적 확보를 통해 핵심구역에서는 생물다양성을 더욱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완충구역과 협력구역을 통한 교육과 훈련, 지역사회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설악산 생물권보전지역의 경우에는 2016년 협력구역을 대폭 확대하여 전체 면적이 거의 2배로 늘어났으며, 호주 등 일부 지역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가 지정되어 실질적인 '발전'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미국에서 연구, 교육과 보전 기능은 매우 뛰어나지만 발전 기능이 거의 없는 지역 등의 경우는 출구전략 과정에서 세계생물권보전지역네트워크에서 스스로 탈퇴하기도 하였다.

특히 '발전' 기능의 강화를 통하여 세 가지 기능의 실제화를 꾀하기 위하여 2013년에 시작한 출구전략은 '우수화 과정'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2020년까지 세비야전략 이전에 지정된 모든 생물권보전지역이 '연구·보전'과 '지속가능발전' 프로그램을 용도구역 확보 및 관리 계획을 통해 실제화하여 세 가지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활동적인 생물권보전지역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 국내 사례: 설악산 생물권보전지역**

1982년 우리나라 최초의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설악산 생물권보전지역은 지정 당시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지정되어 협력구역이 거의 없었다. 2013년 정기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MAB 국제조정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이에 2015년 협력구역을 대폭 확대하여 균형 잡힌 용도구역을 갖추었고 이를 승인받았다.



총면적: 393.50km <sup>2</sup> (1982년 지정 당시)	총면적: 767.49km <sup>2</sup> (2016년 확대지정 이후)
핵심구역: 164.30km <sup>2</sup> (42%)	핵심구역: 149.92km <sup>2</sup> (19.5%)
완충구역: 223.95km <sup>2</sup> (57%)	완충구역: 223.12km <sup>2</sup> (29.1%)
협력구역: 5.35km <sup>2</sup> (1%)	협력구역: 394.45km <sup>2</sup> (51.4%)

• 생물권보전지역 신청 국내 절차

우리나라의 경우, 생물권보전지역 신청 준비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MAB 한국위원회에 간략한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해 검토 단계를 거치는 예비신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예비신청 절차는 MAB 한국위원회를 거쳐 본신청 절차에 들어가기 위한 전 단계로, 생물권보전지역 후보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집중하게 되며, MAB한국위원회에서는 생물권보전지역 신청 소위원회가 예비신청서를 검토하고, 총회에서 또는 서면으로 소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논의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면 검토 의견을 고려하고 반영하여 신청인이 본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최종 검토 의견을 송부한다.

시기	절차	신청인	MAB 한국위원회
	지역 내에서 논의 및 검토	○	
1차 연도	(1차) 2월 1일까지 (2차) 7월 1일까지	생물권보전지역 예비신청서 작성 후 MAB한국위원회로 송부	○
	(1차) 2월 중순 (2차) 7월 중순	생물권보전지역 신청 소위원회 예비신청서 검토	○
	(1차) 2월 말 (2차) 7월 말	MAB한국위원회 총회에서 또는 서면으로 소위원회의 검토 결과 논의 → 신청인에게 최종 검토 의견 송부	○
		검토 의견 고려·반영하여 생물권보전-지역 본신청서 작성	○
	2월 1일까지	생물권보전지역 본신청서 초안(국문) 제출	○
2차 연도	3월 말	소위원회 서류 검토 및 현지 실사 → 신청인에게 검토 의견 송부	○
		생물권보전지역 본신청서 초안 보완	○
	6월 30일까지	보완된 본신청서(국문) 제출	○
	7월 말	소위원회 보완 신청서 검토 후 의견제시	○
		추가 보완 및 영문 신청서 작성	○
8월 20일까지	최종 신청서(국문, 영문) 제출	○	

9월 초	MAB 한국위원회 총회 검토 후 유네스코 신청 여부 결정	○	
	최종 신청서(국문, 영문) 제출	○	
9월 30일까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유네스코 상주대표부를 통해 본부에 신청서 제출	○	
3차 연도	2~4월	생물권보전지역 국제자문위원회 심사	유네스코
	7월 말	소위원회 보완 신청서 검토 후 의견제시	○
	5~7월	MAB국제조정이사회에서 심의 후 지정 여부 결정	유네스코

###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서 작성<sup>3</sup>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서를 작성할 때 신경써야 할 것들 중 하나는 신청서가 단지 생물권보전지역 지정만을 위한 신청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신청서는 작성의 과정에서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도를 높이고 관리·운영 체계 및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지역사회가 함께 진행하는 참여와 이해의 과정이 필요하며, 과정에서의 공동의 학습이 중요하다.

- ① 생물권보전지역은 이미 관리와 운영이 진행되는 지역의 결과들을 심사·평가를 통해 ‘인증 certification’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국제적인 지속가능발전 모델 지역으로서 ‘지정 designation’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지역이다. 따라서 생물권보전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한 모든 관리는 해당 국가의 의지와 책임하에 있다. 그러므로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서의 체계와 내용을 일부 작성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데 목적을 두기보다는 지정 이후 관리·운영에 참여할 여러 주체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지역의 현실 상황에 맞는 방안이 논의된 후에 작성되어야 한다.
- ② 생물권보전지역은 신청서 내에 관리 계획의 개요를 기술하도록 되어 있다. 신청 단계에서 관리 계획이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지정된 후 빠른 시간 내에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에는 핵심구역뿐만 아니라 완충구역과 협력구역의 통합적 관리와 관리 기구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3 MAB 한국위원회(2015).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을 위한 국가 기준과 절차 가이드라인. 내용 중 일부 인용 및 재구성.

- ③ 우리나라와 해당 지역의 현황에 생소한 국제 관계자의 시각에 맞추어 작성한다.
  - '의미'와 '가치'를 중심으로 기술하며 중요도가 낮은 상세 데이터는 제외하고, 중요 데이터와 강조 점을 중심으로 서술식으로 일목요연하게 기술한다.
- ④ 관광, 문화, 지역 개발 등 생물 및 생태 외 분야의 내용에 있어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와 운영 상황에 대한 현실적인 면을 살펴볼 수 있는 공무원, 전문가 등 관계자 자문과 검토를 받도록 한다.
- 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신청서 양식에 제시된 편집 형식을 따르며 간결하게 작성한다.
- ⑥ 국문 본신청서와 본신청서의 영문 번역본을 대조하며 최종 검토·확인한다.
- ⑦ 생물권보전지역 검토 소위원회의 현지 실사 후 본신청서(국문)의 보완본을 제출할 때까지 신청자는 관련 중앙정부기관과 협의할 내용에 대해 협의를 완료한다.
- ⑧ 지도 작성
  - 생물권보전지역의 용도구역은 각기 다른 색으로 명확하게 구분한다. 핵심구역은 적색, 완충구역은 녹색, 협력구역은 노란색으로 표시하며, 육상과 해양을 구분한다.
  - 신청서에는 '좌표를 포함한 위치 및 용도구획도와 식생도 또는 토지피복도를 필수적으로 첨부한다. 이 외에도 일반 위치도, 기타 주제도(보호지역, 지질 등) 등을 추가로 첨부할 수 있으며, 지도에는 축적, 범례뿐만 아니라 주요 지형, 행정구역, 보호지역 등 지도 주제에 따른 적절한 정보가 포함되도록 한다.

**•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서 작성 우수 사례: 흑림 생물권보전지역(독일, 2017년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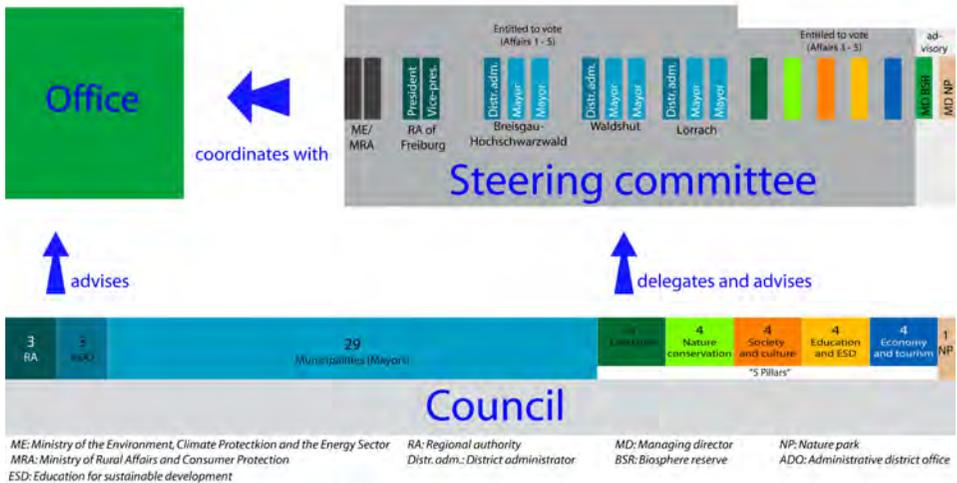
2016년 신청서를 제출한 독일 흑림 생물권보전지역(Black Forest Biosphere Reserve) 신청서는 맨 앞 부분에서 생물권보전지역의 세 가지 기능에 대한 신청 지역의 관점과 목표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경제의 이용은 자연·문화 경관의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유지와 향상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지역으로부터, 지역 안에서”를 의미하는 ‘참여’가 중심이 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다양하고 특징적인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보호’,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전략 개발’, ‘경제(농업, 상업, 산업 및 서비스 관련), 사회 및 농촌 지역의 안정화와 발전’을 비롯한 11개의 목표를 제시하고 생물권보전지역의 세 가지 기능이 이 목표와 어떻게 연계되어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과정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1. 생물다양성에 중요한 다양하고 특징적인 생태계 보호 및 보전
2. 기후변화 적응 전략 개발
3. 농촌 지역의 (농업, 산림, 상업, 산업, 서비스 관련) 경제적, 사회적, 인구조 안정화와 발전
4. 지속가능한 관광 촉진
5. (이민자, 여성과 남성, 장애를 지닌 사람 등) 모든 사람의 평등한 참여 강화

6. (역사적으로 공유지였던) 특유의 경제활동 지역을 문화경관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유지 및 발전
7. 자연과 경관의 특별한 중요성을 고려하면서 경쟁적인 농업과 임업의 유지와 발전
8. 문화적 정체성 개발과 강화
9. 지속가능박전에 대한 교육 지속과 강화
10. 연구 네트워크 지원 및 촉진
11. 생물권보전지역 국제네트워크 참여

또한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를 위하여 초기 단계에서의 참여, 지정 이후 참여 주체의 관리와 네트워킹 전략 등 관리 참여와 관련한 체계적인 관리 계획이 조직도를 통해 잘 드러나 있는 등 독일 흑림 생물권보전지역 사례는 지정 이후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를 위해 관련 이해관계자와 관리에 대한 책임을 포함한 관리 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한 좋은 사례다.



흑림 생물권 보전 지역(Black Forest Biosphere Reserve) 관리에 참여하는 조직.  
(출처: Baden-Württemberg(2016). Biosphere Reserve Black Forest 신청서, p. 36.)

대한민국에서 생물권보전지역을 신청할 때에는 본 신청 절차에 앞서 예비신청 절차가 진행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예비신청서는 생물권보전지역 후보지에 대한 개요와 생물권보전지역으로서의 가치 및 활동 방향에 대한 내용, 구역 설정의 개요를 기술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통해 신청 지역의 생물권보전지역으로서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완성도가 더욱 뛰어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신청서에는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지에 대한 개요, 특히 생물권보전지역의 세 기능(보전, 발전, 지원)을 어떻게 충족시키고자 하는지에 대한 내용과 지정 기준에 얼마나 적합한지에 대한 내용을 「개요」 부문에 기술하도록 되어 있고, 「상세 기술」 부문에는 신청지의 위치, 크기, 생물지리학적

지역, 토지 이용, 신청지의 인구, 생물물리적 특징, 생태계 서비스,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의 주요 목적, 세 가지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거버넌스 관련 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기술하도록 되어 있다.

생물권보전지역 예비신청서와 본신청서에 들어갈 자세한 내용과 작성 시 유의 사항은 [부록]을 참조하도록 한다.

**• 생물권보전지역의 구역과 국내 보호지역의 관계**

생물권보전지역의 구체적 규율은 각국의 국내법에 따른다는 원칙에 따라 국내 보호지역의 범주를 고려하여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생물권보전지역의 구역을 설정할 때 각 생물권보전지역의 구역과 주요 국가 보호지역의 기본적인 관계에 관해 MAB한국위원회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을 위한 국가 기준과 절차 가이드라인」에서는 아래와 같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해당 지역의 특성이나 기타 합당한 이유가 제시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의 예외로 고려할 수 있으나 법정 보호지역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핵심구역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 아래의 제시 내용은 생물권보전지역의 구역 설정 시 참고용<sup>4</sup>으로 제안된 내용이며, 유연성 있게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보호지역 명칭 (관련 법)	관리·운영 주체	행위 제한/ 법적 구속력 여부	생물권보전지역	
			핵심구역	완충구역
자연공원 (자연공원법)	국토부	예 / 예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	공원마을지구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부	예 / 예	생태·경관 핵심보전구역 생태·경관 완충보전구역	생태·경관 전이보전구역
습지보호지역 (습지보전법)	환경부	예 / 예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법)	산림청	예 / 예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4 MAB 한국위원회(2015).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을 위한 국가 기준과 절차 가이드라인. p. 7.

천연기념물, 명승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청	예 / 예	지정문화재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부	예 / 예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산림청	예 / 예	핵심구역	완충구역
해양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관리·운영 주체	해양 수산부	예 / 예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	주변 해역

## 정기보고 절차 및 보고서 작성

제28차 유네스코 총회에서는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에 관한 결의안 28C/2.4를 채택하고, 이 규약에서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지역의 기준을 정의(제4조)하고 있다.

생물권보전지역은 별도의 재심사나 재지정 절차, 승인 취소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보완과 관리 및 이행상황의 검토를 위하여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 제9조에는 10년마다 각각의 생물권보전지역의 상태를 제4조의 기준에 근거하여 해당 기관이 준비하여 그 회원국이 사무국으로 제출하는 보고서를 기준으로 정기 검토, 정기적 평가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10년 주기 중간의 5년마다 간략한 중간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기보고서를 통해 각 생물권보전지역이 규약의 제4조의 기준, 특히 세 기능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MAB 국제조정이사회가 검토할 수 있어야 하며, 양식의 마지막 부분인 기준과 진행 경과에서는 생물권보전지역이 어떻게 각 기준을 충족시키는지 명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각 생물권보전지역의 실질적 관리와 운영 상황을 검토하고, 생물권보전지역의 세 가지 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정기보고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 제1부. 보고 기간에 생물권보전지역에서 나타난 주요 변화들을 중점적으로 요약
- 제2부. 인간적 특성, 물리적 특성, 생물학적 특성 그리고 제도적 측면에서 모두 자세하게 설명
- 제3부. 세 개의 부록으로 이루어져 있음. A1)은 MABnet의 생물권보전지역의 주소록을 업데이트 하는 데 사용(각 생물권보전지역이 직접 작성해야 함), A2)는 생물권보전지역의 홍보 및 커뮤니케이션 자료로 제공하는 데 사용(각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책임자 또는 정기보고서 작성 책임자가 서명해야 함), A3)는 1995년 제정된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으로서 참고 자료로 실고 있음.

정기보고서 양식은 영어나 불어, 스페인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무국에 다음과 같이 2부를 제출한다.

- 1) 원 서명, 승인서, 용도구획도 및 보완 문서들과 함께 인쇄된 원본을 공식적인 유네스코 경로(유네스코 국가위원회 또는 유네스코 상주 대표부)를 통해 사무국에 보낸다.
- 2) 검토 양식과 지도(특히 용도구획도)의 디지털 본은 MAB 사무국으로 직접 보낸다.

정기보고서에 제시된 정보는 다음과 같이 이용된다.

- 생물권보전지역 국제자문위원회와 MAB 국제조정이사회의 생물권보전지역 검토
- 전 세계 생물권보전지역에 관심 있는 이들 간의 연락과 교류를 촉진하는 유네스코 MABnet과 같은 세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을 활용

정기보고서에 들어가는 내용 목차는 다음과 같으며,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부록]에서 다룬다.

구분	내용 목차
제1부. 개요	개요
제2부. 정기보고서	① 생물권보전지역 ② 지난 10년간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일어난 중요한 변화 ③ 생태계 서비스      ④ 보전 기능 ⑤ 발전 기능            ⑥ 지원 기능 ⑦ 거버넌스,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정 ⑧ 기준 및 진행 경과    ⑨ 보완 문서    ⑩ 주소
부록 1	MABnet 생물권보전지역 주소록
부록 2	홍보 및 커뮤니케이션 자료
부록 3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

##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와 다른 보전지역에 시사점

생물권보전지역의 주요한 특징은 다른 보전지역과 다르게 세 가지 상호 연결된 기능인 보전, 발전, 지원의 기능을 달성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 기업의 자주적이고 참여적인 거버넌스 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구역 지정 체계(핵심구역, 완충구역, 협력구역)를 지니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특히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접근과 자연자원 이용에 대한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화를 중시한다.

생태계 관리에 있어서는 전통의 지혜, 생물학적·문화적 다양성을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지역의 고유한 생태문화다양성을 보전하고 지키고자 노력한다. 연구와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시범지역이 됨과 동시에 교육과 훈련을 위한 우수 사이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노력이 실제로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독려하며, 생물권보전지역의 질과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에 따라 각 생물권보전지역은 10년마다 생물권보전지역의 기능, 구역 설정, 규모, 지역사회 참여 등의 내용을 담은 정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정기보고를 통해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 제4조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 MAB 국제조정이사회는 해당 국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만약 합리적인 시간 내에 시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정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기대한다.

- 국제 네트워크 연계: 유네스코가 지정한 국제적 인증 지역에 대한 홍보효과와 네임 밸류를 확보
- 지역특산물 브랜드 강화: 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자체로서의 지역 브랜드 가치가 생기고, 생물권보전지역의 라벨링 및 로고를 활용한 브랜드 강화로 지역에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기를 기대함
- 지역 이미지 개선: 청정지역, 관광명소, 생물다양성 보전지역으로 지역의 지명도 상승 효과
- 지역주민 자긍심 고취: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에 지역주민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활동 과정에서 지역에 대한 애착과 함께 자긍심이 높아지는 효과
- 제도적 지원: 핵심구역에 대한 지속적 관리와 연구, 모니터링 활동의 체계적 도입으로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역의 자연환경보전에 제도적 지원이 가능하게 됨

지속가능발전모델로서 생물권보전지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 중 하나는 바로 지정 후 '관리'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여타 보전지역이나 국제협약과 다르게 해당 국가 내에서 필요 시 관련 법률을 적용받는 자율 프로그램으로 그 무엇보다 지정 지역의 자율성과 내발적 참여를 요구하며 중요시한다. 때문에 때로는 그 자율성이 생물권보전지역의 생태계 보전과 의사결정 과정에

서의 신속한 진행과 발전을 방해하기도 하지만, 지역 내에서 관리·운영 시스템이 스스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면 상향식 지속가능발전이 가능하게도 한다.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정 후 관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결국 생물권보전지역의 주민, 지역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참여’라고도 할 수 있다.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 체계에는 보전지역이 속해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토지 이용, 자연환경 보전, 문화와 사회 분야, 연구, 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경제와 관광, 자연공원 등과 관계된 지역주민, 연구·교육 기관, 기업, 전문가, 보호지역 담당 기관, 중앙부처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킨다. 또한 가능하다면 기초지자체를 관할하는 광역지자체가 참여하는 관리 전담 기구 설치를 통해 각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이고 원활한 활동과 참여를 지원하는 데 힘을 실어야 한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세 가지 기능의 적용과 관리에의 참여를 위해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분야별 참여	방법
홍보와 교육	정보센터, 관광과 여행, 학교를 통한 이벤트, 생물권보전지역의 날 운영, 지역사회와 기업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수행, 언론, 라디오, TV, 전자매체 등을 통한 홍보
네트워킹과 조율	갈등 중재, 협력과 네트워킹을 통한 시민사회 활동과 이니셔티브 지원, 각종 협회 및 단체의 활성화와 지원
재정과 자금 지원	생물권보전지역으로부터의 직접적 자금 조달, 국가 자금, 민간 재단, 다른 제3자로부터의 간접적 자금 조달, 자원 및 인프라 제공
활발한 참여를 위해 가능한 다양한 방식 운영	워크숍을 통한 참여, 관련 위원회 회의, 운영위원회, 프로젝트 기반 워킹 그룹, 토지 이용 및 관리 측면에서의 활동

생물권보전지역은 앞서 언급되었듯이 ‘보전, 지원, 발전’의 세 가지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이 중 ‘발전’ 기능에서는 사회·문화·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인간 발전을 촉진하도록 하는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독려하기 위해 각 생물권보전지역에서는 지역 내 환경교육의 강화, 생태관광의 적극적 운영, 생물권보전지역의 브랜드 개발(라벨링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꾀하고 있다.

### • 독일 쇼프하이데-코린 생물권보전지역의 의사결정 교육 우수 사례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의 의사결정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이는 자신과 타인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과정이며 민주적·참여적 의사결정 역량을 키우는 것 자체가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독일 쇼프하이데-코린(Schorfheide-Chorin) 생물권보전지역의 “숲과 나” 역할 게임을 통한 의사결정 교육 사례는 이 지역 어린이들에게 보전지역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보전지역의 의사결정 과정에는 갈등 상황이 자주 생긴다는 것에서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먼저 며칠 동안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정 계기, 숲의 여러 가지 유형, 각각의 생물다양성과 기능 등이 포함된 생물권보전지역과 관련한 다각적인 학습을 진행하도록 한다.

이어서 네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모의 지방의회 회의를 진행한다.

예를 들어, 놀이공원(일자리와 관광객 유치) 때문에 숲이 파괴될 경우를 주제로 그룹 의사결정에 대한 토의를 하는 경우, 네 그룹은 각각 투자자, 건설업자, 임야 소유주, 환경보전그룹 대표(또는 하이킹, 스마 클럽 같은 지역 자연보호단체)의 입장을 대변한다.

각 그룹 내에서 준비하는 입장에 따른 내용뿐만 아니라 상반된 관점을 대변하고 다른 관점을 수용하며 타협책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이해당사자들 간의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개발하고, 그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결정’과 민주적이고 폭력 없는 갈등 해결 능력과 참여의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다.

### •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하례리 생태관광 우수 사례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의 경우,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생태관광마을 하례리·저지리 마을사업’과 같이 생태관광 사업명칭에 생물권보전지역을 명시하여 생물권보전지역 내 마을이 지속가능발전 모델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발전시킨 사례다.

제주도 하례리 지역은 환경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생태관광 사업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생태관광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역주민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에서부터 사업을 시작했다. 먼저 관심 있는 지역 내 주체들을 발굴하고, 하례리 마을의 자연생태환경과 문화, 전통의 지혜를 담은 마을의 역사를 외부로부터가 아닌, 지역주민이 스스로 발견하고 상호 학습과 기억의 나눔을 통해 자기화하는 과정을 이끌어갔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변화를 스스로 실현하였고, 지속적인 자기역량 강화 노력을 통해 하례리 지역 생태관광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이 직접 발굴하고 개발한 생태관광 프로그램(핵심구역인 효돈천의 특별한 자연환경과 마을 숲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전통의 지혜를 담은 먹거리 프로그램 등)은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의 과정을 현재도 진행하고 있다. 하례리 생태관광 프로그램은 제주 지역 내뿐만 아니라 제주 외부에서도 우수한 사례로 인정받고, 참여자 또한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하례리 지역 생태관광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 된 주요한 요인은 지역 생태관광의 지역 특성화와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과 발전 기능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스스로 발전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주체적인 참여다.

생물권보전지역 내에서 추진되는 생태관광 사업은 보전·지역발전 관련 정부지원 사업인 환경부 생태관광 육성 모델사업, 문화관광부 관광두레사업, 해양수산부의 해양보호지역 지원사업, 산림청 산촌생태마을사업 등 생물권보전지역 내 관련 정부 지원사업의 다양한 정보와 지원 가능성을 모색하여 적용할 수도 있다.



• 오스트리아 그로세스 발저탈 생물권보전지역 지역경제 관련 활동 사례

오스트리아 서쪽에 있는 그로세스 발저탈Großes Walsertal 생물권보전지역 지역 학생공모를 통해 로고를 채택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이 공모 과정에서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을 높인 바 있다.

그로세스 발저탈 생물권공원은 낙농인, 치즈 생산자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발저스톨츠 Walserstolz’라는 산악 치즈 상표를 개발하여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생산된 좋은 품질의 치즈임을 알리기 위해 치즈에 로고를 부착하여 상품 가격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또한 지역 내에서 생태적인 방식으로 수확하고, 지역 내에서 가공한 목재에 대해서는 ‘베르그홀스Berghols’이란 상표를 개발하여 생물권보전지역 내 친환경적인 목재 상품의 개발과 로고 인증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고유 수종 산림을 유지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알케밀라Alchemilla’라는 여성을 위한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내 허브의 다양한 가치를 전달하고, 고품질의 초본 제품을 비롯해 생물권보전지역에 있는 허브 종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그로세스 발저탈 생물권보전지역 제품으로 채워진 ‘맛있는 상자’ 제품은 다양한 크기별로 주문 예약을 통해 판매하면서, 지역 농산물의 더 나은 마케팅에 일조하고 있다.

그로세스 발저탈 생물권공원은 생물권보전지역 라벨 인증을 받고 싶은 기업의 경우, 단순히 개별 상품을 인증받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파트너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2006년 농업, 낙농, 관광, 산림 등 사업체들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그로세스 발저탈 비즈니스협회’는 그로세스 발저탈 생물권공원의 비전에 따른 ‘발전’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협회 회원의 공동 마케팅, 마케팅 형성과 운영, 관련 정보 교류, 일자리 보장, 직업연수 프로그램의 제공 등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협력과 지원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로세스 발저탈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맛있는 상자' 마케팅 제품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생물권보전지역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 후보지에 복수의 기초·광역 지자체의 행정구역이 포함되거나 또는 신청인이 기타 협의체인 경우에는 기초·광역 지자체 또는 기타 협의체 구성기관 간 관리 체계 및 협력 방안(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 등)을 생물권보전지역 신청 시부터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협력 방안에는 생물권보전지역 운영 과정에서 지역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을 지속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민주적이고도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생물권보전지역이 특정 지자체의 또 다른 이름의 보전 사업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가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지속가능발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생물권보전지역의 신청과 지정으로 그치지 않도록 생물권보전지역의 실질적인 운영·관리 계획 실행에 필요한 현실적인 필요 자원 확보를 신청 단계에서부터 미리 계획해야 한다.

## 주요 용어

- **인간과 생물권(MAB) 프로그램 Man and the Biosphere Programme**  
인간과 환경의 관계를 지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학제적 연구와 능력 배양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간 프로그램
- **생물권보전지역 Biosphere Reserve**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MAB) 프로그램의 틀 내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육상 및 해안/해양 생태계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인간과 생물권 사이의 균형잡힌 관계를 촉진하고 입증하기 위해 설립
- **접경생물권보전지역 Transboundary Biosphere Reserves**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중, 특히 국경을 넘나드는 지역 지정을 통해 국경을 넘어 평화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 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2개 이상의 국가가 함께 신청해야 함
- **MAB 국제조정이사회 MAB-ICC;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for MAB**  
신규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결정 등 MAB 운영 및 활동을 검토·평가·조정하는 의사결정기구
- **MAB 의장단 Bureau**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선발되며, 1명의 의장과 5명의 부의장으로 구성됨. 부의장 중 1인은 기록자(reporter)가 됨
- **생물권보전지역 국제자문위원회 IACBR: 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 for Biosphere Reserves**  
세계생물권보전지역네트워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MAB국제조정이사회, 세계생물권보전지역네트워크(WNBR),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자문하는 학술·기술위원회
- **핵심구역 Core area**  
경관, 생태계, 종 및 유전자 변이의 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보호하는 구역
- **완충구역 Buffer zone**  
핵심구역을 둘러싸거나 인접하여 과학적 연구, 모니터링,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건전한 생태관광 등을 수행하는 구역
- **협력구역 Transition area**  
사회문화적으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인간 발전을 장려하는 활동이 활발하게 허용되는 구역
- **생물권보전지역 정기보고 Periodic Review**  
지속가능발전 실행 지역으로서 생물권보전지역의 질과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10년마다 생물권보전지역의 기능, 구역 설정, 규모, 지역사회 참여 등을 평가
- **생물다양성협약 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생물다양성의 보전,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생물자원을 이용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분배할 것을 목적으로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
-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00-2015년 새천년발전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대체하는 발전의제로 빈곤, 경제 사회적 양극화, 각종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지구 환경의 파괴 등 각국 공통의 지속가능발전 위협 요인들을 함께 완화하기 위한 국가별 이행 및 지구적 협력 의제

## 참고 문헌

- Baden-Württemberg(2016). Black Forest Biosphere Reserve 신청서
- MAB 한국위원회 사무국(2013).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서
- MAB 한국위원회(2015).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을 위한 국가 기준과 절차 가이드라인.
- MAB 한국위원회(2015). 한국 인간과 생물권(MAB) 프로그램 전략과 행동계획(2016-2025).
- MAB 한국위원회(2016). MAB한국위원회 정책브리프 1호-생물권보전지역
- 지속가능발전교육 증진 방안
- UNESCO(1996). Biosphere Reserves : The Seville Strategy and the Statutory Framework of the World Network.
- UNESCO(1996). The Statutory Framework of the World Network of Biosphere Reserves.
- UNESCO(2008). Madrid Action Plan for Biosphere Reserves(2008-2013).
- UNESCO(2011). Dresden Declaration on Biosphere Reserves and Climate Change.
- UNESCO(2013). Biosphere Reserve Nomination Form.
- UNESCO(2015). The MAB Strategy 2015-2025.
- UNESCO(2016). Lima Action Plan for UNESCO's Man and the Biosphere(MAB) Programme and its World Network of Biosphere Reserves(2016-2025).
- MAB한국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unescomab.or.kr/v2/programme/mab01.html>
- UNESCO MAB 홈페이지  
<http://www.unesco.org/new/en/natural-sciences/environment/ecological-sciences/biosphere-reserves/>
- UNESCO MAB 홈페이지 브로슈어  
[http://www.unesco.org/new/fileadmin/MULTIMEDIA/HQ/SC/images/Eglish\\_MAB\\_leaflet\\_2018.pdf](http://www.unesco.org/new/fileadmin/MULTIMEDIA/HQ/SC/images/Eglish_MAB_leaflet_2018.pdf)
-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https://www.gfbr.kr/home/inc.php?inc=main>
- 그로세스 발저탈 생물권보전지역 <http://www.grosseswalsertal.at/system/web/>
- 쇼프하이데-코린 생물권보전지역 [www.schorfheide-chorin.de](http://www.schorfheide-chorin.de)
- 하레리 생태관광협의체 <http://haryeri.blog.me/220421070835>

**[부록 1] 리마행동계획**

번호	기대 성과
전략 활동 분야 A. 지속가능발전모델이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세계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A1	생물권보전지역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및 다자 간 환경협정(MEA) 이행에 기여하는 모델로 인정
A2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개방적이고 참여적인 선별·계획·실행
A3	생물권보전지역을 관련 법률과 정책 및 프로그램에 통합하고 생물권보전지역의 기능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이를 보완
A4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지원을 위한 연구와 실천적 학습, 훈련 기회 제공
A5	생물권보전지역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강화
A6	네트워크 규약을 준수하고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세계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A7	생물권보전지역을 생태계 서비스의 원천이자 관리자로 인정
전략 활동 분야 B. MAB 프로그램과 세계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내에서 이루어지는 포용적이고 역동적이며 결과 중심적인 협력과 네트워크	
1	효과적인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자·조정자 및 적극적인 이해관계자
2	포용적인 지역 및 주제별 네트워크
3	재원이 충분한 지역 및 주제별 네트워크
4	효과적인 지역 및 주제별 협력
5	지역 및 주제별 네트워크와 활동의 가시성
6	생물권보전지역 간 초국가적 및 접경지역 협력
7	MAB의 비전과 사명을 공유하는 과학자·지식 보유자로 구성된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학제 간 네트워크
전략 활동분야 C. MAB 프로그램 및 세계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를 위한 효과적 외부 파트너십과 지속가능한 자원 조달	
1	MAB 프로그램과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를 위한 충분한 자원

2	유네스코 내부 및 기타 국제기구와 관련 협약에서 MAB 프로그램을 주요 파트너로 인정
3	자체 수익을 창출하는 생물권보전지역과 지역 네트워크
4	민간 부문에서 MAB 프로그램을 주요 파트너로 인정
5	MAB 프로그램이 국가와 지역의 자원 조달 프로그램 목표 달성에 기여함을 인정
6	생물권보전지역 활동에 기여하는 기업가와 사회적 기업 지원
7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국가적 및 국제적 인정
8	생물권보전지역 간의 시너지 강화
전략 활동 분야 D. 포괄적·현대적·개방적이고 투명한 소통과 정보 및 데이터 공유	
1	MAB 문서와 데이터, 정보, 기타 자료의 완전한 가용성
2	MAB 프로그램의 전 부문에 대한 인식 증진
3	광범위한 참여와 아웃리치
전략 활동 분야 E. MAB 계획 및 세계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의 거버넌스 및 내부 거버넌스	
1	MAB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한 정부와 회원국의 강력한 지원
2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MAB 국가위원회 구성
3	회원국의 진척 상황 정기 업데이트 및 행동 계획 모니터링
4	지역별, 주제별 네트워크의 효과적인 기능

## [부록 2] 국내 생물권보전지역 예비신청서 작성 내용

대한민국에서 생물권보전지역을 신청할 때에는 예비신청 절차가 본 신청 절차에 앞서 진행되며, 이를 통해 신청 지역의 생물권보전지역으로서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더욱 완성도 있는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예비 신청서에 들어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생물권보전지역 후보지 개요

① 명칭 및 신청인: 후보지 명칭을 국문과 영문으로 기입할 수 있고, 신청인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를 기입한다.

후보지 명칭	[국문]	[영문]
신청인	[기관/단체명]	[대표자]
	[유형] 1개 지자체( ) 복수 지자체( ) 기타 협의체( )	[담당자 및 연락처]

② 지자체별 후보지의 면적 및 인구

③ 후보지의 위치도: 좌표, 행정구역을 표시하며 별첨 제출이 가능함

### 나. 생물권보전지역으로서 가치 및 활동 방향

① 생물권보전지역으로서 생태·문화적 가치 및 특징

② 생물권보전지역의 세 가지 기능을 위한 수행 내용 및 계획

-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전 관련

- 학술 연구 및 교육 관련

- 지속가능한 지역

③ 발전 관련

- 문화다양성 등 기타

- 관리 체계 및 자원 등의 관리 방향

#### 다. 구역 설정 개요

- ① 구역 설정 지도: 행정구역, 토지피복, 기존 보호구역 경계를 포함하여 별첨 제출 가능
- ② 각 구역의 면적, 소유 현황, 관리기관

구역	전체 면적(ha)	소유 현황(ha) (국/공/사유지 면적)	관리·책임 기관	비고
핵심구역				
완충구역				
협력구역				

- ③ 각 구역 설정의 근거 : 해당 구역에 적용되는 보호·관리 법제도, 정부 및 민간의 주요 사업 등
  - 핵심구역
  - 완충구역
  - 협력구역

**[부록 3]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서 구성과 작성 시 유의점**

구분	신청서에 들어갈 내용과 작성 시 유의점	
가. 개요	1.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지의 이름	사람들이 해당 장소와 연관성을 느끼도록 지역에서 통용되는 지리적, 설명적 또는 상징적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2. 국가명	
	3. 생물권보전지역의 세 기능의 충족	<p>'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 제3조에 보전, 발전, 지원의 세 기능이 제시되어 있음. 신청지역이 어떻게 세 기능을 충족시키는지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p> <p>3.1. "보전 : 경관, 생태계, 종 및 유전적 변이의 보전에 기여" [지역적(regional) 또는 지구적 규모에서 생물학적 및 문화적 다양성을 보전하는 데 신청지가 갖는 중요성을 강조]</p> <p>3.2. "발전: 사회·문화적,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인간 개발 강화"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지가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 흐름의 보장 등, 지속가능한 경제적·사회문화적 발전 촉진이라는 목적을 충족시키는 데에 신청지역이 하고 있는 활동과 가능성을 기술)</p> <p>3.3. "지원: 지방·지역·국가·지구적인 보전 및 지속가능발전 문제와 관련한 시범사업, 환경교육, 훈련, 연구, 모니터링 지원" (현재 또는 계획된 활동을 제시)</p>
	4.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정 기준	<p>4.1. "인간 간섭의 점진적 변화를 포함하여 주요한 생물 지리학적 지역을 대표하는 생태시스템의 모자이크를 포괄한다" (주요한 생물지리학적 지역이란 엄격히 정의되지 않으며 Udvardy 분류 체계를 참고하는 것이 유용함)</p> <p>4.2.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중요하다." [고유종이나 희귀종의 수만을 뜻하지 않으나 지방, 지역 또는 지구적 수준에서 IUCN(세계자연보전연맹)의 적색 목록이나 CITES(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부속서에 오른 종들, 그리고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세계적 중요종, 희귀한 서식처 유형, 또는 독특한 토지 이용 관행(예를 들어 전통적인 방목이나 숙련된 고기잡이를 언급할 수 있음)</p> <p>4.3. "지역적(regional)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 접근법을 모색하고 보여줄 기회를 제공한다." [해당 지역(또는 "생태지역(eco-region)")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우수 지역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반 용어로 기술]</p> <p>4.4. "생물권보전지역의 세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크기다." [특히 (a) 핵심 지역과 완충지대의 장기적인 보전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표면적과 (b) 지역공동체와 함께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시험하고 보여주는 일을 하는 데 적합한 지역의 활용 가능성을 말함]</p>

<p>가. 개요</p>	<p>4.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정 기준</p>	<p>4.5. 적절히 옹도구획하여  “(1)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 목적에 따라 장기적으로 보호받고 이러한 목적을 충족시킬 만큼 충분히 큰 곳으로 법적으로 설립된 하나 또는 다수의 핵심구역”  (핵심구역의 법적 지위, 크기, 주요 보전 목적 등을 간략히 기술)  “(2) 보전 목적에 적합한 활동만이 가능한 곳으로 핵심 지역을 둘러싸거나 이에 접해 있으며 명확히 확인되는 하나 또는 다수의 완충지대”  (법적 지위, 크기, 진행 중이고 계획된 활동 등 완충지대에 대해 간략히 기술)  “(3)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 관행이 장려되고 개발되는 바깥의 협력구역”  [협력구역은 해당 지역(region)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핵심 문제와 관련된 곳이기 때문에 세비아 전략에서 협력구역이 더욱 강조되었음. 장 단기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들의 유형 등 전이지역에 대해 간략히 기술. ‘마드리드 실행 계획’은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바깥 경계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4) 위 세 구역 간의 상호 영향에 관한 추가 정보를 제시</p> <p>4.6. “생물권보전지역의 디자인과 기능 수행에 적절한 범위의 이해관계자들, 특히 공공기관, 지역공동체, 민간 이익집단이 관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조직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1) 마련된 혹은 예정된 조직화 장치에 대해 기술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 완충 전이지역에서 일어나는 활동을 지원하는 공공 및/또는 민간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예를 들어 협약, 프로토콜, 의향서, 보호구역 계획 등)에 대해 기술)  (2) 문화 및 사회적 영향 평가, 혹은 유사한 도구나 가이드라인이 사용된 적이 있는가?  [예: 생물다양성협약(CBD)의 Akwe: Kon 가이드라인1] : “자유롭고 우선적이고 공유된 합의” 가이드라인, 생물문화적 지역사회 프로토콜 등(유네스코 MAB 프로그램은 “유엔 원주민권리선언”에 따라 생물권보전지역에서 관련 프로그램이나 도구가 원주민의 권리와 관습적 권리를 고려하고 존중할 것을 권장  (<a href="http://www.un.org/esa/socdev/unpfii/documents/DRIPS_en.pdf">http://www.un.org/esa/socdev/unpfii/documents/DRIPS_en.pdf</a> when relevant and appropriate)</p> <p>4.7. 실행 메커니즘: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지가 아래 사항들을 갖추고 있는가?  “(1) 완충지대 한 곳 또는 다수에서 인간의 이용과 활동을 관리할 메커니즘”  (‘예인 경우 그 내용을 서술. 아닐 경우 계획된 것에 대해 기술)  “(2) 생물권보전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을 위한 관리 정책이나 계획”  [‘예인 경우 그 내용을 서술. 아닐 경우 그러한 계획이나 정책이 어떻게 개발될 것인지 그리고 일정을 기술 (만약 신청 지역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존 자연보호 구역과 일치한다면 이의 관리 계획이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지의 관리 계획과 어떻게 상호 보완될 것인지 기술)]  “(3) 이러한 정책이나 계획을 실행하도록 지정된 기관이나 메커니즘”  “(4) 연구, 모니터링, 교육,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  (‘예인 경우 그 내용을 기술. 아닐 경우 계획된 것에 대해 기술)</p>
	<p>5. 승인</p>	<p>5.1. 핵심구역의 관리를 책임지는 당국의 서명  5.2. 완충구역의 관리를 책임지는 당국의 서명  5.3.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의 관리를 책임지는 국가(또는 주, 도) 행정기관의 서명  5.4. 협력구역 내 당국, 당국에 의해 인정된 선출 지방정부, 또는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대변인의 서명  5.5. MAB국가위원회 대표 또는 연락 담당자의 서명</p>

<b>나. 상세기술</b>	1. 위치	<p>좌표와 지도</p> <p>1.1. 생물권보전지역의 표준 지리 좌표 제공 [세계좌표체계(WGS) 84에 따라 제시] 1.2. 생물권보전지역의 세 용도구역의 정확한 위치와 경계의 지형층지도 제공 [인쇄 및 디지털 본 형태로 모두 제출]. 지도 제작에 사용된 shapefiles(WGS84 좌표 체계에도 있음) 이 디지털 본에 첨부되어야 함. 가능한 한 이 지도의 인터넷 링크를 기재</p>
	2. 크기	<p>총면적과 핵심-완충-협력구역의 크기를 육상, 해양(해당되는 경우), 전체로 구분하여 표기</p> <p>2.1. 생물권보전지역의 각 기능과 관련하여 용도구획 근거를 간략히 서술. 다른 유형의 용도구획도 있다면 생물권보전지역의 용도구획 요건과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서술 (각 용도구역을 정의하는 국가 기준이 별도로 있다면 이에 대한 정보를 간략히 서술)</p>
	3. 생물지리학적 지역	<p>생물권보전지역 신청지가 있는 생물지리학적 지역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름을 표기. "주요 생물지리학적 지역"은 엄격히 정의되지 않지만 Udvardy 분류 체계를 참고 (<a href="http://www.unep-wcmc.org/udvardys-biogeographical-provinces-1975_745.html">http://www.unep-wcmc.org/udvardys-biogeographical-provinces-1975_745.html</a>)</p>
	4. 토지 이용	<p>4.1. 역사적 토지 이용 :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지 내 각 용도구획의 과거 또는 역사적인 토지 이용, 자원 이용, 경관 변화 역사에 대해 알려진 게 있다면 간략히 요약)</p> <p>4.2. 생물권보전지역의 주요 이용자들은 누구인가? [각 용도구역 및 주요 이용 자원에 대해] 해당하는 경우, "유엔 원주민권리선언"을 고려하여 원주민들의 관련 정도를 서술 (<a href="http://www.un.org/esa/socdev/unpfii/documents/DRIPS_en.pdf">http://www.un.org/esa/socdev/unpfii/documents/DRIPS_en.pdf</a>)</p> <p>4.3. 생물권보전지역의 각 용도구역의 토지 이용과 접근에 관한 규정(관습적 또는 전통적 규정 포함)은 어떠한 것들인가?</p> <p>4.4. 자원에 대한 접근과 통제에 대한 여성과 남성 간의 다른 수준에 대해 서술 [남성과 여성이 같은 자원을 다르게 이용하는가(예: 생계, 시장, 종교적/의례적 목적, 아니면 서로 다른 자원은 이용하는가?)]</p>
	5.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지의 인구	<p>대략적인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지 내 거주 인구: 용도구획별 상주 인구, 계절별 인구 구분</p> <p>5.1.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지 안이나 인근에 사는 지역사회에 대해 간략히 기술 [민족적 근원과 구성, 소수민족 등 주요 경제 활동(예: 목축, 관광)과 주요 거주 지역의 위치를 지도(1. 2번) 참고 정보와 함께 제시]</p> <p>5.2. 지도(1. 2번)를 참고 자료로 하여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지 내 및 인근의 주요 거주지(들)의 이름 명시</p>

<b>나.</b> <b>상세기술</b>		<p>5.3. 문화적 중요성  [과거 및 현재의 문화적 가치(종교, 역사, 정치, 사회, 민족) 및 기타 관련된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지의 중요성에 대해 가능하다면 유형 및 무형 유산을 구분하여 기술]</p> <p>참고: 1972년 UNESCO의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보호협약과 2003년 UNESCO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a href="http://portal.unesco.org/en/ev.php-URL_ID=13055&amp;URL_DO=DO_TOPIC&amp;URL_SECTION=201.html">http://portal.unesco.org/en/ev.php-URL_ID=13055&amp;URL_DO=DO_TOPIC&amp;URL_SECTION=201.html</a>,  <a href="http://portal.unesco.org/en/ev.php-URL_ID=17716&amp;URL_DO=DO_TOPIC&amp;URL_SECTION=201.html">http://portal.unesco.org/en/ev.php-URL_ID=17716&amp;URL_DO=DO_TOPIC&amp;URL_SECTION=201.html</a>)</p> <p>5.4. 생물권보전지역 내 음성 및 문어(文語: 민족어, 소수어, 소멸 위기 언어 포함)의 수를 명시  (UNESCO 멸종 위기 언어 아틀라스 등을 참고  <a href="http://www.unesco.org/culture/languages-atlas/index.php">http://www.unesco.org/culture/languages-atlas/index.php</a>)</p>
	6. 생물물리적 특징	<p>6.1. 신청지의 장소적 특성과 지형에 관한 일반적 기술</p> <p>6.2. 고도 범위: 해발 최고도, 해발 최저도, 해양/연안 지역의 경우(평균해수면 아래 최대 깊이)</p> <p>6.3. 기후: 가장 따뜻한 달의 평균기온, 가장 추운 달의 평균기온, 연평균 강수량,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지 안이나 근처의 기상관측소 유무와 이름, 위치, 운영 기간을 표기</p> <p>6.4. 지리, 지형, 토양  (암상지질, 퇴적물, 중요 토양 유형을 비롯하여 중요한 형성물과 조건을 간략히 기술)</p> <p>6.5. 생물기후 지대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지가 위치한 생물기후 지역을 명시)</p> <p>6.6. 생물학적 특징  “주요 서식지 유형(열대상록수림, 사바나림, 고산툰드라, 산호초, 대형갈조류층 등)과 토지피복 유형(주거지, 농경지, 목초지, 경작지, 방목지)을 열거”  각 유형에 대해 아래 해당 사항을 기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적(Regional) 특징: 서식지나 토지피복 유형이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지가 있는 생물지리학적 지역 내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 서식지나 토지피복 유형의 대표성을 평가</li> <li>- 지방적(Local) 특징: 서식지나 토지피복 유형이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지가 있는 생물지리학적 지역 내에 제한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경우, 서식지나 토지피복 유형의 고유성을 평가</li> </ul>
	7. 생태계 서비스	<p>7.1. 생물권보전지역의 각 생태계가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와 이 서비스의 수혜자들을 열거  [새천년생태계평가틀(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Framework)와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경제학(TEEB)을 참고]</p>

**나.  
상세기술**

	7. 생태계 서비스	<p>7.2. 생태계 서비스의 지표가 생물권보전지역의 세 기능(보전, 발전, 지원)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지를 밝힌다. 사용된다면, 어떠한 서비스인지 구체적으로 설명</p> <p>7.3.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생태계 서비스 제공에 연관된 생물다양성에 대해 서술(관련된 종이냐 집단)</p> <p>7.4. 생태계 서비스 평가가 생물권보전지역에서 행해졌는지 여부를 밝힌다. 만약 행해졌다면 이 평가가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데 사용되는가?</p>
	8.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의 주요 목적	<p>8.1. 신청한 생물권보전지역의 주요 목적을 아래에서 제시하는 세 기능(보전, 발전, 지원)과 통합하여, 생물 및 문화 다양성의 요소를 포함하여 기술. 간접적인 부담(pressure) 및/또는 조직 차원의 문제들을 명시</p> <p>8.2.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기술 [가능하다면 의제 21, Rio+20, 2015년 이후 SDG(지속가능발전목표)를 참조로 하여 기술]</p> <p>8.3.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에 연관된 주요한 이해관계자들을 명시</p> <p>8.4. 생물권보전지역을 디자인하는 데 어떤 자문 절차가 사용되었는가?</p> <p>8.5. 이해관계자들이 생물권보전지역의 실행과 관리에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촉진할 것인가?</p> <p>8.6. 생물권보전지역의 목적과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자원들(재정적, 물질적, 인적)이 어디서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공식화된 약속과 계약을 제시)</p>
	9. 보전 기능	<p>9.1. 경관 및 생태계 수준(토양, 물 및 기후 포함)</p> <p>9.2. 종 및 생태계 다양성 수준</p> <p>9.3. 유전적 다양성 수준</p>
	10. 발전 기능	<p>10.1. 사회-문화적 그리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개발과 인간 개발 촉진의 가능성 - 해당 지역이 어떻게, 왜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우수/모델 지역으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설명 - 변화와 성공에 대한 평가(목표와 사용 지표 근거를 함께 기술)</p> <p>10.2. 관광이 주요한 활동인 경우 - 관광 유형과 사용할 수 있는 관광 시설에 대해 기술 - 해마다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지에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가? - 현재 관광 활동 관리 수준 - 현재 또는 예상되는 관광의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과 그 영향의 평가 예측 설명 - 이 영향들을 누가 관리할 것인지</p> <p>10.3. 농업(방목 포함)과 기타 활동(전통적 및 관습적 활동 포함)</p>

<b>나.</b> <b>상세기술</b>		<p>10.4. 생물권보전지역이 그 경계 밖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하여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기여하는 여타 활동들</p> <p>10.5. 지역주민들에 주는 경제적 혜택  - 지역사회가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지로부터 어떤 수입이나 혜택을 어떻게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가?  - 수입이나 기타 혜택을 측정하는 지표</p> <p>10.6. 정신적, 문화적 가치와 관행</p>
	11. 지원 기능	<p>11.1. 연구와 모니터링  -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에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에 대응하고 관리 계획의 이행을 위해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질 기존 및 계획된 연구 프로그램과 사업 및 모니터링 활동, 실행 지역에 대해 기술  -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와 관련된 과거 연구와 모니터링 활동에 대해 간략 기술  -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지 내 어떤 연구시설이 활용가능한지, 생물권보전지역이 이 시설을 지원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기술</p> <p>11.2. 지속가능발전교육과 대중 인식  - 대상 집단과 참여자 수, 해당 지역 제시. 기존 및 계획된 활동에 대해 서술  - 활동을 위한 시설과 자원 활용 가능성 기술</p> <p>11.3.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에 기여  -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지는 어떻게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지역 및 주제 네트워크에 기여할 것인가?  - 생물권보전지역 국제협력으로부터 무슨 혜택을 기대하는가?</p> <p>11.4.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사용되는 내부 및 외부 커뮤니케이션 방법과 매체</p>
	12. 거버넌스, 생물권보전지역 원리, 조정	<p>12.1. 관리 및 조정 체계  - 생물권보전지역의 법적 지위  -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의 법적 지위  - 생물권보전지역 각 구역에서 어떤 행정기관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와 각 행정기관의 권한 명시  - 각 구역의 주된 토지 소유(소유권) 기재  -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책임 관리자/코디네이터와 고용 상황  - 각 구역 혹은 전체 생물권보전지역을 위한 자문 기관 혹은 의사결정 기관의 존재 여부와 내용 기술  - 특별히 생물권보전지역만을 위한 조정 체계 설립 여부  - 관리, 조정이 현지 상황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 관리 효과를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는 절차</p> <p>12.2. 생물권보전지역 내 갈등  - 해당 지역의 자연자원 접근과 이용에 관련한 중요한 갈등/분쟁에 대해 서술. 생물권보전지역이 갈등 예방이나 해결에 기여했다면 무엇이 해결되거나 예방되었는지, 그 성취 내용을 설명  -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행정기관들 간에 갈등이 있다면 이를 서술  - 갈등, 분쟁들을 해결하는데 사용된 방법과 그 효과 설명</p>

	<p>12. 거버넌스, 생물권보전지역 원리, 조정</p>	<p>12.3. 지역사회 대표 참가, 참여, 자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물권보전지역 디자인, 관리·협력 계획 수립, 일상적 관리 등 어떤 단계에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했는지?</li> <li>-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지의 청년들의 상황: 생물권보전지역이 청년들에게 미치는 잠재적 영향, 청년들의 관심과 요구, 청년들의 적극적인 생물권보전지역 거버넌스 체계 참여를 권장하는 인센티브 등</li> <li>- 어떤 형식으로 지역사회를 대변하는지(기업, 협회, 환경단체, 노동조합 등)</li> <li>- 지역사회 단체들을 통합하기 위한 절차</li> <li>- 자문 수단의 사용과 참여자, 의사결정 절차에 미치는 영향 등</li> </ul> <p>12.4. 관리/협력을 위한 계획과 정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생물권보전지역을 위한 관리·협력 계획·정책 존재 여부</li> <li>- 관리·협력 계획 마련에 관여하는 행위자와 관여 방법</li> <li>- 관리·협력 계획 기간과 내용을 서술</li> <li>- 관리·협력이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지 목표들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서술</li> <li>-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역적·국가적 전략 통합 여부</li> <li>- 주요 자원과 연간 예산 추정 금액 제시</li> </ul>
	<p>13. 특별 지정</p>	<p>생물권보전지역 신청지에 해당되는 지정 지역들의 표시와 명칭 기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네스코 세계유산지역, 랍사 습지협약지역, 기타 국제적·지역적 보전 협약, 장기 모니터링 지정, 장기 생태 연구, 기타 등</li> </ul>
	<p>14. 첨부 서류</p>	
	<p>15. 주소</p>	

**[부록 4] 생물권보전지역 정기보고서에 들어갈 내용과 작성 시 유의점**

구분	정기보고서에 들어갈 내용과 작성 시 유의점		
<b>제1부. 개요</b>	1. 생물권보전지역의 이름		
	2. 국가		
	3. 지정 연도		
	4. 정기 검토가 실시된 모든 연도		
	5. 국제조정이사회(MAB-ICC)의 이전 권고 사항(해당되는 경우)		
	6. 어떤 후속 조치가 완료되었는지, 만약 완료되거나 시행되지 않았다면 그 사유 기재(5.에 해당하는 경우)		
	7. 생물권보전지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 조치들을 업데이트		
	8. 본 정기 검토가 수행된 절차에 대한 간략 서술		
	9. 크기 및 공간 구성		
		이전 보고서 및 날짜 (신청서 혹은 정기 검토 시)	제안된 변경 사항 (해당하는 경우)
	육상 핵심지역		
	육상 완충지대		
	육상 전이지역		
	해상 핵심지역		
	해상 완충지대		
해상 전이지역			
10. 생물권보전지역의 인구			
	이전 보고서 및 날짜 (신청서 혹은 정기 검토 시)	제안된 변경 사항 (해당하는 경우)	
핵심지역(상주 및 계절별)			
완충지대(상주 및 계절별)			
전이지역(상주 및 계절별)			

11. 예산(주요 재원, 특별 자본금)과 실행된 혹은 계획된 국제적, 지역적 혹은 국가적 관련 사업과 구상																			
이전 보고서 및 날짜 (신청서 혹은 정기 검토 시)	현재 예산																		
12. 국제적, 지역적, 다자 간 혹은 양자 간 협력 체제. 이러한 체제가 있는 경우, 국제적, 지역적, 다자 간 혹은 양자 간 협약 및 협정 등의 목적 성취와 실행에 기여하는 메커니즘을 개발하는 데 생물권보전지역이 어떻게 기여하는지 서술																			
<b>제2부. 정기 보고서</b>	1. 생물권보전지역																		
	2. 지난 10년간 생물권보전지역의 중요한 변화																		
<p>1.1 지정 연도</p> <p>1.2 첫 정기 검토 및 이후 정기 검토가 실시된 연도(해당되는 경우)</p> <p>1.3 이전 정기 검토의 각 권고 사항에 따른 후속 조치(해당되는 경우), 그리고 후속 조치가 완료/시작되지 않았다면 그 사유</p> <p>1.4 위의 사항에 대한 기타 의견이나 언급할 사항</p> <p>1.5 본 정기 검토가 수행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서술</p> <p>- 어떤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였는가?</p> <p>- 이 검토 과정에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어떤 방법이 사용되었는가? (예: 워크숍, 회의, 전문가 자문)</p> <p>- 이 검토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회의, 워크숍 등이 열렸는가?</p> <p>- 관계자들이 모두 골고루 포함되어 잘 참석하였는가?</p> <p>(참여와 이해관계자들에 대해 서술)</p>																			
<p>2.1 간략한 개요</p> <p>- 지역의 경제와 경관 혹은 서식지 이용의 중요한 변화와 기타 관련 문제들에 대해 서술적으로 기재한다. 생물권보전지역의 거버넌스를 위한 제도적 조정, 생물권보전지역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조정 장치(생물권보전지역의 조직/코디네이터/관리자 포함)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면 기재한다.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거나 이에 대응하는 데 생물권보전지역 조직/코디네이터/관리자가 수행한 역할을 명시한다.</p> <p>2.2 생물권보전지역에 관한 기본 정보를 업데이트</p> <p>- 좌표를 업데이트한다(해당하는 경우). 생물권보전지역의 표준 지리 좌표에 변화가 있는 경우 아래 표에 기재한다 (모두 WGS 84에 따라 제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방위</th> <th>위도</th> <th>경도</th> </tr> </thead> <tbody> <tr> <td>최중앙점</td> <td></td> <td></td> </tr> <tr> <td>최북단점</td> <td></td> <td></td> </tr> <tr> <td>최남단점</td> <td></td> <td></td> </tr> <tr> <td>최서단점</td> <td></td> <td></td> </tr> <tr> <td>최동단점</td> <td></td> <td></td> </tr> </tbody> </table>		방위	위도	경도	최중앙점			최북단점			최남단점			최서단점			최동단점		
방위	위도	경도																	
최중앙점																			
최북단점																			
최남단점																			
최서단점																			
최동단점																			

<p><b>제2부.</b> <b>정기</b> <b>보고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요하다면, 생물권보전지역의 세 구역의 정확한 위치와 경계를 보여주는 업데이트된 지형도를 제공한다. 지도는 인쇄본과 디지털본을 모두 제공해야 한다. 지도 제작에 사용된 Shapefiles(WGS 84 좌표 체계에도 있음)도 본 양식의 디지털 본에 첨부되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 이 지도의 인터넷 링크를 기재한다(예 : 구글맵, 웹사이트).</li> <li>- 생물권보전지역 내 인구 변화. 가장 최근의 인구 조사 결과</li> <li>- 마지막 보고서 이후에 나타난 주요한 변화를 비롯하여 '보전' 기능에 대해 업데이트(4번 문항 참고)</li> <li>- 마지막 보고서 이후에 나타난 주요한 변화를 비롯하여 '발전' 기능에 대해 업데이트(5번 문항 참고)</li> <li>- 마지막 보고서 이후에 나타난 주요한 변화를 비롯하여 '지원' 기능에 대해 업데이트(6번 문항 참고)</li> <li>- 마지막 보고서 이후에 행정 부서 및 조정 체계의 위계에 나타난 변화(해당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거버넌스 관리와 조정에 대해 업데이트(7번 문항 참고)</li> </ul> <p>2.3. 생물권보전지역의 조정/관리를 담당하는 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혹은 향후 5~10년을 위한 비전, 목표, 목적을 비롯한 협력/관리 정책/계획에 대한 업데이트</li> <li>- 대략적인 연간 평균치(또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범위)를 포함한 예산과 지원 인력, 주요 자원 [설립된 재정 파트너십(민간 또는 공공), 혁신적인 재정 계획 등 포함] , 특별 자금(해당하는 경우), 상근 및/혹은 비상근 직원, 직원 파견, 자원봉사자들의 시간 또는 기타 형태의 지원</li> <li>- 지역사회 및/또는 외부의 지원을 얻기 위한 여러 접근법과 수단 등 생물권보전지역의 커뮤니케이션 전략</li> <li>- 지역사회의 여러 부문의 다양한 집단들을 연계("다리 놓기")하는 생물권보전지역 내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 전략(예: 농업 문제, 지역경제 발전, 관광, 생태계 보전, 연구 및 모니터링 등을 위해 일하는 집단들)</li> <li>- 사회·문화적 맥락과 생물권보전지역의 역할에 의거하여 채택된 특별한 비전과 접근법(예: 지역 유산 자원의 홍보, 역사, 문화 및 비교 문화적 학습 기회, 지역주민 협력, 최근 이주 집단들과 원주민들에 대한 접근)</li> <li>-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에 사용되는 전통 지식 및 향토 지식</li> <li>- 지역사회의 문화발전 사업. 지역사회의 언어와 무형 및 유형 유산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활동. 정신적 가치, 문화적 가치, 관행이 촉진되고 전수되고 있는가?</li> <li>- 생물권보전지역 내의 구어 및 문어(文語)의 수를 명시한다(민족어, 소수어, 소멸 위기 언어 포함). 구어 및 문어의 수에 변화가 있었는가? 소멸 위기 언어를 되살릴 프로그램이 있었는가?</li> <li>- 관리 효과성.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조정 의 장애물 혹은 생물권보전지역의 효과적인 기능을 어렵게 하는 문제</li> </ul> <p>2.4. 생물권보전지역과 관련하여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다음 사항에 대한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물권보전지역이 현지, 지역 또는/및 국가 발전 계획에 명확히 언급되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어떤 계획인가? 지난 10년간 완료되거나 개정된 계획들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li> <li>- 생물권보전지역 내 정부 기관과 기타 조직의 관리/협력 계획의 성과</li> <li>- 생물권보전지역 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참여. 어떤 지역사회, 집단 등이 어떻게 참여하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의 역할, 지역 조직들과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들이 참여하는가? 여성들의 관심과 요구가 생물권보전지역 내에서 동등하게 고려되는가? 여성들의 대표 참가와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인센티브나 프로그램이 있는가?(예: "성 영향 평가"가 실행되었는가)? a) 남성과 여성의 수입원에 대한 접근과 관리가 다른지 그리고 b) 어떤 수입원을 여성이 관리하는지를 조사한 연구가 있는가? 만일 있다면 이 연구 및/또는 논문의 사본을 부록으로 제출</li> <li>- 핵심지역과 완충지대를 보호하는 주요 제도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li> <li>- 지역의 대학, 정부 기관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어떤 연구와 모니터링 활동이 수행되었거나 국내 및 국제적 프로그램에 연계되었는가?</li> <li>- 생물권보전지역의 전반적인 거버넌스(새로운 협력·파트너십 네트워크 조직)를 위한 집단 역량이 어떻게 강화되었는가?</li> <li>- 세 용도구역 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li> <li>- 청년들의 참여. 청년들이 지역사회 조직과 의사결정 과정에 어떻게 참여했는가? 생물권보전지역에서 그들의 관심과 요구 사항이 어떻게 고려되었는가? 청년들의 참여를 권장하기 위해 어떤 인센티브 또는 프로그램이 있는가?</li> </ul>
<b>제2부.</b> <b>정기</b> <b>보고서</b>	3. 생태계 서비스	<p>3.1. 가능하다면 생물권보전지역의 각 생태계가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와 이 서비스의 수혜자들에 대해 업데이트  [새천년생태계평가와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경제학 (TEEB)를 참고한다.]  <a href="http://millenniumassessment.org/en/Framework.html">http://millenniumassessment.org/en/Framework.html</a>  <a href="http://www.teebweb.org/publications/teeb-study-reports/foundations/">http://www.teebweb.org/publications/teeb-study-reports/foundations/</a></p> <p>3.2 생물권보전지역의 세 기능(보전, 발전, 지원)을 평가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생태계 서비스의 지표에 변화가 있다면 명시한다. 변화가 있는 경우 어떠한 것들인지 구체적으로 업데이트</p> <p>3.3 생물권보전지역 내 생태계 서비스 제공과 연관된 생물다양성에 대한 설명을 업데이트</p> <p>3.4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서/마지막 보고서 이후 생물권보전지역을 위해 행해진 최근/업데이트된 생태계 서비스 평가가 있는지 명시한다. 만약 있다면 관리 계획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밝힌다.</p>
	4. 보전 기능	<p>4.1 자연적 과정이나 사건, 주요한 인간의 영향 및/혹은 관련 관리 관행을 비롯하여 생물권보전지역에서 파악된 주요한 서식지 유형, 생태계, 전통적 혹은 경제적으로 중요종 및 변종에 일어난 중요한 변화(마지막 보고서 이후, 해당하는 경우)</p> <p>4.2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지난 십 년간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주요한 보전 프로그램들을 서술한다. 이 프로그램들의 주요 목표와 활동 범위 [예: 생물학적 인벤토리, 위기종, 경관 분석, 보전 관리(stewardship) 활동] 를 명기한다. 아래 다른 문항들에서 상호 참조가 되는 경우 언급</p> <p>4.3 어떻게 보전 활동이 지속가능발전 이슈 [예: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유지의 보전 관리(stewardship)] 에 연계 혹은 통합되는가?</p>

		<p>4.4 활동 및 적용 전략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활용된 방법과 지표를 서술)</p> <p>4.5 전체 생물권보전지역에서 보전 노력의 성공에 영향(긍정적 혹은 부정적)을 미친 주요 요인들은 무엇인가? 지난 10년간의 경험과 교훈에 비추어 볼 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보전에 가장 효과적인 새로운 전략이나 접근법은 무엇인가?</p> <p>4.6 생물권보전지역의 관점에서 기타 언급 사항/의견</p>
<p><b>제2부.</b> <b>정기</b> <b>보고서</b></p>	<p>5. 발전 기능</p>	<p>5.1 생물권보전지역의 경제적 기반이 되는 각 주요 부문에 나타난 지난 10년간의 지배적인 추세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한다(예: 농업 및 임업 활동, 재생 가능 자원, 재생 불가능 자원, 제조 및 건설, 관광 및 기타 서비스 산업).</p> <p>5.2 생물권보전지역의 관광 산업에 대해 서술한다. 신청서 혹은 마지막 정기 검토 보고서 제출 이후 관광이 성장 혹은 쇠퇴했는가? 어떤 새로운 사업 혹은 계획이 실행되었는가? 어떤 형태의 관광 활동인가? 이러한 관광 활동이 생물권보전지역의 생태계,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해당 지역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관광객 수에 미친 영향에 대해 조사한 연구가 있는가? 관련 연구 및/또는 논문의 서지학 정보를 첨부</p> <p>5.3 해당하는 경우, 농업, 어업, 임업과 같은 핵심 부문과 이용에 대해 서술한다. 신청서 혹은 마지막 정기 검토 보고서 제출 이후 이 분야들이 성장 혹은 감소하였는가? 어떤 종류의 새로운 사업이나 계획이 실행되었는가? 생물권보전지역의 경제와 생태계 그리고 생물다양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이 이 분야 활동의 빈도에 미친 영향에 대해 조사한 연구가 있는가? 만약 있다면, 이러한 연구 및/또는 논문의 서지학 정보를 첨부</p> <p>5.4 경제 활동이 어떻게 지역사회에 혜택을 주는가?</p> <p>5.5 활동 및 적용 전략의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방법과 지표를 서술)</p> <p>5.6 지역사회 경제발전 계획. 생물권보전지역에서 경제 개혁, 변화, 적응을 위한 포괄적인 전략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들은 무엇이며 실행 범위는 어디까지인가?</p> <p>5.7 지역 비즈니스 혹은 기타 경제 발전을 위한 계획(intiatives). 지속가능성 이슈들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한 “녹색” 대안들이 추진되고 있는가? 이 활동들 간에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만약 있다면)</p> <p>5.8 문화적 가치(종교적,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민족적) 변화(만약 있다면) 및 기타 관련한 주요 변화에 대해 가능하면 유형 유산 및 무형 유산으로 구분하여 서술 (참조: 1972년 UNESCO 세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과 2003년 UNESCO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a href="http://portal.unesco.org/en/ev.php-URL_ID=13055&amp;URL_DO=DO_TOPIC&amp;URL_SECTION=201.html">http://portal.unesco.org/en/ev.php-URL_ID=13055&amp;URL_DO=DO_TOPIC&amp;URL_SECTION=201.html</a> <a href="http://portal.unesco.org/en/ev.php-URL_ID=17716&amp;URL_DO=DO_TOPIC&amp;URL_SECTION=201.html">http://portal.unesco.org/en/ev.php-URL_ID=17716&amp;URL_DO=DO_TOPIC&amp;URL_SECTION=201.html</a>)</p>

<b>제2부. 정기 보고서</b>		<p>5.9 지역사회 지원을 위한 시설과 서비스. 생물권보전지역에서 혹은 생물권보전지역을 위해 어떤 프로그램들이 취업 준비, 기술 훈련, 보건 및 복지 서비스, 사회 정의의 문제와 같은 이슈들을 다루고 있는가? 프로그램들 간 관계와 지역사회 경제발전과의 관계는 어떠한가?</p> <p>5.10 지속가능발전 촉진을 목표로 하는 활동들의 효과성 평가에 어떤 지표들이 사용되고 있는가? 이 지표들이 무엇을 보여주었는가?</p> <p>5.11 전체 생물권보전지역의 발전(development) 노력의 성공에 영향(긍정적 혹은 부정적)을 미친 주요 요인들은 무엇인가? 지난 10년간의 경험과 교훈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새로운 전략이나 접근법이 가장 효과적이었는가?</p>
	6. 지원 기능	<p>6.1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연구나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는 주요 기관들과 기관들의 프로그램을 서술한다. 생물권보전지역에서 그들의 일과 관련하여 지난 10년간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다면 기술</p> <p>6.2 지난 십 년간 수행한 연구 및 모니터링의 주요 주제들, 그리고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와 관련한 문제들을 다루고 관리 계획을 실행한 지역들에 대해 요약한다(부록 1의 변수들을 참조한다.). (주제별 참고 자료의 출처를 제시한다. 전체 출처 정보를 주 저자의 알파벳 순서로 6번 문항의 끝이나 별도 부록으로 제공한다.)</p> <p>6.3 전통 지식 및 지역 지식, 관리 관행 관련 지식이 어떻게 수집, 종합, 확산되었는지 기술한다. 이러한 지식이 새로운 관리 관행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에 어떻게 통합되어 있는지 설명</p> <p>6.4 환경/지속가능성 교육. 어떤 교육기관들("형식"-학교, 대학, 종합대학교, "비형식"-대중을 위한 서비스)이 생물권보전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가? 생물권보전지역의 기능에 기여하는 특수학교 혹은 성인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이들 교육기관들의 프로그램에 대해 서술한다. 십여 년 전에 생물권보전지역에서 파악되었던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에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다면 기술한다(예: 폐교, 재설계된 또는 새로운 사업). 해당되는 경우, UNESCO 협동학교 네트워크, UNESCO석좌(Chairs) 및 센터에 대해 언급</p> <p>6.5 활동 또는 적용 전략의 효과성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방법과 지표를 제시)          - 생물권보전지역의 주요한 내부 및 외부 커뮤니케이션 메커니즘/시스템에 대해 서술          - 생물권보전지역 웹사이트가 있는가? 있다면 주소를 기재          - 이메일 소식지가 있는가? 얼마나 자주 발행되는가?(해당하는 경우, 인터넷 주소를 링크)          - 생물권보전지역이 소셜 네트워크(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연계되어 있는가? 해당 연락처를 기재          - 기타 다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있는가? 있다면 설명</p>

<p><b>제2부.</b> <b>정기</b> <b>보고서</b></p>	<p>7. 거버넌스,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정</p>	<p>7.1 생물권보전지역의 조정(coordination)을 위한 기술 및 물류(logistical) 자원은 무엇인가?</p> <p>7.2 생물권보전지역이 있는 지역에 형성된 전체 거버넌스 체제는 어떤 것인가? 이 체제의 주요 요소들과 생물권보전지역에 기여하는 바를 명시</p> <p>7.3 원주민 및 지역주민의 권리 그리고 문화적 구상들 [예: 생물다양성협약(CBD)의 Akwé: Kon 가이드라인; “자유롭고 우선적이고 공유된 합의 프로그램/정책”, 접근권 및 혜택 공유를 위한 제도적 조정 등] 에 활용된 사회적 영향평가 또는 이와 유사한 도구 및 가이드라인에 대해 기술</p> <p>7.4 생물권보전지역에 관련된 주요한 갈등/분쟁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며 어떠한 해결책들이 실행되었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지역 자연자원의 접근과 이용을 둘러싸고 발생한 중요한 갈등/분쟁과 시기에 대해 서술한다. 만약 생물권보전지역이 이러한 갈등/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데 기여했다면 무엇이 해결되거나 예방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각 용도구역에서 어떻게 성취된 것인지 설명</li> <li>- 서로 다른 행정기관들 간에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와 관련하여 갈등/분쟁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 서술</li> <li>- 갈등/분쟁을 해결하는 데 사용된 방안과 그 효과를 설명한다. 그 수단의 구성 요소, 기능, 해결에 대해 사례별로 서술한다. 현지 중재자가 있는가? 만약 있다면 그 중재자들은 생물권보전지역이나 다른 기관의 승인을 받은 이들인가?</li> </ul> <p>7.5 지역사회의 대변 및 자문, 그리고 이들의 생물권보전지역 활동 참여에 대해 업데이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물권보전지역의 계획 및 관리에 지역주민들(여성, 원주민 포함)이 어떻게 대변되는지 기술(대표자 회의, 협회 자문, 여성단체)</li> <li>- 어떤 형식으로 지역사회를 대변하는가?(예: 기업, 협회, 환경단체, 노동 조합(다양한 그룹을 열거))</li> <li>- 대표적인 지역사회 단체들을 통합하는 절차가 있는지 서술</li> <li>- 자문 수단의 시간적 범위는?(예: 상설 회의, 특정 사업에 대한 자문)</li> <li>- 이러한 자문이 의사결정 과정에 미친 영향은?(결정, 자문 혹은 주민들에게 알리는 정도)</li> <li>- 생물권보전지역의 설립, 관리 계획 수립, 계획의 실행, 생물권보전지역의 일상적 관리 중 어떤 단계에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였는가?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 제시</li> </ul> <p>7.6 관리 및 조정 체계에 대해 업데이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물권보전지역의 각 구역(핵심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에 대해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변경 사항에 대해 기술한다. 신청서 혹은 마지막 검토 보고서 제출 이후에 생긴 변동 사항이 있다면 각 구역에 대한 승인서 원본을 제출</li> <li>- 임명 절차를 비롯하여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자/ 코디네이터와 관련한 정보를 업데이트</li> <li>- 생물권보전지역의 조정(coordination) 체계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만약 있다면, 기능, 구성, 이 체계 내 각 집단의 상대적 비율, 역할, 권한에 대해 자세히 서술한다) 이 조정 체계가 자치적인가, 아니면 지방 혹은 중앙 정부 또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자의 권한 아래 있는가?</li> <li>- 관리/조정이 어떻게 지역 상황에 적응되어 왔는가?</li> <li>- 관리/조정 효과 평가되었는가? 만약 평가되었다면, 평가는 절차에 따라 수행되었는가?</li> </ul>
---	--	--

<b>제2부. 정기 보고서</b>		<p>7.7 관리/협력 계획/정책에 관한 업데이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협력 계획/정책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변화가 있는가? 만약 있다면, 이해관계자의 참여, 계획의 채택과 개정에 관한 세부 정보를 제시</li> <li>- 관리/협력 계획의 내용을 서술한다(조치와 가이드라인 사례를 몇 가지 제시한다.). 이 계획은 구속력 있는 것인가? 합의에 기초한 것인가?</li> <li>- 계획 실행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역할에 대해 서술한다. 신청서 또는 마지막 정기 검토 보고서 제출 이후에 생긴 제도적 변경 사항에 대해 서술한다. 또한 이 기관들의 역할에 대한 증거를 제시</li> <li>- 관리 계획이 생물권보전지역의 목표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명시</li> <li>- 관리/협력 계획/정책과 관련된 성과는 무엇인가?</li> <li>- 관리/협력 계획/정책의 실행을 저해하거나 촉진한 요소 및/또는 변화가 있었는가?(지역주민들의 거부감, 의사결정 수준 간의 갈등)</li> <li>- 해당하는 경우에, 생물권보전지역이 어떻게 지역(regional)적/국가적 전략에 통합되어 있는가? 역으로, 지방/광역 계획이 생물권보전지역의 계획에 어떻게 통합되어 있는가?</li> </ul>
	8. 기준 및 진행 경과	<p>신청서 혹은 마지막 정기 검토 제출 이후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일어난 주요 변화, 성과, 진행 경과를 강조하면서 본 보고서를 마무리</p>
	9. 첨부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업데이트된 좌표를 포함한 위치와 용도지구도</li> <li>(2) 업데이트된 식생도 또는 토지피복도</li> <li>(3) 업데이트된 법률 문서 목록</li> <li>(4) 업데이트된 토지 이용 및 관리/협력 계획의 목록</li> <li>(5) 업데이트된 종 목록</li> <li>(6) 업데이트된 주요 참고 문헌 목록</li> <li>(7) 그 외 첨부 문서</li> </ul>
	10. 주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지의 연락처</li> <li>(2) 핵심구역의 행정기관</li> <li>(3) 완충구역의 행정기관</li> <li>(4) 협력구역의 행정기관</li> </ul>



# 세계지질공원

## 세계지질공원의 정의와 지정 목적

세계지질공원의 정의와 특성은 유네스코에서 만든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을 위한 운영 지침 Operational Guidelines for UNESCO Global Geoparks’에 잘 나와 있다. 운영 지침에 따른 지질공원의 정의를 번역해 보면 “단일의 통일된 지리적인 지역으로 국제적인 지질학적 가치를 가진 장소와 경관이 보존, 교육, 지속가능발전의 총체적인 개념으로 관리되는 곳”이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UNESCO Global Geoparks are single, unified geographical areas where sites and landscapes of international geological significance are managed with a holistic concept of protection, educ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정의를 조금 더 깊게 다루어 보면 다음과 같다. ‘단일의 통일된’이란 지질공원의 영역 혹은 경계는 나눌 수 없고 하나여야 한다는 것으로, 개별 지질공원의 경계는 둘 이상의 분리된 영역이 아닌 하나의 영역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예로 여러 섬으로 이루어진 태국의 사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섬 사이를 연결하는 가상의 선을 그려 모든 섬 지역을 하나로 묶는 단 하나의 경계로 이루어져 있다. 지리적인 지역이란 의미는 지구 내에 위치하며 지리적인 좌표를 가진 실재하는 지역으로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적인 지질학적 가치는 과학 전문가들에 의해 평가된다. 여기서 과학 전문가란 국제지질학 연합(IUGS)의 지질학 전문가 혹은 세계지질공원 현장평가자를 의미한다. 지질학적 가치는 제출된 신청서 중 ‘지질유산’ 부분을 IUGS가 평가하여 작성한 보고서에 기재된다. 이 보고서에는 지질학적 가치가 여러 가지 증빙 등을 통해 충분히 입증되는지를 평가하여 기재하게 되어 있다. 이때 평가자는 신청지의 지질학적 장소(geological sites)에 대한 지질학적 기술들이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peer-reviewed) 출판된 연구(published research)에 근거하는지 또한 이러한 가치 있는 지질학적 장소들이 세계 다른 지역과 국제적인 비교 평가(globally comparative assessment)가 되어 있는지를 검토한다.

즉, 지질유산의 국제적인 가치란 학술적인 가치를 의미하며, 이에 대한 근거는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은 과학인용색인(SCI)에 등록된 학술잡지 등에 게재되어 있는지를 참고하게 된다. 하지만 SCI 등재 잡지에 게재되었다고 해서 그 지질유산이 반드시 국제적인 학술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없으며, 국내 학술잡지에만 게재되었다고 해서 국가적 가치만 가진다고도 할 수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질학적인 국제적 가치란 과학적·학술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관건이 되겠다.



그림 1. 사툰 지질공원 지질공원 경계(점선). 여러 섬이 하나의 영역 안에 포함되어 있다. 지질공원의 경계는 지질유산의 활용에 중점을 두어 정한다. (지도출처: 사툰 유네스코 지질공원, <http://www.satun-geopark.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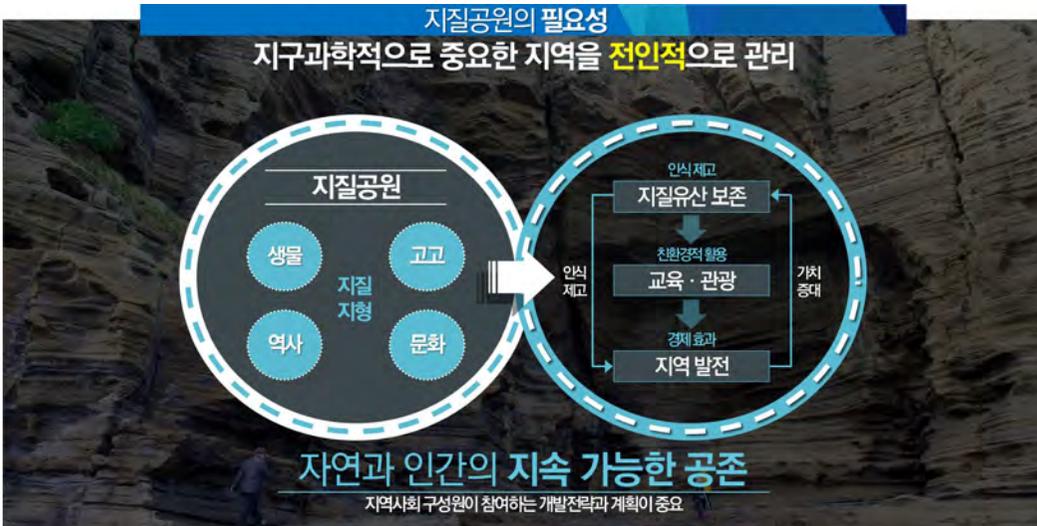


그림 2. 지질공원의 개념도. 지질공원은 국제적으로 가치있는 지질유산을 기반으로 그 안에 자연 및 문화유산이 함께 어우러져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보존을 꾀하는 상향식 제도다. (출처: 국가지질공원사무국)

지질유산을 “지질공원은 지질유산을 사용하되, 그 지역의 자연 및 문화유산의 다른 모든 면과 결합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역동적인 지구라는 측면 안에서 사회가 당면한 주요 현안들의 인식과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단순히 과학적인 중요성을 가진 지질유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계지질공원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 아니다. 과학적인 중요성을 가진 지역이 지질유산 외의 자연유산, 문화유산과 연결되어 활용되어야 한다. 즉, 지질학적인 장소가 사람 혹은 다른 생물과 연관성을 맺고 있을 때 지질공원으로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지질공원은 국제적인 지질학적 가치를 가진 지질유산을 보호하되 국가와 같은 상위 기관에 의해 지정되어 보호되는 하향식 접근 방식이 아닌, 지역의 이해 당사자들, 주로 주민에 의한 자발적 보호 즉, 상향식 보호 제도다. 지역의 가치 있는 지질유산이 교육·관광 등에 활용되어 많은 사람이 방문하고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됨으로써 주민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면서 지역에 지역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져 주민 스스로 보존의식을 갖고 그 지역을 보호하도록 유도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다.

#### • 한국의 지질공원 제도

한국의 지질공원 제도는 제주도가 2010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세계지질공원에 등재된 이후 관련 전문가의 제안으로 환경부가 마련하였다. 국가지질공원 제도의 공식적인 도입은 2011년 7월 ‘자연공원법’에 지질공원이 자연공원 중 하나로 정의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자연공원법에 정의된 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환경부 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자연공원법에는 지질공원의 정의 외에도 지질공원의 인증, 지원, 취소 등을 다루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침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 한국의 국가지질공원 제도는 세계지질공원의 개념과 정책을 기본으로 만들어졌지만 국내 현실에 맞게 변경하여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인증 심의 의결 방법 등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과는 차이가 있다.

## 세계지질공원의 역사

세계지질공원의 역사는 비교적 짧다. 유네스코의 3대 지정지역인 ‘세계유산’과 인간과생물권(MAB)프로그램의 ‘생물권보전지역’이 유네스코의 사업으로 시작된 것이 1970년대로 벌써 거의 50년이 되어 가고 있다. 반면 세계지질공원이 유네스코의 공식 프로그램이 된 것은 2015년 11월로 2019년 10월 현재 만 4년에 이르고 있다.

지질공원은 1990년대 초 지구유산의 보호라는 가치가 대두되면서 1996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30회 국제지질과학총회(IGC)에서 처음 논의되었다. 이후 유럽의 4개 지질공원(프랑스의 오프 프로방스, 그리스의 레스보스, 독일의 불칸아이펠, 스페인의 마에스트라스고)이 모여 2000년 6월 유럽지질공원 네트워크EGN, European Geoparks Network를 결성하였다(Zouros, 2004). 지질공원이 세계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유네스코와 협력하기로 하였다. 2001년 4월 유네스코는 EGN의 지질공원 프로그램에 협력하기로 공식적으로 승인하였다. 이후 2004년 EGN의 17개 지질공원과 중국의 8개의 지질공원이 모여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GGN, Global Geoparks Network를 결성하여 세계지질공원은 계속해서 발전해 갔다. 그러다가 2015년 11월 유네스코의 임시ad hoc 프로그램이었던 세계지질공원이 유네스코의 공식 프로그램으로 승인되었으며, 이로써 세계지질공원은 세계유산과 생물권보전지역과 같은 유네스코 지정지역이 되었다. 2015년 공식 프로그램이 되기 전에 이미 세계지질공원이 되었던 공원은 별도의 평가나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승인되었다. 2019년 현재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41개국 147개에 이른다.

## 세계지질공원 지정 조직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국제 지구과학 및 지질공원 프로그램IGGP, International Geoscience and Geoparks Programme에서 지정, 운영한다. IGGP는 생물권보전지역을 지정, 운영하는 MAB와 달리 정부간 사업은 아니며, 전문가 중심의 사업이다. IGGP는 국제적으로 국제적으로 중요한 지구과학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국제 지구과학 프로그램IGCP, International Geoscience Programme에 지질공원 프로그램이 추가되어 지구과학과 지질공원을 아우르는 프로그램으로 확대되었다. 세계지질공원 관련 주요 기구는 다음과 같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이사회**UGGpC, UNESCO Global Geoparks Council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유일한 의결기구로서 투표권을 가진 12명의 위촉직 위원과 투표권이 없는 4명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촉직은 GGN과 유네스코 회원국의 추천으로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임명하며 세계지질공원 분야의 전문가여야 한다. 위촉직은 자신의 국가 혹은 관련 조직이나 업체 등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 당연직 위원은 유네스코, GGN, IUGS, IUCN 대표로 구성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2년에 한 번씩 이사회 위원 중 절반을 교체하게 되어 업무의 공백을 없애고 있다.

이사회는 주요 업무는 지질공원 신규 신청과 재인증, 그리고 이미 인증된 지질공원이 10% 이상 영역 확장 등 지질공원의 인증과 관련한 사항과 그 밖의 현안들을 토의하고 의결한다. 이사회는 매년 한 번 이상 개최하게 되어 있으며 주로 격년으로 교차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 지질공원 네트

워크(APGN) 혹은 EGN과 GGN 총회 때 모인다. 이사회 회의는 유네스코에 미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참관자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다.

**의장단**Bureau은 이사회의 의장, 부의장, 보고자와 유네스코와 GGN 대표 등 총 5명으로 구성된다. 주 임무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사무국과 함께 지질공원 신규 신청 및 재인증 등재 후보지의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유네스코 집행이사회가 최종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신규 신청과 재인증을 평가할 **평가단**Evaluation team은 서면과 현장평가단으로 나뉜다. 서면 평가는 각 공원의 지질학적 가치를 평가하는데 국제지질학연합(IUGS)에 관련 업무를 수행해줄 것을 요청하게 된다. IUGS는 신청지의 지질이 과학적으로 국제적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현장평가단이 현장 실사를 수행하기 전에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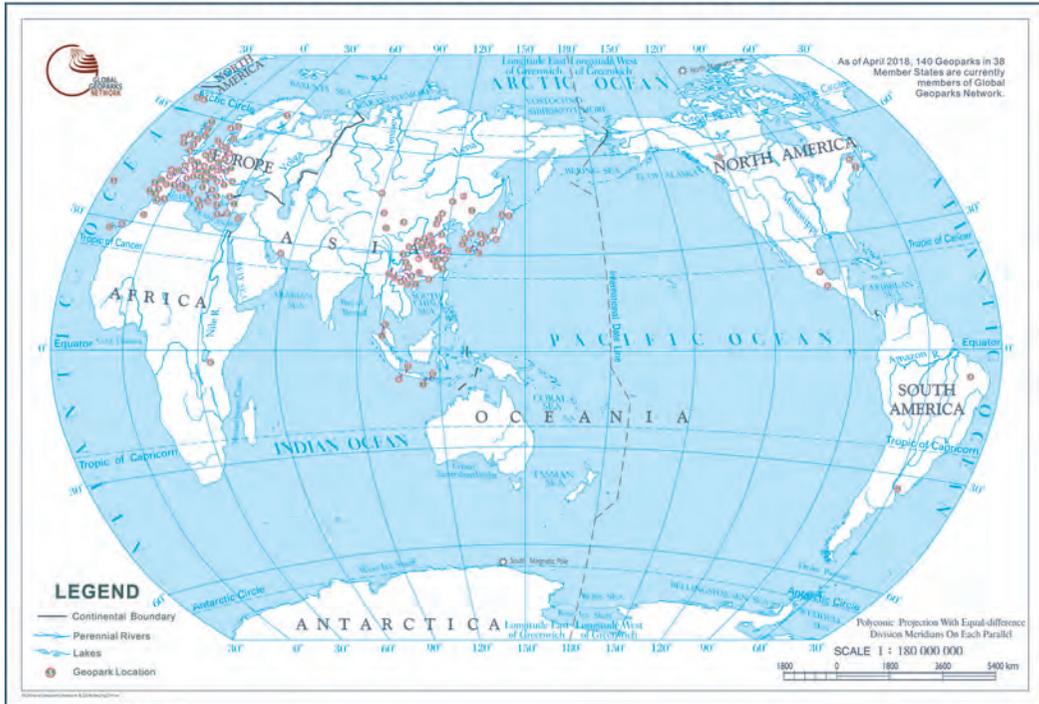
유네스코 사무국은 GGN과 협력하여 현장평가단의 명부를 만들어 심사관을 지질공원에 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현장평가단은 세계지질공원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 즉, 지질유산, 보존, 지속가능개발, 관광개발 및 진흥, 환경 문제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경험이 충분히 입증된 자를 모집·선발하며 재인증 심사에도 참여한다.

## 지정 현황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2019년 11월 현재 41개국 149곳에 이른다. 아시아에 8개국 60곳, 유럽에 24개국 73개소(국경을 공유하는 국가 간의 지질공원 포함), 북미는 캐나다에 3곳, 아프리카에는 모로코와 탄자니아 등 2곳, 중남미에 3개국 4곳에 이른다. 유럽에는 국가 간 지질공원이 총 4개 있다.

다음 지도에서 보듯이 세계지질공원은 유럽과 아시아의 두 개 권역으로 크게 나뉘어 있는 상태로 유네스코는 세계지질공원의 지리적인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무적인 것은 2017년 중미의 멕시코와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의 세계지질공원이 인증되었으며 2020년 등재 기준으로 새로이 신청한 14개 지질공원 중 북미의 캐나다가 2곳이며 2018년 신청이 심사 반려된 중미의 니카라과 1곳을 포함하면 빠르지는 않지만 세계지질공원의 확장이 지구 전역으로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 세계지질공원 분포



审图号: GS (2008) 1895 号

2012年5月

그림 3.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분포도.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지도 출처: GGN 홈페이지, <http://www.globalgeopark.org>).

지질공원은 시작할 때부터 네트워크를 중요시해왔다. 즉 2000년 EGN을 시작으로 2004년 GGN을 결성했고, 2009년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APGN, 2018년에는 GEO-LAC(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지질공원 네트워크)가 결성되는 등 매년 많은 지질공원이 함께 모여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네트워크는 지질공원 간 우수 사례의 공유를 통해 높은 수준의 지질공원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지질공원의 운영 및 관리는 저마다 특색을 가지며 따라서 다른 지질공원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서로 공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유네스코는 이를 장려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 심포지엄 개최는 표1과 같다.

표 1.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 개최 연혁

연도	회의 구분	장소	비고
2000. 10.	제1회 EGN	마에스트라스고(스페인)	
2001. 10.	제2회 EGN	레스보스(그리스)	
2002. 10.	제3회 EGN	캄프탈(오스트리아)	
2003. 10.	제4회 EGN	프실로리티스(그리스)	
2004. 7.	제1회 GGN	베이징(중국)	제1회 GGN 개최
2004. 10.	제5회 EGN	시칠리아(이태리)	
2005. 10.	제6회 EGN	레스보스(그리스)	
2006. 9.	제2회 GGN	벨파스트(영국)	
2007. 9.	제7회 EGN	스코틀랜드(영국)	EGN 공개 컨퍼런스 시작
2008. 6.	제3회 GGN	오스나브뤽(독일)	
2009. 9.	제1회 APGN 제8회 EGN	랑카위(말레이시아) 나투르테조(포르투갈)	1회 APGN 개최
2010. 9.	제4회 GGN	랑카위(말레이시아)	
2010. 10.	제9회 EGN	레스보스(그리스)	
2011. 7.	제2회 APGN	하노이(베트남)	
2011. 9.	제10회 EGN	게아 노르베기카(노르웨이)	
2012. 5.	제5회 GGN	운젠(일본)	
2012. 9.	제11회 EGN	아루카(포르투갈)	
2013. 9.	제3회 APGN 제12회 EGN	제주(한국) 칠렌토 발로 디 디아노(이탈리아)	
2014. 9.	제6회 GGN	스톤해머(캐나다)	
2015. 9.	제4회 APGN	산인카이간(일본)	
2015. 9.	제13회 EGN	로쿠아(핀란드)	
2016. 9.	제7회 GGN	잉글리쉬 리비에라(영국)	
2017. 9.	제5회 APGN 제14회 EGN	지진동(중국) 아조레스(포르투갈)	
2018. 9.	제8회 GGN	아다멜로 브렌타(이탈리아)	

2019. 9.	제6회 APGN 제15회 EGN	린자니-롬복(인도네시아) 세비아(스페인)	
2020. 9.	제9회 GGN	제주(한국)	예정
2021. 9.	제7회 APGN	사툼(태국)	예정

## 지정 기준

세계지질공원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필수 요건은 다음과 같다(UNESCO 2015).

(1) **명확히 정의된 영역:** 지질공원은 명확히 정의된 경계를 가진 지리적인 위치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 지질공원의 경계는 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을 가져야 하며, 과학적으로 증명된 국제적인 가치를 가진 지질유산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은 앞에서 설명한 지질공원의 정의와 같으며, 지질공원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요소다.

(2) **다른 유산과의 연계:** 지질공원의 지질유산은 그 지역의 자연유산, 문화 유산 등과 연계하여 활용되어야 한다. 이는 곧 지질유산이 멈추어 선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지구, 즉, 지구에서 지금도 일어나는 다양한 작용, 지질재해, 기후변화, 생물의 진화, 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권한 강화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것은 지질공원이 단순히 ‘지질학적 공원’이 아니라 ‘지오파크’임을 보여준다. 지질 혹은 지형은 지질공원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기본적인 요소지만, 이것만으로는 진정한 지질공원이 될 수 없다는 뜻과 같다. 지질과 경관만 있고, 생물의 적응과 진화, 또한 이를 터전으로 삼고 살아왔던 사람들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아직도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면 그 지역은 지질공원이 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3) **관리 조직:** 지질공원은 관리조직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관리조직은 국내법에 따른 법적 실체를 가진 관리체를 가져야 하는데 이는 반드시 국가 기관 즉, 지자체일 필요는 없으며, 법적 실체를 가진 민간 조직도 가능하다. 관리 조직에서 중요한 요소는 지질공원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이다. 인력에는 행정직원과 지질공원 전문가를 포함하며,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질공원만을 위한 운영 예산이 있어야 한다. 인력과 예산은 어느 정도까지가 최소한이라는 규정은 따로 없지만 지질공원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기에 적절한 수준을 현장평가자가 현장 실사를 통해 실제 예산 내역과 현장의 운영 여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 **유네스코 중복지정의 당위성:** 유네스코의 다른 지정지역(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과 중복지정된 지역인 경우 지질공원을 추가함으로써 얻어지는 가치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은 신청서 목차의 E4에 해당하는 요소로서 두 가지 이상의 중복지정이 있다면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5) **지역(주민) 연계:** 앞서 지질공원의 정의에서 설명했듯이 지역과의 연계, 즉 지역의 공동체와 원주민이 지질공원에 활발히 참여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원주민이란 개념이 없으므로 주로 지역의 소규모 마을, 리·면·동 단위의 공동체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역주민과의 지질공원 참여는 주로 파트너십으로 연결된다. 주민이 운영하는 공방, 각종 업체(식당, 숙박 등), 지역주민이 만든 공예품, 지역주민이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 지역주민이 재배하거나 기른 각종 특산물, 지역의 요리 등 지역주민이 지질공원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과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이에 대한 예는 뒤에 나오는 장에서 따로 논의하고자 한다.

(6) **GGN 활동:** 지질공원은 다양한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모두 발전하는 지질공원을 만드는 데 있으므로 세계지질공원이 되기 이전부터 지질공원 네트워크(GGN, APGN, EGN)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발표를 하거나 홍보부스를 운영하거나, 다른 지질공원과 협력 체결 및 방문 등 지질공원과의 협력 활동을 부지런히 해야 한다.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되면 GGN 가입은 의무적이다.

(7) **지질유산의 보호:** 지질유산은 국내법에 따라 세계지질공원 신청 이전부터 보호되고 있어야 한다. 지질공원은 지질유산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와 관련해 지질공원의 관리조직이 지질물질(화석, 광물, 암석, 보석 등)의 판매에 직접적으로 관여해서는 안 되며 해당 지질공원에서 채굴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러한 판매가 지질공원 내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러한 채굴과 수집이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면 이러한 활동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교육적·과학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지질 물질이 거래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를 충분히 정당화할 수 있는 설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이사회에 이를 알려 승인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다.

## 신청 절차

세계지질공원 신청 절차는 2015년 유네스코의 프로그램이 된 이후로 조금 변경되었다. 이전과 비교해볼 때 가장 큰 차이는 1년 정도였던 신청 소요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50쪽 이하의 신청서, 자체평가표, 지도, 신청서 중 '지질유산의 기재' 부분의 복사본, 1쪽 요약본, 그리고 유네스코 국가위원회를 비롯해 관련 단체, 기관, 정부 등의 추천서다. 신청서는 반드시 50쪽 이하여야 하며, 인쇄본 없이 전자파일로만 제출할 수 있다. 이때 전자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클라우드 링크 등이 필요하다.

신청과 관련한 모든 절차는 반드시 해당 국가의 유네스코 국가위원회를 통해서 진행해야 하며 국가위원회가 없다면 이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을 통해서 해야 한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신청의향서를 신청서 제출하는 해의 7월 1일까지 유네스코에 제출하여야 한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공원은 반드시 1년 이상 지질공원으로서 실질적으로 운영 중이어야 하며, 신청서는 바로 이러한 실질적인 운영에 대해 증명하고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아래의 목차에 따라 작성하게 될 모든 항목은 계획이 아닌 지금까지 지질공원을 운영해온 실적과 경험을 바탕으로 서술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청서는 11월 30일까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사무국에 전자파일로 제출한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한 국가에서 1년에 2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아직 반려 중인 신청 건이 남아 있다면 해당 국가에서는 1개의 지질공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에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사무국에서 서류 구비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 시에는 이를 고지하여 수정할 수 있게 한다. 구비 요건이 모두 갖춰졌다고 판단되면 서면 심사를 위해 IUGS에 지질유산 부분만 따로 보내 지질유산의 과학적인 가치에 대한 검토를 의뢰한다. 서류검토는 보통 4월까지 완료된다. 의장단은 GGN과 상의하여 각 지질공원에 2명의 현장평가자를 배정한다. IUGS에 서면 검토를 하는 동안 사무국은 지도가 포함된 1쪽의 지질공원 요약본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다른 유네스코 회원국이 모두 볼 수 있도록 한다. 3개월간 게시되는 동안 신청지에 대한 이의가 있어 유네스코에 이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해당 문제를 당사국 간에 해결해야 하며, 그 문제가 당사국 간에 명백히 해결되기 전까지 모든 심사는 중단된다.

회원국의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서면심사가 완료된 후에는 현장평가자 2명이 해당 공원을 방문하게 되며 이는 주로 5월에서 8월 사이에 이뤄진다. 유네스코 사무국에서는 해당 지질공원에 배정된 평가자의 정보를 알려주고, 지질공원은 현장평가자와 연락하여 일정을 잡는다. 현장 평가는 보통 이동 시간을 제외한 3일 일정을 기본으로 한다. 현장평가가 끝나면 평가자들은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 9월에 열리는 국제 심포지엄(GGN, APGN, EGN)에서 개최

될 이사회 회의에 안건으로 올릴 수 있게 한다. 모든 신청서와 관련 보고서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현장심사까지 마치게 되면 보통 9월에 열리는 지질공원 네트워크에서 개최되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하게 된다. 이때 신규 신청지에 대해서는 승인(accept), 반려(defer), 승인불가(reject)로 결정된다. 승인이 되면 이듬해 1-2월에 열리는 국제지구과학프로그램 IGCP 이사회에서 각 신청서를 공개발표 하게 된다. 이때 회원국의 반론문을 수신하지 않는다면 ‘등재권고’를 받게 된다. 마지막 관문은 IGCP 이사회에 이어 4월에 개최되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되게 된다. 만약 반려되면 최대 2년까지 이에 대한 보완을 할 수 있다. 반려로 결정된 때에는 현장평가를 하지 않는다. 승인불가된 신청지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다시 신청하려면 신규 신청의 모든 단계를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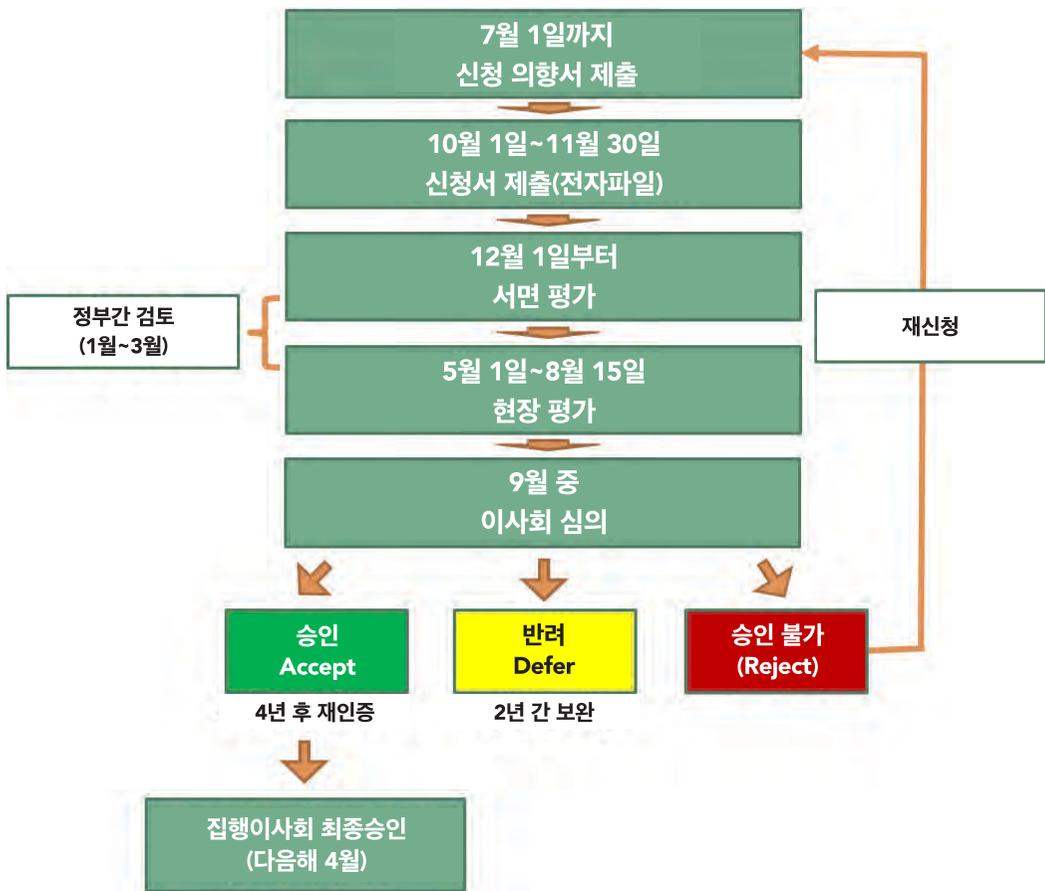


그림 4. 지질공원 신청 절차

## 재인증과 확장 및 해제

재인증은 세계지질공원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이다. 이미 인증받은 지질공원에 대해 지질공원이 높은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있는가를 4년마다 평가하는 것으로,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재인증 1년 전 1쪽의 요약문을 유네스코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재인증을 받게 되는 이듬해에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관리 주체는 경과보고서를 만들어 현장평가 3개월 전, 즉 당해 연도 2월경에 유네스코 국가위원회를 통해 사무국에 제출한다. 의장단은 2명의 현장평가자를 현장실사에 배정하게 되고, 이후 절차는 신규 신청과 같다.

다만 재인증에 대한 결정은 녹색카드green card, 황색카드yellow card, 적색카드red card로 나뉘어 있다. 녹색카드를 받으면 재인증에 성공하여 또 다시 4년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이름으로 운영할 수 있다. 만약 황색카드를 받으면 2년간 적절한 조치를 취해 기준을 충족하도록 할 수 있으며 보완 기간에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으며, 2년 후에는 위에 명시한 바와 같이 현장평가 3개월 전 경과보고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 재인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 황색카드를 받은 후 2년이 지나서도 기준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이사회는 해당 지역이 가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서의 모든 지위와 자격을 박탈하게 된다. 만약 재인증 과정을 수행할 수 없거나 기준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는 어떤 이유든 간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위가 취소될 수 있다.

이미 인증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중 그 경계를 변경하여 면적을 확장하려면 이에 대해서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 먼저 그 영역의 확장이 10% 미만이라면 해당 사항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이사회와 사무국에 알리면 된다. 이때 변경 사유, 변경 사항이 포함된 지도, 새로이 확장된 영역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기준에 여전히 부합됨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사무국에 11월 30일까지 제출한다. 이사회는 10% 미만의 영역 확장에 대해서도 신규 신청과 재인증을 의결하는 이사회 개최 시 승인과 반대로 변경안을 의결한다.

만약 면적의 확장이 10% 이상이라면, 신규 신청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신청서를 작성해 신규 신청과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만약 해당 공원이 국경선을 넘어서는 경우에도 신규 신청과 마찬가지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모든 영역의 확장은 유네스코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회원국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정부간 검토를 받아야 한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서 탈퇴하고자 하면, 해당 공원은 유네스코 사무국에 이를 알리고 사무국은 이사회에 그 의향을 전달한다. 이사회가 그 의향을 전달받았음을 사무국이 해당 지질공원에 알리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서 관련 지위와 모든 혜택이 중단되고, 모든 의무에서도 자유로워진다.

##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은 유네스코에서 제시한 신청서 목차대로 기술해야 한다. 신청서 목차는 2018년 10월에 변경되어 2019년에 새로이 신청코자 하는 곳은 변경된 양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신청서의 주요 목차는 130쪽 참조).

신청서 작성 시에 몇 가지 주의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출 서류 중 세 번째에 해당하는 지지 서한은 지질공원과 관련된 지자체 및 기관의 대표가 지질공원에 관심이 있으며 이를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되도록 다양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다. 지질공원은 상향식 공원으로 지질공원을 추진하는 지자체(만약 공무원이 주도한다면)의 장은 당연하거니와 그밖에도 해당 지역의 대학, 지질 관련 연구원 등 주요 연구 기관 및 유네스코 국가위원회의 지지 서한 등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

부록을 제외한 본 신청서(application dossier)는 반드시 50쪽 이내로 써야하며, 서면 심사자 및 현장평가자들이 언제든지 다운받아 볼 수 있도록 웹링크(webblink, 예를 들어 Dropbox 등)에 파일을 올려놓는다. 인쇄본은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부록 4>에 해당하는 후보지 지도는 1:50,000 축척을 선호한다. 만약 해당 국가에서 이 축척으로 지도가 생성되지 않으면 그와 비슷한 축척을 이용해도 된다. 지도에는 기본적으로 지질명소 및 지질공원 관련한 시설(박물관, 주차장 등), 마을, 문화·자연 유산지, 관광 관련 시설(지질공원센터나 안내소) 등을 모두 포함한다. 해당 지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항목 중 하나는 지질공원의 경계에 대한 것이다. 지질공원 경계는 국가 간 다툼을 배제하고 지역 간 지질공원 관리·운영을 명확하게 하려는 취지로 2017년부터 유네스코에서 만든 분쟁지역 명칭이 제외된 세계의 권역별 지도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다. 지도는 유네스코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http://www.unesco.org/new/index.php?id=132091>).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1년 이상 운영 중이어야 하며, 신청서는 그동안 지질공원을 운영해 왔던 실적을 위주로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계획을 서술할 수 있겠지만, 자체평가표의 점수가 너무 낮을 정도로 실적이 없다면 평가자들에게 안 좋은 인상을 주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실적은 주로 교육, 관광,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부분이 주를 이루게 된다.

교육은 지질 혹은 지질공원 관련 교육을 계층별로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그 효과는 어떠한지를 기술하되 실적이 있다면 이를 표로 제시하는 것이 좋다. 관광은 지질공원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지질공원과 관련한 다양한 관광 활동과 체험 프로그램을 위주로 기술할 수 있다. 어떠한 관광 활동이 더 유리할지는 공원의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가장 효과적이었던 부분을 서술하고, 향후 계획 등을 기술하면 좋을 것이다.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 부분에는 지역의 다양한 파트너들,

즉 학계, 공무원, 주민과 마을, 기업, 기관, 상점 등이 어떻게 지질공원과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 그들의 주요 활동, 이를 통해 어떻게 지질공원에 이바지하는지에 대한 내용, 지질공원이 각 파트너에게 미치는 영향, 만약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이 되었다면 해당 내용 등을 기술하면 된다.

표 2. 자체평가표 점수 체계

	항 목	가중치(%)	총점
I	지질과 경관 Geology & Landscape	35	3,000
1.1	영역 Territory	5	1,000
1.2	지질보전 Geoconservation	20	1,000
1.3	자연과 문화 유산 Natural & Cultural Heritage	10	1,000
II	관리 구조 Management Structure	25	1,000
III	해설과 환경교육 Interpretation & Environmental Education	15	1,000
IV	지질관광 Geotourism	15	1,000
V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 Sustainable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10	1,000
	<b>합 계</b>	<b>100</b>	<b>7,000</b>

어떤 부분을 부각하여 기술해야 하는가는 평가자의 경험과 의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체평가표의 해당 부분과 관련한 사항을 위주로 기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신청지의 특징을 드러내도록 기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어떠한 기술이라도 이는 현장평가에서 점검되므로 너무 과장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신청서는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지질공원을 목차에 따라 자세하게 기술하는 데 중점을 둔다면, 자체평가표는 신청서에 기술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그것을 문서, 사진 등으로 증명하고, 구체적인 부분까지도 일일이 점수를 부여하여 해당 후보지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음을 정량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체평가표 점수는 총 5개의 주요 항목으로 되어 있으며, 첫 번째 항목(지질과 경관)은 3개로 나뉘어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각 항목은 1,000점 만점에 총점은 7,000점이며 항목별로 가중치가 적용되며 총점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되어 제시된다. 모든 항목에서 50%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졌다.

자체평가표는 말 그대로 해당 후보지에서 각 항목에 대해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이사회와 현장평가자들도 아직 이견이 있지만 대부분의 항목은 부분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항목 이를테면 ‘1.2 지질보전’ 항목에서 ‘적어도 국제적 지질학적 가치가 있는 지질명소가 한 개 이상이다.’에서 한 개당 100점을 부여하고, 2개 이상이면 160점이 된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많은 경우 완벽하지 않더라도 해당 항목에 부분 점수를 일단 부여해두는 것이 좋다. 하지만 총점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점수를 과장하여 부여해서 현장평가 시 이에 대한 지적이 많아지면 신청서와 자체평가표에 대한 신뢰에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고 그 내용은 결국 평가자들의 보고서에 담기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자체평가표의 모든 항목은 홈페이지(<http://www.unesco.org/new/en/natural-sciences/environment/earth-sciences/unesco-global-geoparks/application-process/>)에서 확인할 수 있다.

A	B	C	D	E	F	G
	<b>I. Geology and Landscape</b>			<b>Points Available</b>	<b>Self Assessment</b>	<b>Evaluators' Estimate</b>
	<b>1.2 Geological Conservation</b>					
1	<b>1 Inventory and significance of the geosites that can be found in your area (SELF AWARDED total cannot exceed 300).</b>					
2	1.1	At least one geosite of international geological significance (100 for each) (Give a list and justification)		160		
3	1.2	At least five geosites of national significance (Give a list and justification)		100		
4	1.3	At least 20 geosites of educational interest and used by schools and universities. (Give a list and justification)		100		
5	1.4	Do you have a geosites' database for the Geopark? (Please give details)		50		
6	1.5	Do you have a geosites' map for the Geopark? (Please give details)		50		
7		<b>Maximum Total</b>		<b>300</b>	<b>0</b>	<b>0</b>
8	<b>2 Strategy and legislation to protect against damage of geological sites and features (one answer only)</b>					
9	2.1	The entire territory has legal protection because of its geological values.		300		
10	2.2	Part of the area is protected by law for its geological interest. (Please refer to which part and why)		150		
11	2.3	Prohibition of destroying and removing parts of the geological heritage.		150		
12		<b>Maximum Total</b>		<b>300</b>	<b>0</b>	<b>0</b>
13	<b>3 How are the geosites protected against misuse and damage?</b>					
14	3.1	General announcement of regulations to prevent misuse and damage in the entire Geopark area		100		
15	3.2	Announcement of regulations to prevent misuse and damage at individual sites of the Geopark		50		
16	3.3	Use of observation posts, guarding and patrolling by wardens		60		
17	3.4	Provision for enforcement of regulations (no digging and collecting) on the website, in flyers, etc.		40		
18	3.5	Offering collecting of geological specimens under supervision at selected sites (clarification)		40		
19		<b>Maximum Total</b>		<b>200</b>	<b>0</b>	<b>0</b>
20	<b>4 What measures are taken to protect geosites and infrastructure from damage and natural degradation?</b>					
21	4.1	Regular maintenance and cleaning (Please give details. How often are they checked?)		60		
22	4.2	Conservation measures (Please give details)		70		
23	4.3	Protective measures (preparation, sealing to avoid natural degradation) (Please give details)		70		
24		<b>Maximum Total</b>		<b>200</b>	<b>0</b>	<b>0</b>
25		<b>Geoconservation Subtotal</b>		<b>1000</b>	<b>0</b>	<b>0</b>
26		<b>Maximum Points</b>				
27		<b>Self Assessment</b>				
28		<b>Evaluators' Estimate</b>				
29						
30						
31						
32						
33						
34						

그림 5. 자체평가표 실례. 총 7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으며 신청자가 모든 항목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평가자가 현장평가에서 이를 확인하고 재평가하는 시스템이다(붉은 글씨는 각 항목에 대해 이유를 밝히거나 증명을 해야 하는 부분을 표시한 것이다.).

## 현장평가

11월 30일까지 무사히 신청서 일체를 유네스코 국가위원회를 통해 유네스코에 보냈다면 이제 유네스코에서 신청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이 온다. 먼저 서류를 잘 받았다는 문서가 일차적으로 오게 되고, 혹 빠진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 중에서 보충할 부분이 있다면 또 한 번 연락이 올 것

이다. 만약 제출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유네스코 홈페이지에 지도를 포함한 요약문을 게시하여 다른 국가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지 기다리게 된다. 구비 서류에 문제가 없고, 다른 나라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혹은 이의를 제기하였어도 당사국 간에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였다면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우선 4월 30일까지 서면심사가 진행된다. 서면평가는 탈락을 좌우하지 않는다. 이어서 현장평가 일정이 정해진다.

유네스코 사무국과 GGN은 신규 혹은 재인증 후보지의 현장평가를 위해 현장평가자 명부를 만들고 두 명씩 짝을 지어 현장평가 임무를 부여한다. 현장평가자가 정해졌다면 유네스코에서 해당 후보지에 통보를 하게 되고 현장평가자에게 연락을 해서 일정을 정한다. 현장평가자는 주로 5번 이상 현장평가 경험이 있는 선임자와 그렇지 않은 후임자로 구성된다. 현장평가자가 배정되었다면 담당자는 해당 후보지의 여러 상황을 고려해 두 가지 정도의 선택지를 평가자에게 보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장평가자와 일정을 조정할 때는 유네스코에서 배부한 지침과 체크리스트에 따라 준비한다(참고 2 참조).

세계지질공원 이사회는 평가단이 따를 엄격한 지침을 만들어 배포하며, 평가단은 이를 준수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평가단은 자신의 국가 혹은 본인이 소속되거나 관련된 기관을 위해서 일해서는 안 되며, GGN은 평가단을 구성하여 심사지로 배정할 때 이해관계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현장평가를 진행할 때 원하는 국가지질공원위원회가 참관을 원하면 자비로 참석할 수 있다. 현장평가자는 심사를 위해 후보지에 필요한 정보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어떤 장소를 심사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현장평가를 마치면 평가자들은 유네스코가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이사회는 대개 9월에 개최되는 지질공원 심포지엄(GGN, APGN, EGN)에서 회의를 통해 신규 및 재인증 후보지를 심의·의결하므로 현장평가단은 그 이전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장평가자의 평가 보고서는 유네스코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누구나 볼 수 있다(<http://www.unesco.org/new/en/natural-sciences/environment/earth-sciences/unesco-global-geoparks/>).



그림 6. 현장평가(한탄강, 2019). 일반적으로 브리핑을 통해 지질공원 현황을 설명하고 본격적인 현장평가를 시작한다. 마지막 날에는 현장평가자와 주요 관계자들이 자체평가표를 재검토하는 시간을 갖는다.

현장평가 시 후보지가 기본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현장평가자가 평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이동, 숙박, 식사 등에 대해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출발하기 전에 미리 체크하고, 평가 수행 중에도 이동 시간이 너무 멀거나 과도한 피로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고, 식사의 경우는 채식주의자인지 혐오하는 음식이 있는지 등을 미리 살펴 준비해야 한다. 이외에도 신청서 및 관련된 문서에 증빙으로 제시한 자료가 있으면 준비해 놓고, 첫 날 브리핑 시간부터 미리 준비하고, 이를 현장 답사 시에도 필요하면 볼 수 있도록 담당자가 인쇄본과 전자파일을 모두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다.

현장 답사를 할 때에는 지질공원이 준비한 것(사인, 지질명소, 문화 명소, 인프라, 교육 및 관광 프로그램 등)을 모두 보여주려고 노력하되, 시간을 너무 초과하지 않도록 조절해야 한다. 너무 많은 것을 보여 주기보다는 평가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혹, 현장평가자가 준비된 스케줄 외에 갑작스럽게 원하는 것이 생길 때는 당황하지 말고 상황을 보고 일정을 조정하거나,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에 대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거나 다른 증빙을 통해 이해시키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요구는 <참고 2>의 현장평가 지침에도 나와 있다.

현장평가는 위에 설명한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 또한 유네스코의 지질공원 운영 지침 범위 내에서 수행되겠지만, 현장평가자 개인의 의견과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고, 그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떠한 경우라도 현장평가자가 따로 남겨지거나 홀로 움직이게 하거나 소통에 어려움이 겪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현장평가가 진행되는 내내 평가자 옆에 수행하는 사람을 붙이는 것이 좋다.

후보지의 관리자나 지질공원 전문가 중 한 명 이상이 영어로 소통이 되면 현장평가자의 질문과 요구 등에 대해 바로 대응할 수 있어 좋지만 만약 그런 인원이 없다면 통역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통역사가 지질 혹은 지형 등 자연과학과 지질공원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다면 평가자와

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지질공원에 대한 기본 개념과 중요 어휘, 지질, 지형 관련 용어, 특히 몇 가지 기본적인 암석명과 지질 시대명 등을 통역사가 숙지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영어를 능통하게 하는 사람이 아닌 경험이 있는 전문 통역사를 고용할 것을 추천한다. 그렇게 해야 현장평가와 관련한 사항뿐만 아니라 식사, 이동 등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하여 현장평가 시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지질 혹은 지형과 같은 학문적인 설명은 지질공원 전문가 외에 해당 장소를 연구했거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을 현장평가에 참여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평가자가 해당 지역의 지질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했을 경우 이를 잘 아는 전문가가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다면 평가자에게 더욱 깊은 신뢰를 줄 수 있으며, 혹 준비되지 않은 질문이 있을 경우에도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다.

현장평가 시에는 지질공원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사람을 초대하는 것이 좋다. 주로 첫날 해당 후보지의 현황 보고 시간에 자리하여 소개하는 것이 좋다. 정부 부처, 지질·지형 전문가, 광역·기초 지자체장, 지질공원 부시장,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지질공원위원회 위원, 과학위원회 위원, 지역 주민 대표, 파트너십을 체결한 주민·업체, 해설사 등이 참여함으로써 많은 단체, 기관, 인원이 지질공원에 관심을 가지고 후원하거나 활발히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 물론 이 많은 사람이 계속해서 현장평가에 동행할 필요는 없다.

현장평가를 실제로 수행하기 이전에 사전 점검과 예행 연습(리허설)을 할 것을 추천한다. 스케줄을 확정하기 이전에 시간표가 적정한지를 파악하여, 이동거리, 식사 장소, 회의 장소, 방문할 지질, 문화, 역사 명소 등이 목적에 맞게 잘 조직되었으며 이동 동선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해설판, 방향판, 환영 현수막 등이 현장평가 동선을 따라 모두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 사전 점검을 통해 세부일정과 내용이 잡히면 주요 관리자들은 다시 한 번 일정을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본 현장평가에 참석하는 주요 인원들을 모아 처음부터 끝까지 예행연습을 진행하여 실제 현장평가를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미리 대비하고, 부족한 것은 미리 준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갖도록 해야 한다.

현장평가가 시작되면 평가자가 요구하지 않는 한 일정을 변경하는 것은 되도록 삼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평가자들이 후보지가 생각한 것과 성향이 달라(예를 들어, 지역 협력을 더 강조하거나, 아니면 교육 프로그램을 더 강조하는 등) 일정을 약간 변경함으로써 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경우라면 평가자와 상의해서 일정을 일부 바꿀 수는 있으나 되도록 무리한 일정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세계지질공원 신규 신청이 승인된 후 4년이 경과하면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재인증을 위해서는 재인증을 받는 시기의 1년 전에 1쪽 분량의 요약본을 유네스코에 제출해야 한다. 요약본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구성은 지도와 4년 간의 주요 활동 및 발전 등에 대해 1,800자 내로 서술하면 된다. 경과보고서(progress report)는 현장평가 3개월 전, 1월 31일까지 경과보고

서, 재인증용 자체평가표, 신규 신청 시 자체평가표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재인증 경과보고서는 총 25쪽을 넘을 수 없으며 지정된 서체와 글자 크기로 양식에 맞추어 작성한다. 목차는 A~D 항목은 신규 신청과 차이가 있으나 E와 F 항목은 똑같다. 간략한 목차는 <참고 3>에 나와 있다.

## 지질공원 운영 사례

지질공원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정해진 답은 없다. 따라서 다른 지질공원에서 시도하는 여러 사업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각 지질공원에 알맞은 최적의 사례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를 통한 지질공원 간 정보 공유는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세계지질공원인 제주도, 청송, 무등산권에서 시도되고 있는 것들 중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거나 최근에 새로 시도되고 있는 사례다. 지질공원별로 다양한 시도를 꾀하여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주지하기 바란다.

### • 제주도

지오브랜드 2010년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된 제주도는 2013년 지역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심사를 거쳐 세계지질공원 활용사업인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핵심마을 활성화사업’이 선정되어 3년간 35억의 예산이 지원되었다. 이 사업을 통해 지오브랜드가 개발되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오브랜드의 종류와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이를 통해 지역 마을을 지질공원에 참여시키고 있다. 제주의 지오브랜드는 한국의 다른 지질공원의 지오브랜드사업의 시작이 되어 현재 다른 많은 곳에서 이와 비슷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다.

표 4.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핵심마을 활성화 사업을 통해 개발된 지오브랜드

브랜드	내용
지오투레일 (Geo-Trail)	세계지질공원 지질자원과 마을의 다양한 역사, 민속, 문화, 콘텐츠를 접목한 이야기 구조의 도보여행길
지오액티비티 (Geo-Activity)	지질경관과 지질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활동
지오하우스 (Geo-House)	지질자원의 모양과 속성을 모티브로 한 지질 테마 숙소
지질문화축제 (Geo-Culture Festival)	지질을 원형으로 문화자원을 활용한 축제 콘텐츠
지오푸드 (Geo-Food)	지질명소의 지질적 특성과 문화를 모티브로 개발한 음식

지오팜 (Geo-Farm)	지질마을에서 생산된 특산물과 이를 활용하여 생산된 식품 브랜드
지오키프트 (Geo-Gift)	지질명소의 지질 속성과 형태를 모티브로 개발한 기념품
지오인포/지오샵 (Geo-Info/Geo-Shop)	지질공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판매자 역할을 하는 가게
지오아카데미 (Geo-Academy)	지질마을 주민 역량과 커뮤니티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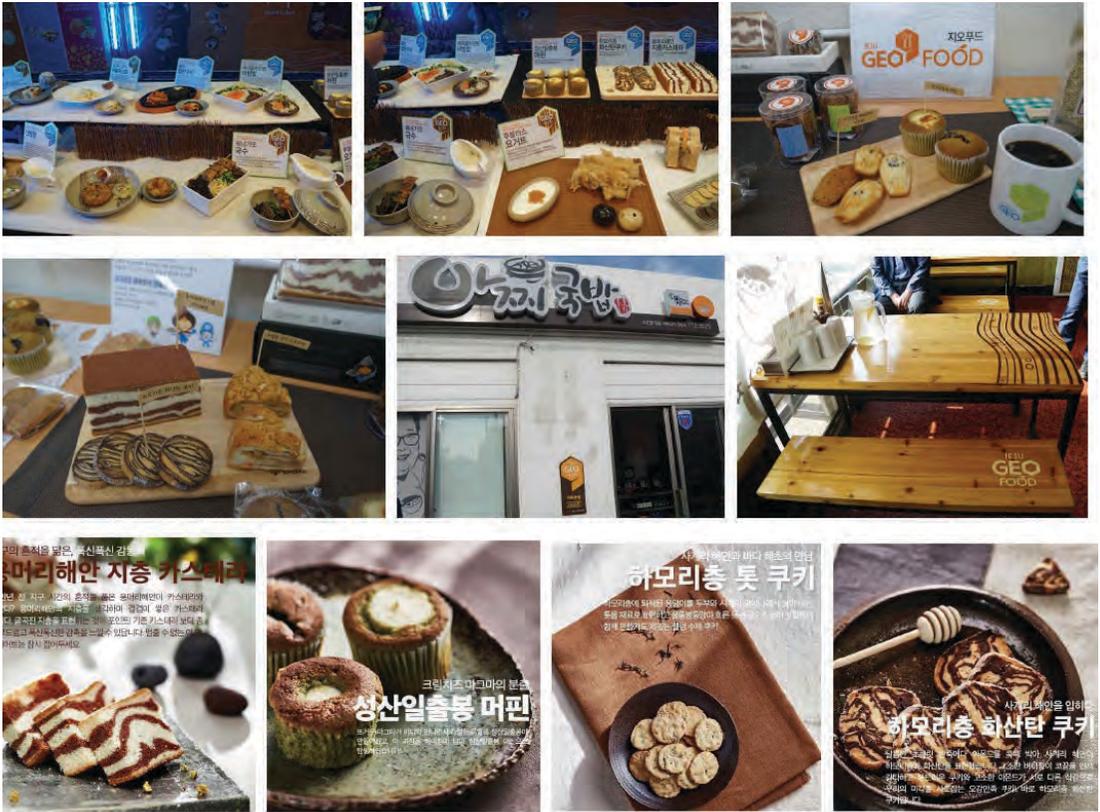


그림 7. 제주도 지오브랜드 활용 사례. 지오프드, 지오인포, 지오향스의 사례로서 하나의 브랜드로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운영하는 성공적인 사례로 꼽힌다. (사진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지오브랜드 외에도 제주도는 다양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 그중의 하나가 제주도의 수월봉 지오투레일 사례로 이는 국제적으로 유명하다. 수월봉은 제주도 서쪽의 한 마을로 '화산학의 교과서'라 불릴 정도로 지질학적으로 가치가 높아 지질학자와 같은 전문가들에게 일부 알려져 있는 지질 답사 코스였다. 하지만 주변의 차귀도를 중심으로 찾아오는 낚시객들 외에는 이곳을 찾는 방문객은 거의 없었다. 2010년 세계지질공원이 된 이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수월봉에서

2011년 제1회 수월봉 지질공원 트레일 행사를 개최하였다. 수월봉 일대의 고산1리 마을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약 15,000명이 수월봉을 방문한 이래 2015년 5회 행사에는 3개 마을(고산 1, 2리, 용수리)이 참여하여 다양한 전통 공연과 부녀회 및 초등학교 학생들의 공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먹거리가 함께하여 23,422명이 행사에 다녀갔다.

제주도에 연간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도 수월봉 탐방객은 찾아보기 힘들었으나 2010년 탐방객 집계기 시작된 이래 2012년 77,000명에서 2015년 약 33만 명이 방문하였다. 탐방객의 증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었다. 작은 어촌 마을의 오징어 판매량이 2~3배 증가하고, 마을에 20여개의 식당, 카페, 숙박시설이 새롭게 들어서는 변화가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이곳에 사는 지역주민의 지질공원과 지질자원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지역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졌으며 점점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지질공원 해설사로 활동하고 있다. 제주도 수월봉의 사례로 제주도는 산방산·용머리 지오투레일, 성산·오조 지오투레일 등 행사를 확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다른 지질공원에서도 트레일을 활성화하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림 8. 제주도 지오투레일 행사. 2011년 수월봉을 시작으로 현재는 다른 지역까지 행사가 확대되었다. 행사를 통해 지역을 알리고 지역주민의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함께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사진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 • 청송

청송은 2014년 국가지질공원 인증 및 2017년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계기로 지역주민과 탐방객에 대한 교육과 해설을 꾸준히 수행하였으며, 특히 2015년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청송 지질자원의 학술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지원을 꾸준히 실천하였다. 그중 한 프로그램으로 2019년 5월 지질공원 보전과 교육적 활용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청송 지질공원 나들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지질학 박사를 초빙하여 실내외 교육으로 화산 폭발로 형성된 주왕산의 지질을 배우고, 화산활동의 기록을 담고 있는 주방계곡을 전문가의 해설과 함께 걷는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질공원과 대학, 연구소 등과의 협업을 통해 지질공원의 학술적인 가치를 높임으로써 지질자원의 보존을 꾀하는 이러한 사례는 타 지질공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림 9. 청송 세계지질공원의 ‘국민과 함께하는 청송 지질공원 나들이’. 학술 연구원과 지질공원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은 지질공원에서 중요한 요소다.

### • 무등산권

무등산권은 2014년 국가지질공원, 2018년 세계지질공원이 되었으며 인증 이후부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지질교육에 힘을 쏟고 있다. 그중 지오스쿨 프로그램은 2016년 시작하여 2019년 7월 까지 총 16회 300여 명의 학생들이 수료했다. 지오스쿨에서는 지질공원의 개념, 지질 시대, 광물과 암석, 지진과 화산, 화석과 공룡 등 지질학의 전반적인 내용을 배우는 프로그램으로 2019년부터는 담양의 호남기후변화체험관을 답사 코스로 추가하여 지질교육 외에 환경교육을 겸하고 있다. 지오스쿨은 무등산권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인기 프로그램이 되어 선착순 접수를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 무등산권은 지오스쿨을 통해 미래 세대에게 지질, 환경, 재해 등을 가르치며, 무등산권 지질공원의 우수성을 알려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소속감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무등산권은 무등산과 인접한 ‘청풍마을’에서 지오빌리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오빌리지에서는 이곳에서 자란 농산물로 만들어진 음식, 마을 주민이 만든 공예품과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체험마을이다. 2016년부터 총 5회에 걸쳐 팜파티(Farm Party)를 개최하여 연인원 170명이 참가하였으며, 2017년에는 시범적으로 ‘청풍마을에서 체험하지오(Geo~)’를 추진하여 가족 단위 체험객 40명이 연잎밥, 쿠키, 목공예, 전통놀이 등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하였다.



그림 10.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의 지오스쿨과 지오빌리지. 맨 위는 초등학생을 위한 ‘지오스쿨’(왼쪽)과 ‘조물조물 나만의 지질구조 만들기’(오른쪽), 중간은 지오빌리지 행사, 맨 아래는 무등산권의 브랜드(무등 지오파크)를 활용한 지역 농산물.

그밖에도 한국의 국가지질공원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의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지질공원 교육 프로그램인 ‘지오드림’, 시각장애인을 대상 지질공원 체험 프로그램, 외국인 과학자 가족 탐방 프로그램, 지역 예술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다양한 지역 축제와의 연계, 농촌마을 등과의 연계, 지질대장정 프로그램 등 공원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시각장애인 지질공원 체험(연합)



시각장애인 지질공원 체험(연합)



외국인 과학자 초청 프로그램(강원고생대)



동해안 지질대장정(경북동해안, 울릉도·독도)



지도드림(전북 서해안)



전국 지질과학과 연합캠프(부산)

그림 11. 지질공원마다 저마다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성공적인 운영을 꾀하고 있다.

## 지질공원의 관리 및 운영 방안

지질공원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방법은 지질공원의 상황과 특성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지질공원이 다른 지정지역과 구별되는 특징을 잘 이해하면 지질공원의 관리 방향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지질공원은 인증과 재인증을 위해 정량적인 평가를 받는다. 앞서 설명했듯 지질공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7가지의 기준은 더욱 구체적인 항목으로 나누어 자체평가표를 통해 평가하게 되어 있다. 자체평가표에는 신청자가 스스로 해당 지질공원을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이는 다시 현장평가자에 의해 검증된다. 이를 통해 지질공원의 보존과 활용이라는 큰 틀이 추상적인 계획으로 머물지 않고 실적에 따라 정량화된다. 이러한 정량적 평가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4년마다 돌아오는 재인증 시에도 지속된다. 따라서 점수가 높게 책정된 항목과 평가 점수가 낮은 항목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점수를 전체적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둘째, 지질공원은 네트워킹 활동을 권장하고 있으며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되면 GGN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해마다 GGN, APGN 혹은 EGN에 1,000명에 가까운 인원이 모여 구두 및 포스터 발표, 현장 답사, 홍보부스 운영 등을 통해 각 지질공원의 우수 사례를 공유한다. 네트워킹 활동을 얼마나 했는지 신청서에 반드시 이를 기술하도록 되어 있다. 이뿐만 아니라 각 지질공원은 지질공원 방문, 벤치마킹, MOU 등을 통한 개별적인 네트워킹도 중요하다. 따라서 네트워킹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국내외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운영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자신만의 관리 노하우를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셋째, 지질공원은 반드시 1년 이상 운영되어야 신청할 수 있다. 지질공원 신청 시 단순히 계획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질공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에 대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신청서와 자체평가표는 이를 검증하는 행위다. 가능성이나 잠재력 혹은 자원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인 조직, 예산, 프로그램, 인프라가 이미 상당 부분 구성되어 있어야 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은 시작점이 다르며 앞으로도 더 실질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지질공원만의 특징 중의 하나로서 지질공원의 신청을 준비하는 곳은 이를 염두에 두어 관리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넷째, 지질공원은 상향식 제도로서 주민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중요시된다. 주민의 참여는 지질공원의 부수적인 요소가 아니라 핵심적인 요소다. 이를 위해 신청서와 자체평가서에는 얼마나 많은 주민이 다방면으로 참여하는지를 검증한다. 현장평가에서도 주민이 운영하거나 참여하는 업체, 기관, 식품, 공동체, 구판장, 해설사 등의 활동이 실제로 얼마나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예의주시하며 평가한다. 단순히 지질유산이 우수하여 인증되는 경우는 단 한 곳도 없으며 지역주민이 지질공원의 하나의 큰 기둥으로 역할을 할 경우에만 인증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관리·운영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지질공원은 지질공원 전문가가 있어 업무의 연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지질공원은 지질학 관련 전공자를 지질공원 전문가로 채용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있으며, 세계지질공원의 자체평가표에서도 이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지질공원에서는 인증 필수 조건에 지질공원 전문가를 반드시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모든 국가지질공원이 지질공원 전문가를 1~2명씩 채용하고 있으며 개별 지질공원 외에 광역지자체에서도 전문가를 채용하여 지질공원을 관리하고 있다. 이들 중 5년 이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가 3명이 넘어서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지질공원을 맡은 공무원은 보통 2~3년 정도 업무를 맡고 다른 부서로 옮기는 경우가 많아 업무의 지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지질공원은 지질공원 전문가를 두고 있어 업무의 공백이 적은 편이고 중장기적 관리를 이어갈 수 있다.

지질공원이 다른 유네스코 지정지역과 중복되는 경우, 지질공원이 어떤 부가가치를 증가시키는지 반드시 논증하도록 되어 있다. 지질공원은 지질유산을 해당 지역 내의 다른 유네스코 중복지역의 자연, 문화, 생태유산과 연계하도록 되어 있다. 한 지역의 동·식물을 비롯한 자연유산과 그곳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의 문화유산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지질과 지형이라는 터전에서 알맞게 적응해온 상태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의 조화로운 연계를 통해 그곳의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질공원에서는 이를 연계하여 교육 및 관광에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지질공원의 강점인 지구의 역사 그리고 현재 사회가 당면한 문제인 자연재해, 기후변화 등에 대한 지식을 통해 생물권보전지역이나 세계유산의 생태와 자연 그리고 문화를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다.

## 주요 용어

-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UNESCO Global Geopark(s), UGGp  
2015년 유네스코의 공식 프로그램이 된 세계지질공원 프로그램
-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후보지(신청지) aspiring UNESCO Global Geopark(s), aUGGp  
UGGp에 신규 신청 중이거나 신규 신청을 준비 중인 지질공원
-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이사회 UNESCO Global Geoparks Council, UGGpC  
신규신청, 재인증 등을 심의하는 UGGp 내 유일한 의결 기구
- 국제지구과학·지질공원프로그램 International Geoscience and Geoparks Programme, IGGP  
세계지질공원이 유네스코 공식 프로그램이 된 이후로 국제지구과학 프로그램(IGCP) 내 세계지질공원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구성
- 국제지구과학프로그램 International Geoscience Programme, IGCP  
국제적인 지구과학 연구를 지원하는 유네스코 프로그램
- 국제지질학연합 International Union of Geological Sciences, IUGS  
지질과학 분야의 국제적인 협력 조직으로 aUGGp의 지질학적 가치 등을 검토함
- 국제지질과학총회 International Geological Congress, IGC  
지질과학 분야 전문가들이 매 4년마다 모이는 국제 지질과학 학술 대회
-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 Global Geoparks Network, GGN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된 지질공원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로 매 2년(홀수 해)마다 총회를 개최함
- 아시아-태평양지질공원 네트워크 Asia-Pacific Geoparks Network, APGN  
아시아-태평양(오세아니아 포함) 지역의 세계지질공원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로, 매 2년(짝수 해)마다 총회를 개최함
- 유럽지질공원 네트워크 European Geoparks Network, EGN  
유럽 지역의 세계지질공원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음

## 참고 문헌

- Jeon, Y.M. , Ki, J.S., Ko, Y.J. and Ko, J.G., 2016, Study on geotrails of Jeju Island Geopark and its vitalization, World Heritage and Mt. Hallasan Institute. Yeollin Publishing, Jeju, 145 p (in Korean)
- Korea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17, Study on Domestic Implementation Plan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of UNESCO Human, Social, Natural Science Division, Korea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175 p (in Korean)
- Lee, S.J., 2010, Policy Plan Research of the Geopark System in Korea. Korea National Park Service, 223 p (in Korean)
- Lee, S.J., Lee, H.W., Sagong, H., Choi, H.S., Lee, M.J. and Park, J.H., 2012, Study on Basic Plan and Certification Criteria of Geopark. Korea National Park Service, 202 p (in Korean)
- McKeever, P. J., & Zouros, N. 2005, Geoparks: Celebrating Earth heritage, sustaining local communities. Episodes, 28(4), 274.
- Moon, C., Ryu, W., and Lee, S.J., 2016, Korea Geoparks System, Journal of the Geological Society of Korea, 52(5), p 575-586.
- National Geoparks Secretariat of Korea, 2019, <http://koreageoparks.kr/main.do> (September 20, 2019)
- Ryu, W. and Moon, C., 2016, The Analysis of Survey on the Awareness of National Geoparks, Journal of the Geological Society of Korea, 52(5), p 561-574.
- UNESCO, 2015, Operational Guidelines for UNESCO Global Geoparks.
- UNESCO, 2019, <http://www.unesco.org/new/en/natural-sciences/environment/earth-sciences/unesco-global-geoparks/> (October 27, 2019)
- Zouros, N., & Mc Keever, P. 2004, The European geoparks network. Episodes, 27(3), 165-171.

## <참고 1>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신청서 목차

### A - 일반 정보

1. 지질공원 명칭
2. 위치
3. 면적(km<sup>2</sup>)
4. 자연 및 인문지리 특성 요약
5. 관리 조직
6. 연락처
7. 웹사이트
8. SNS

### B - 제출 문서 체크리스트

- Y 신청의향서(7.1.까지 제출 완료)
- Y 신청서
- Y 자체평가표
- Y 부록: 1. 자체평가표 문서
  2. 지질·지형유산 보고서(E 1.1 복사본)
  3. 지지서한
  4. 신청지 지도
  5. 지질·지리 요약(1페이지)
  6. 참고문헌(지구과학적 가치)

### C - 위치

부록 4(지도) 외에 경위도 좌표 및 GIS shape 파일 제출(WGS84 - EPSG: 4326)

### D - 주요 지질 및 그 밖의 요소

가장 중요한 지질학적 요소 및 다른 요소, 장소, 활동

### E -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증명

- E.1 영역
  - E.1.1 지질학적 유산 및 보존
  - E.1.2 경계
  - E.1.3 가시성(시인성)
  - E.1.4 시설
  - E.1.5 정보, 교육, 연구

- E.2 그 밖의 유산
  - E.2.1 자연유산
  - E.2.2 문화유산
  - E.2.3 무형유산
  - E.2.4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와의 관련성
- E.3 관리
- E.4 유네스코 중복지정
- E.5 교육 활동
- E.6 지질관광
- E.7 지속가능한 발전 및 파트너십
  - E.7.1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
  - E.7.2 파트너십
  - E.7.3 지역 주민 및 원주민 참여
- E.8 네트워크 활동
- E.9 지질 물질의 판매

## **F -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되려는 당위성**

## <참고 2> 현장평가 관련 참고사항

다음 사항은 현장평가 시 도움이 될만한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 <현장평가자 모집>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신규 신청자는 매년 약 17~20개소에 이르고, 재인증의 경우는 매년 20~30개소에 이른다. 즉 매년 약 40개 정도의 지질공원을 대상으로 현장평가를 수행해야 하는 실정이다. 현재 세계지질공원은 147개로 매년 10개 정도가 새로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 나라는 해가 거듭될수록 그 수는 계속해서 늘어갈 것이다. 이를 위해 유네스코에서는 필요 시 현장평가단을 모집하여 선발한다. 현장평가자가 되려면 영어 혹은 불어를 잘 구사할 수 있어야 하고 다음 세 가지 조건 중 최소 두 가지를 만족해야 한다.

- 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관리자 혹은 대표 지질 전문가(geoscientist)
- 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학술위원회(scientific committee) 위원
-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과 관련한 다음 영역에서 최소 3가지 영역에서 최소 5년 이상의 전문 경험 보유자: 지질 유산, 지질 보전, 지속가능한 발전, 관광개발 및 진흥, 환경 문제, 지역 협력, 지구과학의 대중화

### <현장평가 수행 지침 Field inspection conduct guidelines>

본 지침은 신규 신청 혹은 재인증 현장평가의 평가자들과 평가가 수행되는 후보지 모두가 참고해야 하는 지침으로 유네스코와 GGN이 만들었다. 여기에서는 2018년 12월 판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현장평가의 목적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신청서에 담겨 있는 내용을 현장에서 후보지의 관리자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장평가자들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체평가표와 신청서의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현장평가 스케줄과 상세 점검 내용은 최소한 현장평가 시작되기 4주 전에 유네스코 사무국과 평가자가 모두 알 수 있도록 공유해야 한다. 현장평가자는 반드시 자체평가표 항목 하나하나에 대해 지질공원 관계자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하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조언을 해줄 수 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현장평가에 대한 결정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등을 미리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

재인증 현장평가도 신규 신청과 비슷하지만 후보지에서 제출한 경과보고서의 세밀한 내용을 현장에서 점검해야 하며 신규 신청 당시 자체평가표뿐만 아니라 재인증 자체평가표인 문서 B(document B)도 동시에 확인해야 한다.

현장평가 시 평가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두 평가자 중 어느 한 명이 단독으로 이동하거나 남겨져서는 안 되며 반드시 모든 일정을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어느 한 명에게 일이 집중되어서는 안 되며 동등하게 참여해야 한다.

현장평가를 위해 해당 후보지 공원에서는 입국에 필요한 비자뿐만 아니라 제반 비용(항공, 식사, 숙박, 교통 등)을 모두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후보지는 현장평가자에게 전문가 자문료 같은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현장평가자는 이를 절대 받아서도 안 된다. 또한 현장평가자가 현장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에는 병원비를 모두 지급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해서 유네스코와 현장평가자들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평가자는 평가자 혹은 승인된 참관자(approved observers) 외에는 현장평가 동안 동행해서는 안 된다.

다음은 현장평가 수행 시 현장평가자들의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요약한 것이다.

1. 선물: 현장평가자 혹은 후보지는 서로 간에 간단한 선물을 주고받을 수는 있지만 비싼 선물을 받거나 돈을 주고받을 수 없다.
2. 가족: 현장평가 수행 중에는 승인된 현장평가자 혹은 참관자 외에는 함께 동행해서는 안 되며 만약 가족을 동행한다면 현장평가 완료 후에 동행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돈도 후보지 측에서 지불하여서는 안 된다.
3. 사전 준비: 여벌 옷, 카메라, 우의, 구급약 등을 지참해야 한다.
4. 엄격할 것(be tough): 높은 품질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충 하지 말고, 엄격하게 심사할 것. 필요하다면 계획 외의 장소를 둘러볼 것을 요구할 것.
5. 외교적일 것(be diplomatic): 결정 권한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이사회에 있으므로 충고만 할 것.
6. 개방적일 것(be open): 모든 사항에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선입견을 가지지 말고 현장평가에 임할 것.
7. 건설적일 것(be constructive): 모든 곳은 흠과 문제가 있으므로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이러한 권고 사항을 보고서에 넣을 것.
8. 국제적일 것(be global): 현장평가자는 국제적인 관점으로 후보지를 바라볼 것.
9. 주의할 것(beware): 대중매체의 인터뷰 등에 주의하여 평가 결과를 유도하는 질문에 적절히 답변할 것. 또한 후보지의 세계지질공원 신청 저의가 의심스러운 경우(관광 진흥의 목적으로 상표가 필요한 경우, 혹은 개발 저지 수단으로 이용)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면밀히 살펴볼 것.
10. 조심할 것(be careful): 현장평가는 반드시 최대한의 안전을 확보할 것. 가족 여행객이 함께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수준의 체험은 지양할 것.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안전하고, 포괄적이고, 생산적이고, 호의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위의 행동강령을 지킬 것과 다음의 부적절한 행동은 현장평가자와 후보지가 모두 지양하길 요구한다. 만약 부적절한 행동을 요구받았다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사무국에 공식적인 신고를 할 수 있다.

- 따돌림(bullying)
- 감정적, 정신적, 신체적 폭력 혹은 학대(emotional, psychological or physical violence or abuse)
- 차별(discrimination)
- 강요(coercion)
- 공격적/학대적 행동(aggressive/abusive behaviour)
- 권력 남용(abuse of power)
- 과도한 요구 및 지나친 고집(unreasonable demands and undue persistence)
- 희롱(harassment including sexual harassment)
- 희생(victimisation)
- 중상모략(vilification)
- 따돌림, 차별, 희롱, 희생, 중상모략을 허락·조력·장려하는 행위(permitting, assisting or encouraging others to bully, discriminate, harass, victimize or vilify)

## <현장평가 체크리스트>

현장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Checklist of tasks and actions for evaluators and inviting Geopark areas)는 평가자와 후보지 모두가 현장평가를 위해 준비해야 할 목록을 만들어 현장평가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평가를 계획대로 진행시키기 위해 GGN이 만든 체크리스트다. 구성 내용은 평가자와 후보지가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과, 개별적으로 해야 할 것, 마지막으로 유네스코 사무국이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나누어져 있다.

### (공통 사항)

현장평가 일정 및 아젠다(agenda)를 협의해야 하며, 아젠다는 유네스코 사무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젠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도착한 날: 도착 후 숙소 이동, 후보지에 대한 1시간 정도의 간략한 소개

첫째-둘째 날: 현장 답사

셋째 날: 현장 답사, 두 평가자가 후보지에 대해 관찰한 것과 어떤 권고 등을 제시하고 논의할지를 준비하는 시간

넷째 날: 마지막 회의(최대 1.5시간): 평가자들은 관찰한 것을 나누고 권고 사항 등을 토의함. 자체평가표 A(재인증 시 B도 함께)와 준비한 모든 자료를 검토함. 마지막 회의 시 지질공원 관련한 주요 인사들만 입회할 것 (40~60명의 인원은 바람직하지 않음). 출발.

항공은 평가자들을 배려하여 UNESCO 지침을 지켜 일반적으로 최소 비행 시간을 고려하여 예약하고, 비자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제반 비용을 대고 초대장 등을 미리 보내 줄 것.

### (현장평가자 체크리스트)

#### - 준비, 건강, 안전 관련

유효한 여행자 보험 증빙을 유네스코로 보낼 것

유효한 여권 소유 여부(최소 3개월 이상)

비자 여부 체크

UN 안전 테스트 하기

비상약 및 복용약

방문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알 것

가족이 일반적으로 여행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위험한 작업이나 스케줄은 거부할 것

#### - 출발 전 평가 관련 사항

유네스코 운영 지침에서 지질공원의 철학, 목표, 기준 등을 숙지할 것

신청서 혹은 경과보고서와 관련 문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주변의 다른 세계지질공원의 사례를 염두에 둘 것  
후보지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첫 인상을 얻을 것

현장평가와 관련된 사항 중 의문이 있으면 유네스코에 문의할 것

동행하게 될 평가자와 이메일이나 전화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후보지에 대해 논의할 것

- 평가 종과 후

관련 문서를 가져 올 것

현장평가 중에 사용할 노트와 펜을 가져 올 것

평가가 끝난 후 2주 전에 다른 현장평가자와 함께 보고서를 마무리할 것

- 다음 사항은 현장평가를 준비하는 후보지의 체크리스트다.

시간표와 현장평가 내용을 준비하여 평가자와 논의한 후 유네스코의 허락을 받는다(평가 최소 한 달 전)

항공 e티켓 발송(평가자들에게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할 것)

평가자들에게 지역, 날씨, 문화와 같은 다른 중요한 사항을 알려줄 것

이동과 관련한 모든 사항(숙박, 방문 포함) 등을 모두 준비하되 사생활 침해가 없도록 할 것(대중 매체와 인터뷰를 할 때 평가 결과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음을 사전에 주지시킬 것)

관련한 모든 기관과 인원이 현장평가에 대해 미리 알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다음은 유네스코 사무국의 체크리스트이나 후보지도 이를 알면 현장평가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장평가의 전과 후 과정을 감독하고, 후보지와 현장평가자 모두와 소통할 것

모든 관련 기관(지역, 국가 모두)이 현장평가에 대해 알려주며, 각자의 역할, 기간, 비용과 이동에 대한 책임 등을 미리 알려줄 것

현장평가 아젠다와 활동을 승인할 것

모든 관련자가 현장평가 시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살피고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은 보고할 것

### <참고 3> 재인증 보고서 목차 구성

#### A - 일반 정보

1. 면적(km<sup>2</sup>)
2. 인구
3. 세계지질공원의 승인 연도
4. GGN 가입 연도(2015년 이전 승인 공원의 경우)
5. 이전 재인증 날짜와 평가자
6. 연락처(이름, 직책, 이메일)
7. 웹사이트
8. SNS

#### B - 제출 문서 목록

현장평가자들에게 제출될 문서 목록(GGN에 제공한 연간 경과보고서 포함)

#### C - 지도

면적의 조정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지도를 제시

#### D - 권고 사항 개선 여부

권고 사항에 대한 개선(이행) 여부를 사진 등의 증빙과 함께 설명

#### E -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기준의 증명

#### F -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되려는 당위성



# 람사르습지

## 람사르습지의 정의와 지정 목적

람사르협약은 국가들이 협약의 당사국으로 가입할 때 협약 전문 2.4에 따라 이 협약이 제시하고 있는 9개의 등록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중요한 습지를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 목록인 란사르 리스트에 반드시 하나 이상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란사르 리스트에 등록된 습지를 ‘람사르습지’라 명명하고, 해당 습지는 국제적 중요성을 인정받게 된다. 란사르습지를 등록한 국가의 정부는 습지의 생태적 특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방안을 적용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된다. 협약 가입 이후에도 당사국들은 자국 영토 내의 습지들에 대한 생태적·수리수문학적 중요성을 평가하여 추가적으로 란사르습지를 지정하거나, 이미 지정된 습지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현재 란사르협약에는 170개 당사국이 2,342개의 란사르습지를 등록하고 있다. 란사르습지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보호구역 네트워크로 타 보호구역(자연유산 213곳, 생물권보전지역 701곳, 지질공원 147곳)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지정 건수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이 차이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추구하는 목표의 차이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타 보호지역들은 생태적·환경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에 인증을 부여하여 그 지역이 지닌 우수성을 부각하여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반면, 란사르습지는 란사르협약이 추구하는 전 세계 모든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생태적, 환경적 우수성보다는 보전해야 할 필요성에 비중을 두어 보전이 필요한 보다 많은 습지들이 란사르습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즉, 타 보호구역들은 지정을 위해 제시되는 다양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타 지역들과 ‘차별성 또는 우수성’을 갖는 지역에 인증을 부여하는 반면, 란사르협약은 ‘보전의 필요성’에 초점을 두고 있어 협약이 제시하는 아홉 가지 지정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란사르습지로 등록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지정된 보호구역의 수에서 큰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란사르습지는 란사르협약을 통해 보전해야 할 모든 습지 중 ‘보전의 필요성’ 측면에서 우선순위를 가진 최소한의 습지들로 이해한다면 무리가 없을 듯하다.

또한 란사르협약은 란사르습지의 지정 또는 등록보다는 이후의 관리를 더욱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 란사르습지에는 관리 계획의 수립 및 이행,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습지가 가진 생태적 가치가 유지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6년마다 란사르습지정보양식 Ramsar Site Information Sheet, RIS의 업데이트를 통해 습지의 건강성 및 생태적 특성 변화를 추적관리하고 있고, 언제든지 란사르습지에 부정적 변화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즉시 란사르협약 사무국으로 보고해야 할 의무 또한 부여된다.

## 지정수단: 람사르협약

람사르협약은 보호해야 할 습지를 정의하는 데 일반적 습지의 정의보다 더 많은 자연생태계를 습지로 인식하는 광범위한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고, 협약 전문의 조항 1.1에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자연적/인공적, 영구적/일시적, 물의 흐름이 정체상태/흐르는 상태, 담수/기수/염수에 관계없이 소택지, 저층습원, 이탄지 또는 수역을 말하며, 여기에는 간조 시 수심 6미터를 넘지 않는 해역을 포함한다.’

또한 인접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문 조항 2.1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람사르습지 목록’에 다음과 같은 습지가 포함되도록 규정한다. ‘습지에 인접한 강 기슭 또는 연안지역, 그리고 습지 내에 있는 섬이나 간조시 6미터가 넘는 습지 내 해역을 포함할 수 있다.’

람사르협약은 습지 유형에 관한 람사르 분류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42가지 습지 형태가 포함되며, 크게 연안습지(Marine and Coastal Wetlands), 내륙습지(Inland Wetlands), 인공습지(Human-made Wetlands) 등 세 개의 범주로 나누고 있다.

람사르협약은 연안습지의 경우 간조 시 수심이 6미터를 넘지 않는 범위를 습지로 간주하지만, 섬뿐만 아니라 수심 6미터 이상의 수역도 습지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고, 호수나 강의 경우는 수심에 관계없이 전체 범위를 습지로 정의하고 있다.

표 1. 습지 유형 분류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코드	종류
해안 습지	해양형	조하대	영구 저수심 해안	영구 저수심 해안	A	간조 시 6m 이하 해안
				수초대	해안 수초대	B
			암초	산호초	C	
		조간대	암반대	암석해안	D	연안바위섬, 해안절벽
			미고결대	모래 및 자갈해안	E	사주, 사위, 모래섬, 사구 및 습한 사구습지
	하구형	조하대		하구수역	F	하구수역, 삼각주
		조간대	미고결대	조간대 갯벌	G	필갯벌, 모래갯벌, 혼성갯벌
			정수식물	조간대 초본 소택지	H	염습지, 염초지
			교목우점	조간대 삼림습지	I	맹그로브 소택지

해안 습지	호소형 / 소택형	영구적 / 계절적			J	바다와 연결된 수로가 있는 석호
					K	담수 삼각주 석호
	카르스트형		카르스트 및 지하수계		Zk(a)	
내륙 습지	하천형	영구적		내륙 삼각주	L	
				영구하천	M	폭포 포함
		간헐적		간헐하천	N	
	호수형 (8ha 이상, 수심 2m 이상)	영구적		영구담수호	O	담수 호수
			계절적/간헐적		간헐담수호	P
		영구적		영구 염호	Q	염수/기수/알카리성 호수
			계절적/간헐적		간헐 염호	R
	소택형 (8ha 이상, 수심 2m 이하)	영구적	초본우점	영구 염수/기수늪	Sp	염수/기수/알카리성 늪
				영구 담수 늪	Tp	연못, 정수식물 군락 우점, 무기질 토양 습지
		계절적/간헐적	초본우점	간헐 염수/기수늪	Ss	염수/기수/알카리성 늪
				간헐 담수늪	Ts	진흙구덩이, 사초늪, 무기질 토양 습지
		영구적/ 계절적/간헐적	관목우점	비삼림 이탄습지	U	관목 또는 개수 고층습원
				담수 관목우점습지	W	관목 우점 소택지 또는 늪
		영구적	교목우점	산림 이탄습지	Xp	이탄 소택지 늪
				담수 교목우점습지	Xf	담수 소택지 늪
	계절적/간헐적	초본우점	고산습지	Va	고산초지 (일시적 고산 용빙수 습지 포함)	
			툰드라습지	Vt	툰드라 웅덩이 (일시적 툰드라 용빙수 습지 포함)	
			샘물습지	Y	담수 샘, 오아시스	
	지열형		지열습지	Zg		
	카르스트형		내륙 카르스트 및 지하수계	Zk(b)	둘리네, 우발레 등	
	인공습지	내수면 어업		양어장	1	어류, 새우양식

인공습지	농경지		농업용 저수지	2	일반적으로 8ha 이하
			관개지	3	논, 관개수로
			계정성 침수경작지	4	
	염전		소금 산출지	5	염전
	도시 및 공단		저수지, 댐, 간척호	6	
			채굴장	7	자갈/벽돌/점토/토사 채취장
			수질정화습지	8	하수처리장, 침전지, 산화지
			운하 및 수로		운하 및 배수로, 도랑

(출처: 김귀곤, 습지와 환경-자연과 인간이 만드는 습지. 아카데미 서적, 2003)

## 람사르습지의 지정 기준

람사르협약은 국제적 중요성에 대한 객관적 기준 아홉 가지를 제시하여, 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 습지들이 람사르습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2.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

구분		기준
그룹 A 대표적/희귀한/유일의 유형을 갖는 습지		1 해당 생물지리학 지역 내에서 자연 또는 유사 자연습지 유형 중 대표적/희귀한/유일의 유형을 갖는 습지
그룹 B 생물다양성 보전에 있어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	생물종 및 생태공동체에 근거한 기준	2 해당 생물지리학 지역 내에서 자연 또는 유사 자연습지 유형 중 대표적/희귀한/유일의 유형을 갖는 습지
		3 해당 생물지리학 지역의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식물군락 또는 동물종을 보유한 습지
		4 생활사의 중요한 단계에 있거나 악조건 속에 있는 동식물의 서식처가 되는 습지

그룹 B 생물다양성 보전에 있어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	물새에 근거한 특정 기준	5	20,000개체 이상의 물새가 정기적으로 서식하는 습지
		6	특정 물새 종 혹은 아종의 전 세계 개체 수 1% 이상이 정기적으로 서식하는 습지
	어류에 근거한 특정 기준	7	고유 어종 또는 해당 과에 속하는 어류가 상당 부분 서식하거나, 습지의 가치를 잘 대변해 주는 어류 군집이 서식하는 습지
		8	해당 습지가 어류의 먹이원, 산란장, 어린 물고기가 성장하는 곳 및 회유하는 어류군이 이동하는 통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습지
	다른 분류에 근거한 특정 기준	9	조류를 제외한 습지에 의존하는 하나의 생물종 또는 아종의 전 세계 개체군 1% 이상이 정기적으로 서식하는 습지

## 람사르습지 지정 절차

람사르협약이 정한 아홉 가지 지정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습지에 한하여 람사르습지로 지정할 수 있다. 관련 절차는 당사국의 람사르협약 담당부처(Administrative Authority, AA)에서 진행하며 람사르습지정보양식(RIS)이라 불리는 신청서 양식의 작성으로 시작된다.

RIS는 지정 대상 습지의 지리적·생태적 특성에 관한 정보와 람사르협약이 제시하는 아홉 가지 지정 요건의 충족에 대한 근거자료로 구성되어 있고, 양식의 작성과 제출은 람사르협약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 협약 사무국은 당사국별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제공하고 있고, 시스템에 접속하면 람사르습지정보양식을 항목별로 작성할 수 있다. 온라인 시스템으로 제출된 양식은 람사르협약 사무국 지역별 선임담당관이 검토하며, 불충분한 내용 또는 작성이 잘못된 부분에 대한 보완요청을 할 수 있다. 사무국의 검토와 보완 절차를 통해 모든 정보가 적절히 기술되었을 경우 람사르습지로 등록되고, 해당 습지에 대한 인증서가 발급된다. 등록 절차가 완료되면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인 람사르습지정보서비스(Ramsar Site Information Service, RSIS)에 업로드되어 전 세계에 공개된다. 람사르습지를 지정, 등록한 당사국은 의무적으로 해당 습지에 대한 람사르습지정보양식을 최소 6년에 한 번 업데이트해야 한다.

람사르습지의 지정이 타 보호구역의 지정과 다른 점은 지정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 권한이 협약 사무국이 아닌 협약 당사국에 있다는 것이다. 이는 그만큼 람사르습지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당사

국의 의무가 크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당사국이 자국 영토 내의 습지를 람사르습지로 등록하고자 신청서, 즉 람사르습지정보양식을 제출하면, 협약 사무국은 이를 검토하고 내용상 부족한 부분 또는 불명확한 부분 특히, 람사르습지 지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충족 근거가 기술되도록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람사르습지로 지정된다.

람사르습지의 최종 지정에 있어 당사국이 지정하기를 희망하는 습지에 대해 람사르협약 사무국이 거부할 수는 없지만 람사르습지 지정 기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습지들이 람사르습지로 지정될 수는 없다. 물론 이는 신청서에 대한 서면 검토로 타 보호구역 지정 과정과 비교하면 현장실사 등의 절차가 없어 신청서 검증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겠지만 모든 절차와 과정이 당사국과 협약 사무국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시되지 않는다.

람사르협약이 추구하는 가치와 협약 내에서 람사르습지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면 간소화된 절차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쉬워진다. 람사르협약은 전 세계 모든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궁극적 목표로 삼고 있고, 람사르습지는 이러한 궁극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보전의 가치가 높은 즉, 기능적, 역할적 측면에서 보전의 우선순위가 높은 습지들이 훼손되거나 소실되기 전에 중요 습지로 분류하여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 것이다.

람사르협약은 협약의 궁극적 목표의 달성을 위해 다양한 전략과 지침 등을 채택하고 있다. 이들 전략과 지침의 최종 이행자는 협약 사무국이 아닌 당사국으로 람사르습지의 지정 및 보전 또한 같은 맥락에서 람사르협약 당사국의 의무인 것이다. 람사르협약은 의무 이행자로서 당사국의 람사르습지 지정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신뢰하고 정부가 제출하는 문서를 공인된 문서로 인정함으로써 신청과 검증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람사르습지 지정 자체가 국내법상의 법적 보호 수단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해당 국가의 국내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보호구역으로 동시에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호구역의 지정은 습지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생활 및 사유재산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지역의 이해 당사자들과의 협의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며, 지역의 동의를 바탕으로 람사르습지 등록 절차가 진행된다.

효율적인 정보 관리를 위해 람사르협약은 람사르습지정보양식을 작성·제출하는 데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검토·승인된 람사르습지정보양식은 자동적으로 람사르습지정보서비스 웹사이트(<http://rsis.ramsar.org>)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되고, 람사르습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

람사르협약은 당사국별로 람사르습지정보양식 작성자RIS Compiler를 지정하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부여받아 접속하도록 하고 있다. 지정된 작성자는 신규 람사르습지 등록을 위해 시스템

에서 계정을 생성하고, 준비된 정보를 계정하에서 제공되는 양식에 입력하여 램사르습지정보양식(RIS)을 작성한다. 작성된 양식은 램사르협약에 제출되고, 램사르협약 사무국의 지역담당관이 내용 전반을 검토하여 검토 의견을 당사국에 제시한다. 당사국은 사무국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양식상 부족하거나 불명확한 정보를 수정 보완해야 한다. 이 과정은 신청서가 완성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진행되며, 사무국의 최종 승인이 이루어지면 램사르습지로 등록되어 램사르습지정보서비스(RSIS)를 통해 온라인으로 공개된다.



그림 1. 램사르습지 등록 절차

## 람사르습지 해제

당사국은 협약 조항 2.5항에 의거하여 국익에 관한 사유로 지정된 램사르습지를 해제하거나 경계를 축소할 수 있다. 하지만 4.2항은 동일 지역 및 이외의 지역에서 해당 습지 비율에 상응하는 자연 보전지역을 추가 지정하거나 보호함으로써 지정 해제 및 축소에 대한 보상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현재까지 지정 자체가 취소된 경우는 없으며, 일부 램사르습지의 경계를 축소한 경우는 있다. 어떠한 사유로라도 램사르협약이 해당 당사국의 의지에 반하여 램사르습지의 지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

### • 램사르습지의 면적

습지의 면적은 램사르습지 지정 기준 또는 중요도 평가의 척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다.

하나는 램사르협약은 전 세계의 모든 습지를 보전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면적의 넓고 좁음을 따

나 각각의 습지가 갖는 생태적 중요성이나 제공하는 혜택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각 당사국이 가진 지리적 위치, 국토 면적 등의 여건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습지의 대상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정된 람사르습지들의 면적은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한국과 같이 국토의 전체 면적이 비교적 작은 국가의 경우에는 생태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전체 면적이 1헥타르인 습지(강화 매화마름)를 람사르습지로 등록하고 있는 반면 국토 면적이 넓은 국가인 볼리비아의 야노스 데 모소스(Llanos de Moxos) 습지는 면적이 680만 헥타르로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68%에 달한다. 또한 국가의 경계를 넘어 존재하는 습지들의 경우 면적이 더욱 넓은 경우도 있다. 콩고와 콩고 민주공화국 사이의 응기리 툼바 멘돔브(Ngiri-Tumba-Maindombe) 습지는 면적이 1,290만 헥타르로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약 1.3배이다.

이렇게 다양한 면적의 람사르습지들이 존재하지만 람사르협약은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람사르습지를 반드시 보전해야 할 중요한 대상으로 삼고 있다.

## 람사르습지의 관리 - CEPA

람사르습지의 관리는 지정 이후에 반복되는 일련의 과정들로 구성되며 모든 과정에 CEPA라는 의사소통, 역량 강화, 교육, 참여, 인식 증진 활동들이 수반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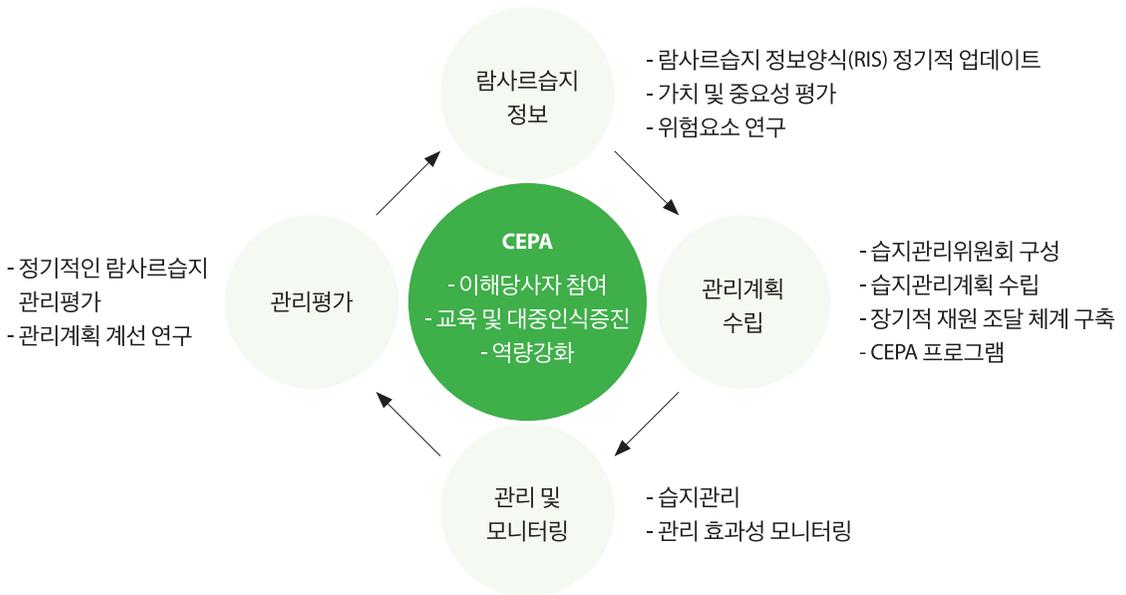


그림 2. CEPA 소개

습지의 보전과 관리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지지와 조화로운 참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습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관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람사르협약에서는 이러한 과정에 필요한 ‘의사소통 Communication, 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 교육Education, 참여Participation, 인식증진 Awareness’과 같은 요소들을 묶어 CEPA라는 약어를 사용한다. CEPA 활동은 람사르습지의 지정과 관리의 모든 과정에 적용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 이해 당사자 참여

습지는 습지에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들과 습지의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의 이해 당사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람사르습지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결정들은 이들 이해 당사자들의 삶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지역의 이해 당사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람사르습지의 지정과 관리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게 되면 습지를 보호하고 이용하는 주체들 간의 상호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습지 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자와 이해 당사자들 간의 합의된 의견을 신속하게 습지 관리에 적용할 수 있다. 이는 람사르협약의 핵심 철학인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실현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이해 당사자들은 의사결정 참여는 공식적인 회의 또는 워크숍 등의 간소화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 교육 및 대중의 인식 증진

습지는 일반 대중, 의사결정자, 기업, 언론 등에 환경교육 활동과 습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증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장소다(사례 연구 1).

#### • 사례 연구 1: 이해 당사자 참여 및 환경교육

1981년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칠리카 라군은 남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넓은<sup>1)</sup>기수<sup>2)</sup>석호다. 칠리카 라군을 보전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사업 기관인 칠리카개발청(CDA)은 지역의 기관, 민간 단체들과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환경 인식 증진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칠리카 라군의 보호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무상 모목 배포, 주요 지점 쓰레기통 배치, 환경 인식 경연대회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또한 CDA는 칠리카 라군 주변의 학생들을 위한 대규모 환경교육도 시작하였다. 103개 중·고등학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나무 심기, 학교 주변 녹색 울타리 만들기, 쓰레기통 설치하기, 친환경 퇴비 만들기, 중요 환경의 날 기념, 환경 인식 경연대회, 토론대회, 백일장, 사생대회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터치스크린, 전시공간, 식물 모형 전시, 수족관, 전망대,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 공간 등 멀티미디어 시설을 갖춘 방문자센터를 설립하였다. 이 센터는 칠리카 석호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칠리카 석호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연중 제공하고 있다.

[출처: (2008) 세계의 람사르습지: 람사르협약 목표를 실천하는 대표적인 람사르습지, 대한민국 환경부]

- 1) 기수brackish water: 해안의 호소나 강 하구 등에서 나타나며, 바닷물과 민물이 섞여 있는 물
- 2) 석호lagoon: 해안가에서 형성되며, 파도의 힘이 약해진 곳에 띠 모양으로 모래가 쌓이면서 바다와 분리된 수심이 얇은 자연호수

습지를 활용한 교육 및 대중의 인식 증진 활동은 다음과 같은 활동들을 포함한다.

- 학교 정규 교육 과정과 연계된 공식적인 실내·외 학습
-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습지 관련 지식과 기술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자 훈련 과정”
- 자연이 미묘한 변화를 보이는 시기에 방문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정적인 계절 활동
-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접근하기 어려운 곳으로 방문객을 안내하는 특별한 활동
- 정기적인 문화 또는 종교 축제에 습지와 관련된 메시지를 전달

2월 2일은 ‘세계습지의 날’이다. 세계습지의 날은 1971년 카스피해 연안에 위치한 이란의 도시인 ‘람사르’에서 람사르협약이 채택된 것을 기념하고 보다 많은 일반인들이 습지의 가치와 습지가 우리에게 주는 혜택 그리고 람사르협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날이다. 람사르협약 사무국(www.ramsar.org)은 세계 습지의 날을 기념하고, 널리 알리기 위한 각종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세계습지센터 네트워크는 습지센터들이 습지 현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돕기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다. 이 네트워크는 전 세계 5개 대륙에서 350개 이상의 습지센터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습지교육과 인식 증진 활동 사례 공유와 더불어 다양한 활동으로 회원들을 지원하고 있다.

## 역량 강화

역량 강화를 통해 습지 관계자들의 지식과 기술을 증진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습지 관리자, 습지 감시인 등의 습지관계자들을 위한 ‘직무교육’ 또는 다른 형태의 정기적인 교육 과정 등이 이에 해당된다.

## 람사르습지 관리 - 습지 정보

람사르습지를 관리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지침인 관리 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현재 해당 람사르습지에 대한 모든 가용 정보를 모으는 과정은 필수적이며, 이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하는 람사르습지정보양식의 작성에도 필요한 작업이다.

람사르협약 당사국은 람사르습지를 지정할 때 ‘람사르습지정보양식’을 작성하여 람사르협약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하고, 지정 이후에는 최소 6년마다 갱신된 정보로 람사르습지정보양식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람사르습지정보양식은 해당 습지가 람사르습지로서 갖추어야 할 조건에 관한 정보를 담은 문서로 습지의 물리적, 생태적, 수문학적, 사회적, 문화적 특성에 대한 정보, 습지가 인간과 자연에 제공하는 혜택인 생태계 서비스, 그리고 습지경계지도와 함께 관련 법규와 분쟁 관리에 관한 정보를 기술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더하여 더욱 상세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생태계 구성 요소, 프로세스, 혜택,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보다 종합적이고, 상세한 생태적 특성을 기술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람사르습지정보양식 작성과 정기적 업데이트는 람사르습지를 등록함으로써 부여되는 최소한의 의무다.

람사르습지를 지정할 때 기준이 되는 습지의 상태를 이해하고 문서화하는 것은 필수적인 사항이다. 이는 람사르습지 지정 이후 진행되는 모니터링에서 습지의 생태적 특성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지, 부정적으로 변화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이를 바탕으로 습지가 제공하는 혜택과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관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습지의 중요성은 습지가 가진 우수한 생태적 특성, 습지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그리고 습지 생태계가 인간에게 제공하는 혜택들의 조합으로 결정된다. 경제적 가치(사례 연구 2)는 습지의 중요성을 결정하는 요소들 중 일부에 적용될 수 있지만, 모든 요소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 사례 연구 2: 습지가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

#### 물 공급

테 파파 누이 보호공원은 뉴질랜드의 오타고 지역에 약 미화 9,600만 달러에 달하는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테 파파 누이가 제공하고 있는 물을 대체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산출한 것이다. 더니든 시에서 가장 중요한 생태계 서비스는 물 공급이다. 이는 2005년 가치로 약 미화 6,5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되었으며, 이 중 전기 생산을 위한 물 공급이 약 미화 2,200만 달러, 관개용수 공급을 위한 물 공급이 약 미화 850만 달러를 차지한다.

#### 폭풍우 방지 및 침식 제어

캄보디아 레암 국립공원의 맹그로브 숲(1,800헥타르)이 폭풍우 방지와 침식 조절에 기

여하는 가치는 연간 미화 30만 달러에 달한다. 또한 이 맹그로브 숲은 어류의 서식처 및 번식지를 제공하고, 화목 및 약용식물, 건축 자재를 제공하고 있다. 이 모든 비용은 연간 미화 약 60만 달러의 가치를 갖는다.

[출처: Russi D., ten Brink P., Farmer A., Badura T., Coates D., Förster J., Kumar R. and Davidson N. (2013) The Economics of Ecosystems and Biodiversity for Water and Wetlands. IEEP, London and Brussels; Ramsar Secretariat, Gland.]

생태계 서비스는 직·간접적으로 인간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습지가 제공하는 4가지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 공급: 식량, 연료, 깨끗한 물 등과 같은 생태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산물
- 조절: 기후, 수자원, 자연재해 등의 조절과 같은 생태계 프로세스의 조절 기능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
- 문화: 정신적 풍요, 여가, 교육, 심미감 등을 통해 인간이 얻을 수 있는 혜택
- 지지: 물순환, 영양 순환, 서식처, 생물상과 같이 모든 다른 생태계 서비스의 생성에 필요한 서비스

#### 습지 생태계 서비스 평가

- 해당 습지가 인간과 자연에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지 평가를 통해 알아보고, 습지 이해 당사자, 정부 부처, 기업, 일반 대중이 이를 이해하고 인지하도록 하여, 이들이 습지를 소중히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이끌 수 있다.
- 과도한 취수 또는 도심 확장으로 인한 습지 경계 침해 등 습지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해당 습지가 갖고 있는 생태계 서비스들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이 생태계 서비스를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기여할 수 있다.
- 습지가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의 일부(생물다양성, 홍수 조절 기능 등)를 희생하면서 다른 생태계 서비스(어업 등)를 과도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해결해야 할 때에도,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어떤 선택이 우리에게 더 이로운 것인지, 더 가치가 있는 것인지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습지 이해 당사자들이 습지가 제공하는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에 적절한 접근 권한을 가지는지, 혜택을 받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습지에 대한 위협은 그 규모와 정도에 따라 다양하며, 이는 현재 존재하는 위협일 수도 있고 잠재적일 수도 있다. 그 예로 상류에서의 과도한 취수, 배수, 외래 침입종, 도시 개발, 기후변화, 오염 등이 있다. 습지에 대한 위협을 파악할 때에는 습지의 생태적 특성에 영향력이 큰 요소, 과정, 혜택, 서비스 등을 주목해야 하고, 이들을 람사르습지로 지정할 때 적용했던 지정 기준들과도 연계하여 판단

해야 한다.

#### 습지에 대한 위협 파악

- 습지의 생태적 특성에 대한 현존하는 또는 잠재적 위협
- 습지의 생태적 특성에 대한 위협들이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
- 위협의 발생 가능성 및 발생 가능 시기

해당 습지에 현존하거나 잠재적 위협이 있다면, 이를 랍사르협약 사무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습지 관리위원회와 관리계획

습지 관리위원회는 습지에 중요한 모든 생태계 서비스의 균형과 조화 그리고 랍사르습지 지정에 적용된 지정 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의사결정과 습지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질 수 있다. 회의 개최 빈도는 습지 관리위원회가 습지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습지 관리위원회의 위원에는 습지에 중요한 영향력을 갖거나 지역 이해 당사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위원회는 습지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 지역주민, 지역기업, 연구자, 정부 관계자, 시민단체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습지 관리위원회는 습지 관리 담당자, 국가 행정 기관, 랍사르협약 국가 연락담당관 간의 효과적·공식적인 의사소통 체계로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습지 관리 담당자가 해당 랍사르습지의 생태적 특성의 변화를 보고하거나, 관리 현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습지 관리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 • 사례 연구 3 : 순천만 랍사르습지 관리위원회

#### 순천만 습지보전위원회

순천시는 조례 제정을 통해 순천만의 효과적인 관리와 보전을 위한 참여적 관리 체계로 ‘순천만 습지보전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순천만 습지보전위원회는 시정부, 시의회, 전문가, 언론, 시민, 지역사회, 지역 NGO를 대표하는 20여 명의 대표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지는 않지만 순천만의 보전과 관리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순천만 습지보전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으며, 시 조례에 의해 명문화되어 있다.

- 순천만의 효율적인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자문
- 순천만에 대한 관리 계획 수립
- 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 지역 민간단체 참여 범위 결정
- 순천만에서의 랍사르협약 이행

- 순천만 보전 관련 제안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
- 순천만 입장료에 관한 의사결정
- 순천만의 보전과 관리에 관한 기타 안건에 대한 의사결정

위원회의 참여로 수립되는 관리 계획은 다음의 세부적인 활동들을 포함한다.

- 순천만 보전 마스터플랜 개발
- 순천만 생태계 관련 연구
- 순천만 유입 하천 수질, 수량, 오염원 연구
- 순천만을 중심으로 습지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변화 조사
- 순천만의 생산성 관련 연구
- 지역 민간 단체, 지역사회의 참여적 보전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예, 모니터링, 정화 활동 등)
- 생태 가이드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방문자 교육 프로그램
- 정보 공유를 위한 모니터링 보고서 발간
- 순천만의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 정보 공유를 위한 국내외 기관들과의 협력사업
- 순천만 보전을 위한 기타 필요 사업 또는 활동

관리 계획은 습지 관리 및 운영의 모든 측면을 안내하는 필수 문서다. 관리 계획의 수립은 습지를 올바른 방향으로 잘 관리하며, 우리에게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습지의 필수적인 생태적·수문학적 기능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관리 계획은 일반적으로 표준화된 구성에 따라 작성되며, 논리적인 단계별 과정에 따라 워크숍 및 회의를 통한 관리위원회와 지역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로 작성된다.

관리 계획은 기본적으로 현재 습지의 상태를 담고 있어야 하고,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와 세부 목표를 설정해야 하고, 설정된 목표와 세부 목표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를 달성할 것인지를 규정하는 실천 계획을 기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관리 활동에 대한 시간 계획과 활동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프로그램 그리고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구체적 예산 출처를 포함하고 있어야 이상적이라 할 수 있다.

관리 계획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습지의 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다.

- 관리 활동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 인적·물적 자원 활용 효율화
- 관리 활동별 책임감
- 소통 향상 (예: 관리 계획은 일반 대중에게 해당 습지에 관한 정책을 더욱 잘 설명하고,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에게 습지를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됨)

- 주요 관리 직원의 보직 이동이 있을 경우에도 습지 관리의 방향성 및 연속성 유지 가능

관리 계획은 다음의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 습지가 제공하는 모든 기능과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 예방적 접근 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 습지 관리를 넓은 범위의 환경 관리 계획(강 유역 관리 및 연안 관리 등 포함)에 통합하여야 한다.
- 서로 다른 서식처, 경관, 활용을 고려하여 구획을 나누어야 하며, 각 구역의 관리는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사례 연구 4).
- 상황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관리 계획이 되어야 한다(예, 적응형 관리 계획).
- 최소 5년의 적용 기간을 갱신 주기로 설정하고, 최소 10년의 장기 비전을 담아야 한다.
- 관리 계획의 갱신주기와 일치하는 명확한 검토 및 갱신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단계 M4.1).

전체 관리 계획 수립이 자원 부족의 이유로 어렵다면, 간략한 관리 계획을 작성하여 임시 문서로 활용할 수 있다.

#### • 사례 연구 4: 마이포 람사르습지 관리구획 설정

마이포 습지는 중국, 홍콩특별자치구에 위치한, 면적 1,500헥타르의 람사르습지다. 1995년 람사르습지 지정 이후, 홍콩정부는 관리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는 2011년에 개정되었다. 관리 계획은 람사르습지의 보전을 위한 넓은 체계를 제공하고, 습지를 여러 관리구역으로 나누었다. 각각의 관리구역은 개별 관리 목표와 지침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 핵심지역 Core Zone

- 자연적 상호 작용 및 과정들을 유지하는 지역
- 핵심적 관리, 모니터링, 연구 목적에 한하여 접근을 허용

##### 현명한 이용 지역 Wise-use Zone

-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양어장의 유지와 운영을 독려
- 람사르습지 핵심지역의 외부 지역으로 완충지역으로서의 역할을 함

##### 생물다양성 관리지역 Biodiversity Management Zone

- 물새들의 쉼터를 제공
- 생물다양성 보전 및 교육 활동에 활용

##### 민간 지역 Private Zone

- 개인 사유지 인정
- 관리지역에 인접한 개인 사유지를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기 위해 토지 소유 주들과 협력

마이포 람사르습지 주변은 습지보전지역이 둘러싸고 있다. 습지보전지역은 마이포 람사르습지의 육상부에 있는 운영 중이거나 버려진 양식장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마이포습지 생태계의 일부분인 양식장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습지보전지역의 육상부 방향으로 500미터를 습지완충지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행위가 양식장의 생태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였다.

생물다양성관리지역은 WWF(세계자연기금) 홍콩사무소가 관리하고 있으며, 마이포 람사르습지 관리 계획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관리지역은 다시 7개의 소규모 관리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고, 각 소규모 관리지역은 특정 생물다양성 또는 서식처에 관한 일정 목표를 두고 관리된다. 더욱이 생물다양성관리지역에서의 탐조객, 학생, 일반 관광객들을 관리하기 위해 이들이 습지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구획을 나누어 방문객의 이동 및 활동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출처: WWF(세계자연기금) - Hong Kong]

재정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시기에 습지의 가치를 유지하거나 높이하고자 할 때에는 엄격한 사업 계획의 수립이 필수적이다.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 각 활동에 필요한 비용과 필요한 예산이 명시된 관리 계획 상의 사업
- 시장 조사에 의한 사업 타당성 연구
- 단일 예산 지원처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막기 위한 예산 지원처 다변화
-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 후 사업 진행
- 장기적 운영 예산의 확보
- 자원봉사 활용을 통한 비용 절감
- 예산 통제를 위한 일상적 재무 관리
- 마케팅 활동 및 기회 파악

의사소통, 역량 강화, 교육, 참여 및 인식(CEPA) 프로그램은 사람들이 습지보전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이다. 일부 람사르습지에는 별도로 분리된 CEPA 활동을 운영하는 것이 유용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CEPA 활동을 관리 계획 상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들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리 계획 전반에 작용하는 중요 요소로 CEPA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더욱 넓은 범주에서 습지 이용자, 이해 당사자 그리고 습지에 영향력을 미치는 개인/기관 모두를 활동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 람사르습지 관리 및 모니터링

람사르습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활동들은 그 종류와 규모가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습지의 관리는 습지가 제공하는 혜택과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에 주력해야 한다. 습지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서는 습지 관리 계획이고, 관리계획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활동들이 포함된다.

- 훼손된 습지 기능 복원, 습지 생태계를 위한 기존 서식지 관리, 관리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 외래 침입종 관리
- 자연자원의 관리
- 이해 당사자 및 관련 활동 관리(사례 연구 5)
- 습지 기반시설(예, 습지교육센터, 야외 관람 시설)의 설치

### • 사례연구 5 : 순천만 람사르습지의 지역사회와 협력적 관리

순천시는 순천만 인근에서 순천만습지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지역민들의 참여를 이끄는 중요한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순천시는 시민들의 지원과 협력이 장기적인 순천만 보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인지하고, 지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역량을 높이는 프로그램들을 도입하였다.

2008년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순천시, 지역사회, 철새가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는 협력적 관리체계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였다. 순천만 인근의 농경지를 철새들의 쉼터와 먹이터로 이용할 수 있는 ‘흑두루미 영농단지’로 지정하였다. 순천시와 지역민들은 ‘흑두루미 영농단지’ 주변 282개의 전신주를 철새들의 안전을 위하여 모두 제거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계절의 흐름에 따라 진행된다. 봄철에 모를 심고, 가을철에 추수를 하여 주요 생산물인 쌀의 일부를 겨울철에 철새들의 먹이로 제공한다. 순천시는 지정된 지역에서 유기농법을 시행하도록 농민들과 계약하여 순천만 주변을 친환경지역으로 유지한다. 이는 재배된 쌀의 판매에 대한 순천시와 농민들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유지되는데, 순천시는 지정된 지역에서 유기농으로 재배된 쌀을 일반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전량 구매하고 있다. 모든 수확물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전량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은 지역 농민들이 유기농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구매한 쌀의 일부는 겨울철 순천만을 찾는 철새들의 먹이로 제공되고 나머지는 관광객들에게 판매된다. 또한 가을철 추수 후 농민들은 일부 논에 물을 채워 무논환경을 조성하여 철새들이 쉬고, 먹이 활동에 좋은 여건을 제공하는데, 이는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이라는 사업으로 농민들에게 노동력과 논 사용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있다.

겨울철 농한기에 순천시는 지역민들을 고용하여 철새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이 농민들이 지속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하루 최대 6명의 지역민을 고용하여 “철새 지킴이”라는 이름으로 차량이나 관광객들을 통제하여 순천만을 찾는 철새들의 휴식 활동과 먹이 활동을 보장하고 있으며, 순천만 주변 도로에 농민들이 수확한 갈대를 이용하

여 만든 갈대 펜스를 설치하여 차량 통행이나 불빛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

지역 농민들의 연합체인 흑두루미영농단은 교육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폐교위기의 인근 초등학교가 순천만이라는 습지 자원과 인근 친환경 농경지를 통해 인기 있는 친환경 생태학교로 거듭나게 되었다.

순천시민들은 순천만 흑두루미 모니터링에도 참여하고 있다. 2006년 순천만이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이후로 219개체가 관찰되었던 흑두루미는 2015년 1,432개체로 크게 증가하였다. 흑두루미 수의 증가는 관광객의 증가로 이어졌고, 순천시의 재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16년 한해 550만 명의 관광객이 순천만과 순천만국가정원을 방문하였고, 그 입장 수입으로 100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창출하였다. 순천시는 흑두루미 농업지역을 59헥타르에서 110헥타르로 확장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 상태이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추수시기를 10월 초에서 10월 말로 조정할 계획이다.

관리 활동의 효과성을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향후 관리 활동의 평가와 검토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또한 람사르습지정보양식이 담고 있는 습지의 기준 상태의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통상적으로 반복적인 조사를 통해 생물종과 이들의 서식지 또는 물리적, 환경적 변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또한 습지의 특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생태계 요소, 과정, 혜택과 서비스를 모니터링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향후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만약 자연적 조건 등의 이유로 하나의 모니터링 대상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예상된다면, 수용할 수 있는 변화의 범위를 설정할 수도 있다.

관리 활동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때에는 람사르협약 결의문 XII. 15로 채택된 람사르습지 관리 효과성 평가 도구 Ramsar Site Management Effectiveness Tracking Tool, R-METT를 활용할 수 있다.

이 도구는 비교적 빠르고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평가 도구다.

## 람사르습지 관리 평가

모니터링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활동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관리위원회 또는 검토를 위한 워킹그룹에 제출한다. 모니터링 데이터의 평가는 연례적으로 매년 수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평가는 관리 활동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를 행정당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관리 계획과 같은 공식적인 계획은 정기적인 검토(연례 또는 더욱 높은 빈도)가 수반되어 그 성과를 평가해야 한

다. 그러나 관리 계획에 대한 더욱 상세한 검토는 대개 계획의 마지막 해에 관리위원회에 의해 수행된다.

관리 계획을 종료하는 시점에는 계획 이행의 전 과정을 되돌아보고 계획 기간에 나타난 성과, 문제점,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분석하여 새로운 관리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를 연구해야 한다. 좋은 성과를 얻은 관리 활동들은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기대보다 낮은 성과를 얻었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초래한 활동들은 보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관리 계획 전체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 요소다.

## 람사르협약: 습지에 관한 협약

자연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하여 맺어진 최초의 근대적 정부 간 조약으로, 1971년 2월 2일 카스피해 남부 연안에 있는 이란의 람사르라는 도시에서 채택되었다.

협약의 공식적인 명칭은 ‘특히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이나 습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Wetlands 또는 람사르협약Ramsar Convention으로 더욱 많이 알려져 있다.

람사르협약은 채택 이후 1975년에 정식으로 발효되었고, 2019년 현재 170개국 이 당사국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람사르협약의 사명 즉, 협약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여로서, 지역 및 국가의 활동과 국제적 협력을 통한 모든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이다.

이러한 협약의 사명을 수행하는 중심에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 목록List of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또는 람사르습지 목록Ramsar List’이 있다. 이는 당사국들이 람사르협약이 제시하는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들을 람사르습지로 등록하여 보전하고 현명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람사르습지 목록은 세계에서 가장 큰 보호지역 네트워크로 현재 2,341개의 습지가 등록되어 있고, 그 면적은 2억5천만 헥타르에 달한다.

유네스코가 본 협약에 대한 수탁자 역할을 하고 있지만 람사르협약은 유엔이나 유네스코의 환경협약 및 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람사르협약은 당사국총회에 모든 권한과 책임이 있으며, 일상적인 운영은 당사국총회에 의해 선출된 상임위원회의 승인하에 사무국에 위임되어 있다. 람사르협약 사무국은 현재 스위스 글랑에 있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유치되어 있다.

람사르협약 가입국들은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크게 다음의 네 가지 의무를 지닌다.

- 습지 목록(협약 조항 2항)

람사르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첫 번째 갖는 의무는 최소한 하나 이상의 습지를 람사르습지로 지정하여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 목록(람사르습지 목록)에 등록하고, 지속적으로 영토 내의 중요한 습지들을 람사르습지로 지정해 나가는 것이다.

또한 당사국들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영토 내 람사르습지의 생태적 특성이 변화하거나,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사무국으로 보고해야 한다.'

- 현명한 이용(협약 조항 3항)

람사르협약 당사국들은 국가적 토지 이용 계획에 습지 보전에 관한 사항들을 포함하여야 하며, '국가 영토 내 습지의 현명한 이용'(조항 3.1)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이와 관련하여 람사르협약은 '현명한 이용'에 관한 지침과 국가습지정책의 개발 및 개별 습지 지역에 대한 관리 계획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 보호구역 및 인력 양성(협약 조항 4)

협약 당사국들은 람사르습지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습지에 대한 자연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조사, 관리, 감독을 실시하고, 관련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국제협력(협약 조항 5)

당사국들은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당사국들과 소통해야 하고, 특히 접경지 습지, 공유수면 및 공유하는 생물종에 관하여 다른 당사국들과 협의한다.

### <의무규정 준수>

람사르협약은 조약 이행 위반이나 조약 불이행에 대한 강제적 규제를 수반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조항들은 정식 조약으로 체결되었다는 점에서 국제법으로서의 구속력은 갖는다. 따라서 람사르협약의 의무 이행이 국가 법률적 체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 <의무규정에 대한 추가적 해석>

람사르협약은 조약의 전문에 포함된 네 가지 주요 의무규정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거듭하여, 당사국들이 규정된 의무 사항을 이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기본 체계를 개발하였다. 이는 결의문 5.1(람사르협약의 이행을 위한 기본 체계, 1993)로 채택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습지의 보전

-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 목록에 습지 등록(람사르습지 지정)
- 람사르습지 보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이행
- 람사르습지 지역의 부정적 생태적 특성 변화(변화 가능성 포함) 즉시 사무국 보고
  - ※ 부정적 생태적 특성 변화(변화 가능성 포함)에 대한 제3자의 보고가 사무국으로 전달되는 경우, 당사국은 이에 대한 사무국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함
- 람사르습지 훼손 및 소실 시 습지 자원 소실 보상
- 람사르습지 선정에 대한 람사르협약 기준 적용
- 람사르습지의 설명에 람사르습지 정보 양식 및 협약의 습지 분류 체계를 사용
- 람사르습지에 대한 적절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필요 시 몽트뢰 목록 및 람사르 자문단(Ramsar Advisory Mission) 메커니즘을 활용
- “습지의 현명한 이용”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이행
- 국가습지정책 수립 및 이행에 ‘현명한 이용에 관한 추가 지침(Additional Guidance on Wise Use)’ 및 ‘현명한 이용 개념 실천을 위한 지침(Guidelines for Implementation of the Wise Use Concept)’을 채택하고 적용
- 습지의 용도 변경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 습지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적절한 감독 실시
- 습지 관리를 통한 물새 개체 수 증가
- 국가습지목록 작성
- 습지 조사, 관리 및 감독 등에 역량을 갖춘 인력 양성

### 2) 습지 보전에서 국제 협력 증진

- 장기적인 국가 정책 및 국제 협력을 통해 습지 보전 촉진
- 접경지 습지 및 공유수면, 생물종 관련 협약 의무사항 이행 시 다른 당사국들과 협의
- 개발 원조 기관과 함께 습지 보전 관련 사항들을 촉진
- 습지 복원 프로젝트

### 3) 습지 보전에 대한 의사소통 능력 함양

- 조사 및 자료 교환 장려
- 국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당사국총회)
  - ※ 당사국은 3년마다 국가보고서를 당사국총회에 제출하여 협약 이행에 대한 성과를 보고해야 하며, 이는 채택된 협약의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고, 협약의 공식적인 기록에 포함됨

· 협약 당사국의 수 증가

#### 4) 협약 활동 지원

- 당사국총회의 개최 및 참석
- 파리 의정서(Paris Protocol) 및 레지나 개정안(Regina Amendments) 채택
- 협약 예산 및 람사르 소액 지원 기금에 재정적으로 기여

람사르협약 당사국으로서 보고의 의무를 지닌다. 협약 당사국은 채택된 양식에 따라 람사르협약 및 협약의 전략 계획 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3년마다 개최되는 당사국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협약의 조항 3.2에 근거하여, 당사국들은 등록된 람사르습지의 생태적 특성의 변화 또는 예측되는 변화 위협을 사무국에 보고하여야 하고, 제3자가 이에 관한 보고를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무국의 질의에 응답하여야 한다.

2019년 7월 현재 170개 당사국이 가입되어 있고, 2,342개의 람사르습지가 등록되어 있다.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전체 면적은 252,490,059헥타르에 달한다.

지역별로 아프리카 396곳, 아시아 340곳, 유럽 1102곳, 라틴아메리카 204곳, 북아메리카 218곳, 오세아니아 82곳이 등록되어 있다.

## <부록>

### 신청서(온라인) 구성 및 작성법

람사르습지를 등록하기 위한 신청서는 람사르습지정보양식(Ramsar Site Information Sheet, RIS)이라 부르며, 구성 및 작성법은 다음과 같다.

람사르습지정보양식(RIS)은 [표지], [요약], [정보 및 위치], [중요성], [특성], [관리], [추가 정보] 등의 7개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고, 해당 섹션마다 제시되는 관련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서술하는 형태로 작성하게 된다.

람사르습지정보양식(RIS)은 유사한 환경을 지닌 람사르습지들의 람사르습지정보양식(RIS)를 참고하면 더욱 쉽게 작성할 수 있다. 등록된 모든 람사르습지의 람사르습지정보양식(RIS)에 관한 정보는 람사르협약 홈페이지의 SITES & COUNTRY 섹션(<https://www.ramsar.org/sites-countries>) 또는 람사르습지정보서비스(Ramsar Site Information Service, RSIS, <https://rsis.ramsar.org/>)에 공개되어 있으므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 표지 ]

- 국가명 / 습지명 기입



### Country

Site name

#### [ 요약 ]

- 대상 습지의 주요 특성 및 국제적 중요성 요약 기술(글자 수는 2500자 이내로 제한)

### Summary

---

#### 1.1 Summary description

*Please provide a short descriptive text summarising the key characteristics and internationally important aspects of the site. You may prefer to complete the four following sections before returning to draft this summary.*

Summary (This field is limited to 2500 characters)

## [ 정보 및 위치 ]

### 공식 정보

#### 1. 작성자의 인적 사항

작성자의 이름, 소속, 주소, 이메일, 연락처, 팩스 번호 등의 인적 사항 기재

#### 2.1 Formal data

##### 2.1.1 Name and address of the compiler of this RIS

###### Compiler 1

Name

Institution/agency

Postal address (This field is limited to 254 characters)

E-mail (The online RIS only accepts valid e-mail addresses, e.g. example@mail.com )

Phone (The online RIS only accepts valid phone numbers, e.g. +1 41 123 45 67 )

Fax (The online RIS only accepts valid phone numbers, e.g. +1 41 123 45 67 )

#### 2. 정보 수집 기간

양식 작성에 사용된 정보의 수집 기간 명시

##### 2.1.2 Period of collection of data and information used to compile the RIS

From year (The online RIS only accepts numeric values)

To year (The online RIS only accepts numeric values)

#### 3. 람사르습지 명칭

지정하고자 하는 습지의 명칭을 람사르협약의 공식 언어인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 하나로 기재하고, 공식 명칭 이외에 사용되는 명칭이 있다면 선택 사항으로 기재

##### 2.1.3 Name of the Ramsar Site

Official name (in English, French or Spanish)\* (This field is mandatory)

Unofficial name (optional)

## 습지 위치

### 1. 습지 경계의 설정

습지의 경계는 반드시 a) GIS 형태의 파일 및 b) 디지털 지도/이미지로 명확히 정의되어야 하며, 경계 설정에 관한 상세 설명은 2,500자 이내로 기술되어야 함

#### 2.2.1 Defining the Site boundaries

*The site boundaries must be clearly delineated on both: a) a GIS shapefile and b) a digital map/image:*

*-> To define the site boundaries please complete field 2.2.1 a1), 2.2.1 a2) and 2.2.1 b) via the online form.*

**-UPLOAD via online form-**

Boundaries description (This field is limited to 2500 characters)

### 2. 일반적 위치

a) 해당 습지의 행정적 위치 및 b) 인근의 주요 거주지 기술

#### 2.2.2 General location

a) In which large administrative region does the site lie?

b) What is the nearest town or population centre?

### 3. 국경지역에 있는 습지 정보

본 섹션은 국경지역에 있는 습지의 경우에만 기술하며, a) 습지가 국경지역에 걸쳐 위치하는지 여부, b) 타 국가의 람사르습지와 인접하는지 여부, c) 타 국가와 합의된 공식적인 접경지 습지인지 여부를 기재하고, 타 국가와 합의된 공식적인 접경지 습지인 경우 d) 습지의 명칭을 기재

#### 2.2.3 For wetlands on national boundaries only

a) Does the wetland extend onto the territory of one or more other countries?

Yes /  No

b) Is the site adjacent to another designated Ramsar Site on the territory of another Contracting Party?

Yes /  No

c) Is the site part of a formal transboundary designation with another Contracting Party?

Yes /  No

d) Transboundary Ramsar Site name:

### 4. 습지 면적

지정 습지의 면적을 헥타르(ha)로 기재하고, 실측된 면적이 없다면, GIS로 계산된 면적 또한 사용할 수 있음

### 2.2.4 Area of the Site

If you have not established an official area by other means, you can copy the area calculated from the GIS boundaries into the 'official area' box.

Official area, in hectares (ha): *(The online RIS only accepts numeric values)*

Area, in hectares (ha) as calculated from GIS boundaries

### 5. 생물지리학

해당 습지가 있는 생물지리학적 지역을 기술하고, 생물지리학적 지역 구분을 위해 적용된 생물지리학 지역 구분 체계<sup>1</sup>를 기술

각주1)로 제시된 구분 체계 이외의 체계를 적용한 경우 다음의 공란에 적용된 체계명을 기술

#### 2.2.5 Biogeography

Please provide the biogeographic region(s) encompassing the site and the biogeographic regionalization scheme applied:

Biogeographic regions

Regionalisation scheme(s) <sup>1</sup>	Biogeographic region

Other biogeographic regionalisation scheme *(This field is limited to 2500 characters)*

#### [ 중요성 ]

##### 1. 랍사르습지 지정 기준 및 기준 충족에 대한 근거

랍사르협약이 제시하는 9개 랍사르습지 지정 기준 중 해당되는 기준을 선택하고,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근거를 공란에 기술

기준 1: 해당 생물지리학 지역 내에서 자연 또는 유사 자연습지 유형 중 대표적/희귀한/유일의 유형을 갖는 습지

- 습지 유형을 선택하고,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이유를 아래 3개의 박스 중 하나 이상에 상세히 기술

**[ ] Criterion 1: Representative, rare or unique natural or near-natural wetland types**

To justify this Criterion, please select at least one wetland type as representative, rare or unique in the section What is the site like? > Wetland types and provide further details in at least one of the three boxes below.

Hydrological services provided (This field is limited to 3000 characters)

Other ecosystem services provided (This field is limited to 3000 characters)

Other reasons (This field is limited to 3000 characters)

기준 2: 감소종, 멸종위기종, 최대멸종위기종 또는 위험생태군집을 보유한 습지

- 해당 식물종, 동물종, 생태서식군에 관한 상세 설명을 기술

**[ ] Criterion 2 : Rare species and threatened ecological communities**

To justify this Criterion, please give details below on:

- relevant plant species in the section Criteria & justification> Plant species (3.2)
- relevant animal species in the section Criteria & justification> Animal species (3.3)
- relevant ecological communities in the section Criteria & justification> Ecological communities (3.4)

Optional text box to provide further information (This field is limited to 3000 characters)

기준 3: 해당 생물지리학 지역의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식물군락 또는 동물종을 보유한 습지

- 생물종 이름 및 상세 설명을 기술

**[ ] Criterion 3 : Biological diversity**

To justify this Criterion, please give details in the box below. If you want to name any specific species, please give details on:

- relevant plant species in the section Criteria & justification> Plant species (3.2)
- relevant animal species in the section Criteria & justification> Animal species (3.3)

Justification (This field is limited to 3000 characters)

기준 4: 생활사의 중요한 단계에 있거나 악조건 속에 있는 동식물의 서식처가 되는 습지

- 관련 동식물종을 기술하고, 생활사 단계 또는 악조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기술

**[ ] Criterion 4 : Support during critical life cycle stage or in adverse conditions**

To justify this Criterion, please give details below on:

- relevant plant species in the section Criteria & justification> Plant species (3.2)
  - relevant animal species in the section Criteria & justification> Animal species (3.3)
- and explain the life cycle stage or nature of adverse conditions in the accompanying 'justification' box.

Optional text box to provide further information (This field is limited to 3000 characters)

기준 5: 20,000개체 이상의 물새가 정기적으로 서식하는 습지

- 조사된 총 물새 개체 수, 조사 기간, 자료 출처 명시

**[ ] Criterion 5 : >20,000 waterbirds**

To justify this Criterion, please give details below on:- the total number of waterbirds and the period of data collection - relevant waterbird species, and if possible their population size, in the section Criteria & justification> Animal species (3.3)

Overall waterbird numbers\* (This field is mandatory)

Start year\* (This field is mandatory)

End year\* (This field is mandatory)

Source of data:

Optional text box to provide further information (This field is limited to 3000 characters)

기준 6: 특정 물새 종 혹은 아종의 전 세계 개체 수 1% 이상이 정기적으로 서식하는 습지

- 해당 물새종 및 개체군 크기에 대한 상세 설명

**[ ] Criterion 6 : >1% waterbird population**

To justify this Criterion, please give details on relevant waterbird species and their population size in the section Criteria & justification> Animal species (3.3)

Optional text box to provide further information (This field is limited to 3000 characters)

기준 7: 고유 어종 또는 해당과에 속하는 어류가 상당 부분 서식하거나, 습지의 가치를 잘 대변해 주는 어류 군집이 서식하는 습지

- 해당 어류종에 대한 상세 설명

**[ ] Criterion 7 : Significant and representative fish**

To justify this Criterion, please give information in the box below and details of relevant fish species in the section Criteria & justification> Animal species (3.3)

Justification (This field is limited to 3000 characters)

기준 8: 해당 습지가 어류의 먹이원, 산란장, 어린 물고기가 성장하는 곳 및 회유하는 어류군이 이동하는 통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습지

- 관련 어류에 관한 상세 설명 기술

**[ ] Criterion 8 : Fish spawning grounds, etc.**

To justify this Criterion, please give information in the box below. Completion of details on relevant fish species in the section Criteria & justification> Animal species (3.3) is optional.

Justification (This field is limited to 3000 characters)

기준 9: 조류를 제외한 습지에 의존하는 하나의 생물종 또는 아종의 전 세계 개체군 1% 이상이 정기적으로 서식하는 습지

- 관련 생물종 및 개체군 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 기술

**[ ] Criterion 9 : >1% non-avian animal population**

To justify this Criterion, please give details on relevant non-avian species and their population size in the section Criteria & justification> Animal species (3.3)

Optional text box to provide further information (This field is limited to 3000 characters)

2. 존재 여부가 습지의 국제적 중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식물종

- 관련 식물종의 학명 및 일반명 기술

- 해당 기준에 체크, 관련 설명 기술

- IUCN Red List의 경우 LC 관심 필요종 / NT 위기 근접종 / VU 취약종 / EN 멸종위기종 / CR 심각한 위기종 / EW 자생지 절멸종 / EX 절멸종으로 구분하여 표시

-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아래 박스에 기술

**3.2 Plant species whose presence relates to the international importance of the site**

Scientific name*	Common name	Criterion 2	Criterion 3	Criterion 4	IUCN Red List <sup>2</sup>	CITES Appendix 1	Other status	Justification
		[ ]	[ ]	[ ]		[ ]		

Optional text box to provide further information on plant specie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This field is limited to 3000 characters)

3. 존재 여부가 습지의 국제적 중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동물종

- 관련 동물종이 해당하는 문(phylum), 학명, 일반명 기술,

- 해당 기준에 체크 및 관련 설명 기술

- 주석 3에 해당하는 내용은 지정 기준 6, 9에 해당하는 습지만 기술

- IUCN Red List의 경우 LC 관심 필요종 / NT 위기 근접종 / VU 취약종 / EN 멸종위기종 / CR 심각한 위기종 / EW 자생지 절멸종 / EX 절멸종으로 구분하여 표시

- 추가적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아래 박스에 기술

**3.3 Animal species whose presence relates to the international importance of the site**

Phylum	Scientific name*	Common name	Species qualifies under criterion				Species contributes under criterion				Pop. Size <sup>3</sup>	Period of pop. Est. <sup>3</sup>	% occurrence <sup>3</sup>	IUCN Red List <sup>4</sup>	CITES Appendix I	CMS Appendix I	Other Status	Justification
			2	4	6	9	3	5	7	8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Optional text box to provide further information on animal specie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This field is limited to 3000 characters)

**4. 존재 여부가 습지의 국제적 중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군집**

- 관련 생태군집 명칭, 특성 기술
- 지정 기준 2에 해당 여부 체크
- 추가적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아래 박스에 기술

**3.4 Ecological communities whose presence relates to the international importance of the site**

Name of ecological community	Community qualifies under Criterion 2?	Description	Justification
	<input type="checkbox"/>		

Optional text box to provide further information (This field is limited to 3000 characters)

**[ 특성 ]**

**1. 생태적 특성**

- 습지의 생태적 특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생태적 요소, 과정, 생태계 서비스를 요약 기술
- 자연적인 생태적 특성 변화, 과거 또는 현재의 알려진 변화에 대해 요약 기술

**4.1 Ecological character**

Please summarize the ecological components, processes and services which are critical to determining the ecological character of the site. Please also summarize any natural variability in the ecological character of the site, and any known past or current change

(This field is limited to 4000 characters)

## 2. 습지의 유형

- 습지의 모든 유형을 기술
-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유형부터 적은 면적의 유형까지 1에서 4로 순위를 지정하고 가능하다면 면적을 헥타르로 기술
- 습지의 유형이 지정 기준 1의 충족에 이용되었다면 마지막 열에 기술
- 람사르습지 분류 체계와 다른 체계를 적용하였다면 두 번째 열에 습지 유형의 이름 기술

### 4.2 What wetland type(s) are in the site?

Please list all wetland types which occur on the site, and for each of them: - rank the four most abundant types by area from 1 (greatest extent) to 4 (least extent) in the third column, - if the information exists, provide the area (in ha) in the fourth column - if this wetland type is used for justifying the application of Criterion 1, indicate if it is representative, rare or unique in the last column - you can give the local name of the wetland type if different from the Ramsar classification system in the second column

#### Marine or coastal wetlands

Wetland types (code and name) <sup>5</sup>	Local name	Ranking of extent (1: greatest - 4: least)	Area (ha) of wetland type	Justification of Criterion 1 <sup>6</sup>

#### Inland wetlands

Wetland types (code and name) <sup>7</sup>	Local name	Ranking of extent (1: greatest - 4: least)	Area (ha) of wetland type	Justification of Criterion 1 <sup>6</sup>

#### Human-made wetlands

Wetland types (code and name) <sup>8</sup>	Local name	Ranking of extent (1: greatest - 4: least)	Area (ha) of wetland type	Justification of Criterion 1 <sup>6</sup>

What non-wetland habitats are within the site?

#### Other non-wetland habitat

Other non-wetland habitats within the site	Area (ha) if known

### 3. 생물학적 요소

(식물종)

- 주목할 만한 식물종 기술
- 외래 침입 식물종

#### 4.3 Biological components

##### 4.3.1 Plant species

Other noteworthy plant species

Scientific name	Common name (optional)	Position in range / endemism / other (optional)

Invasive alien plant species

Scientific name	Common name	Impacts <sup>9</sup>

Optional text box to provide further information (This field is limited to 2500 characters)

(동물종)

- 주목할 만한 동물종 기술
- 외래 침입 동물종

##### 4.3.2 Animal species

Other noteworthy animal species

Phylum	Scientific name	Common name	Pop. size (optional)	Period of pop. est. (optional)	% occurrence (optional)	Position in range /endemism/other (optional)

Invasive alien animal species

Phylum	Scientific name	Common name	Impacts <sup>9</sup>

Optional text box to provide further information (This field is limited to 2500 characters)

#### 4. 물리적 요소

(기후) Köppen-Gieger 기후 분류 체계를 이용한 기후지역 분류

기후지역(Climatic region) 분류: 주석의 분류 체계에서 선택

소기후지역(Climatic Subregion) 분류: 주석의 분류 체계에서 선택

기후 조건의 변화가 해당 습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관련 내용을 아래 박스에 기술

### 4.4 Physical components

#### 4.4.1 Climate

Please indicate the prevailing climate type(s) by selecting below the climatic region(s) and subregion(s), using the Köppen-Gieger Climate Classification System.

Climatic region <sup>10</sup>	Subregion <sup>11</sup>

If changing climatic conditions are affecting the site, please indicate the nature of these changes:

(This field is limited to 1000 characters)

(지형학적 정보)

최저 해발고도 / 최고 해발고도(미터)

지형/강 유역 상의 위치 체크

#### 4.4.2 Geomorphic setting

a) Minimum elevation above sea level (in metres) (The online RIS only accepts numeric values)

a) Maximum elevation above sea level (in metres) (The online RIS only accepts numeric values)

b) Position in landscape/river basin:

- Entire river basin
- Upper part of river basin
- Middle part of river basin
- Lower part of river basin
- More than one river basin
- Not in river basin
- Coastal

Please name the river basin or basins. If the site lies in a sub-basin, please also name the larger river basin. For a coastal/marine site, please name the sea or ocean. (This field is limited to 1000 characters)

(토양 관련 정보)

주요 구성 성분에 대한 정보 체크

수문학적 변화로 인한 토양 유형의 변화 여부(예, 염분 농도 또는 산성도)

#### 4.4.3 Soil

- Mineral
- Organic
- No available information

Are soil types subject to change as a result of changing hydrological conditions (e.g., increased salinity or acidification)?

Yes /  No

Please provide further information on the soil (optional) *(This field is limited to 1000 characters)*

(water regime 관련 정보)

- 수량의 영속성(영구적 / 계절적 또는 단기간)
- 수원(강우 / 지표수 / 지하수 / 해수)
- 최종 도달 지점(지하수 충전 / 하류 집수역 / 해양)
- 수량 안정성(안정적 / 변동적)

Water regime에 관한 추가 정보는 박스에 기술

#### 4.4.4 Water regime

Water permanence

Presence? <sup>12</sup>

Source of water that maintains character of the site

Presence? <sup>13</sup>	Predominant water source
	<input type="checkbox"/>

Water destination

Presence? <sup>14</sup>

Stability of water regime

Presence? <sup>15</sup>

(퇴적)

심각한 침식 / 퇴적 / 퇴적물의 이동 / 퇴적층의 변화 등 체크

#### 4.4.5 Sediment regime

- Significant erosion of sediments occurs on the site
- Significant accretion or deposition of sediments occurs on the site
- Significant transportation of sediments occurs on or through the site
- Sediment regime is highly variable, either seasonally or inter-annually
- Sediment regime unknown

Please provide further information on sediment (optional): *(This field is limited to 1000 characters)*

(산성도)

해당 산성도에 체크

추가적 정보가 있다면 아래 박스에 기술

#### 4.4.6 Water pH

- Acid (pH<5.5)
- Circumneutral (pH: 5.5-7.4 )
- Alkaline (pH>7.4)
- Unknown

Please provide further information on pH (optional): *(This field is limited to 1000 characters)*

(염도)

해당 염도에 체크

추가 정보는 아래 박스에 기술

#### 4.4.7 Water salinity

- Fresh (<0.5 g/l)
- Mixohaline (brackish)/Mixosaline (0.5-30 g/l)
- Euhaline/Eusaline (30-40 g/l)
- Hyperhaline/Hypersaline (>40 g/l)
- Unknown

Please provide further information on salinity (optional): *(This field is limited to 1000 characters)*

수중 용존/부유 영양물

해당 영양물질에 체크(부영양 / 중영양 / 빈영양 / 이영양)

추가 정보는 아래 박스에 기술

#### 4.4.8 Dissolved or suspended nutrients in water

- Eutrophic
- Mesotrophic
- Oligotrophic
- Dystrophic
- Unknown

Please provide further information on dissolved or suspended nutrients (optional): *(This field is limited to 1000 characters)*

(람사르습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변 환경 특징)

람사르습지와 주변 지역 지형 및 생태적 특성의 차이에 대해 체크(유사 / 큰 차이)

큰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아래에 체크한 후 박스에 기술

#### 4.4.9 Features of the surrounding area which may affect the Site

Please describe whether, and if so how, the landscape and ecological characteristics in the area surrounding the Ramsar Site differ from the site itself:

i) broadly similar /  ii) significantly different

If the surrounding area differs from the Ramsar Site, please indicate how: (Please tick all categories that apply)

Surrounding area has greater urbanisation or development

Surrounding area has higher human population density

Surrounding area has more intensive agricultural use

Surrounding area has significantly different land cover or habitat types

Please describe other ways in which the surrounding area is different: (This field is limited to 2000 characters)

### 5. 생태계 서비스

(생태계 서비스 / 혜택)

해당 습지의 모든 생태계 서비스를 아래 주석 부분을 참조하여 박스에 기술

#### 4.5.1 Ecosystem services/benefits

Please select below all relevant ecosystem services/benefits currently provided by the site and indicate their relative importance in the right-hand column.

##### Provisioning Services

Ecosystem service <sup>16</sup>	Examples <sup>17</sup>	Importance/Extent/Significance <sup>18</sup>

##### Regulating Services

Ecosystem service <sup>19</sup>	Examples <sup>20</sup>	Importance/Extent/Significance <sup>18</sup>

##### Cultural Services

Ecosystem service <sup>21</sup>	Examples <sup>22</sup>	Importance/Extent/Significance <sup>18</sup>

##### Supporting Services

Ecosystem service <sup>23</sup>	Examples <sup>24</sup>	Importance/Extent/Significance <sup>18</sup>

주석 부분에서 제시되지 않은 다른 생태계 서비스들은 아래 박스에 기술

Other ecosystem service(s) not included above: (This field is limited to 2000 characters)

생태계 서비스의 직접적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수에 대한 추정치를 기술(습지 내부/습지 외부)

Please make a rough estimate of the approximate number of people who directly benefit from the ecological services provided by this site (estimate at least in orders of magnitude: 10s, 100s, 1000s, 10 000s etc.):

Within the site:

Outside the site:

해당 람사르습지가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연구 여부 체크

연구된 결과가 있다면 아래 박스에 기술

Have studies or assessments been made of the economic valuation of ecosystem services provided by this Ramsar Site?

Yes /  No /  Unknown

Where economic studies or assessments of economic valuation have been undertaken at the site, it would be helpful to provide information on where the results of such studies may be located (e.g. website links, citation of published literature): (This field is limited to 2500 characters)

(사회적 가치, 문화적 가치)

습지의 생태적 특성에 부정적 변화를 유발하지 않는 습지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전통지식 및 방법이 있다면 체크하고 아래박스에 기술

#### 4.5.2 Social and cultural values

Is the site considered internationally important for holding, in addition to relevant ecological values, examples of significant cultural values, whether material or non-material, linked to its origin, conservation and/or ecological functioning? If so, please describe this importance under one or more of the four following categories. You should not list here any values derived from non-sustainable exploitation or which result in detrimental ecological changes.

i) the site provides a model of wetland wise use, demonstrating the applica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and methods of management and use that maintain the ecological character of the wetland

Description if applicable (This field is limited to 2500 characters)

습지의 생태적 특성에 영향을 받은 문명의 기록 또는 문화적 전통이 있다면 체크하고 아래 박스에 기술

ii) the site has exceptional cultural traditions or records of former civilizations that have influenced the ecological character of the wetland

Description if applicable (This field is limited to 2500 characters)

습지의 생태적 특성이 지역사회 또는 지역민과의 상호관계에 의존적이라면 체크하고 아래 박스에 기술

iii) the ecological character of the wetland depends on its interaction with local communities or indigenous peoples

Description if applicable (This field is limited to 2500 characters)

습지의 생태적 특성 유지에 연관된 비물질적 가치(예, 신성한 지역)가 있다면 체크하고 아래 박스에 기술

iv) relevant non-material values such as sacred sites are present and their existence is strongly linked with the maintenance of the ecological character of the wetland

Description if applicable (This field is limited to 2500 characters)

**[관리]**

1. 토지 소유권 및 관리 책임(관리자)

(토지 소유권)

주석 부분을 참조하여 토지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박스에 기술하고, 해당란에 체크

추가적 정보는 아래 박스에 기술

**5.1 Land tenure and responsibilities (Managers)**

**5.1.1 Land tenure/ownership**

*Please specify if this category applies to the Ramsar Site, to the surrounding area or to both, by ticking the relevant option(s).*

Public ownership

Category <sup>25</sup>	Within the Ramsar Site	In the surrounding area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Private ownership

Category <sup>26</sup>	Within the Ramsar Site	In the surrounding area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Other

Category <sup>27</sup>	Within the Ramsar Site	In the surrounding area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Provide further information on the land tenure / ownership regime (optional): *(This field is limited to 1000 characters)*

(관리 주체)

습지 관리를 담당하는 주체에 관한 정보 기술

(기관, 담당자명, 주소, 이메일 등)

### 5.1.2 Management authority

Please list the local office / offices of any agency or organization responsible for managing the site: *(This field is limited to 1000 characters)*

Provide the name and title of the person or people with responsibility for the wetland:

Postal address: *(This field is limited to 1000 characters)*

E-mail address: *(The online RIS only accepts valid e-mail addresses, e.g. example@mail.com )*

## 2. 생태적 특성에 대한 위협과 대응

(생태적 특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 / 잠재적 요인)

다음의 각 분류에 해당하는 위협이 있다면 기술

- 인간 주거지(비농업)

Human settlements (non agricultural)

Factors adversely affecting site <sup>28</sup>	Actual threat <sup>29</sup>	Potential threat <sup>29</sup>	Within the site	In the surrounding area
			[]	[]

- 물 관리

Water regulation

Factors adversely affecting site <sup>30</sup>	Actual threat <sup>29</sup>	Potential threat <sup>29</sup>	Within the site	In the surrounding area
			[]	[]

- 농업 / 양식

Agriculture and aquaculture

Factors adversely affecting site <sup>31</sup>	Actual threat <sup>29</sup>	Potential threat <sup>29</sup>	Within the site	In the surrounding area
			[]	[]

- 에너지 생산 / 광업

Energy production and mining

Factors adversely affecting site <sup>32</sup>	Actual threat <sup>29</sup>	Potential threat <sup>29</sup>	Within the site	In the surrounding area
			[]	[]

- 교통 및 도로

Transportation and service corridors

Factors adversely affecting site <sup>33</sup>	Actual threat <sup>29</sup>	Potential threat <sup>29</sup>	Within the site	In the surrounding area
			[]	[]

- 생물자원 이용

Biological resource use

Factors adversely affecting site <sup>34</sup>	Actual threat <sup>29</sup>	Potential threat <sup>29</sup>	Within the site	In the surrounding area
			[]	[]

- 인간 침입 / 교란

Human intrusions and disturbance

Factors adversely affecting site <sup>35</sup>	Actual threat <sup>29</sup>	Potential threat <sup>29</sup>	Within the site	In the surrounding area
			[]	[]

- 자연적 체계의 변경

Natural system modifications

Factors adversely affecting site <sup>36</sup>	Actual threat <sup>29</sup>	Potential threat <sup>29</sup>	Within the site	In the surrounding area
			[]	[]

- 침입 / 기타 문제 유발 생물종 및 유전자

Invasive and other problematic species and genes

Factors adversely affecting site <sup>37</sup>	Actual threat <sup>29</sup>	Potential threat <sup>29</sup>	Within the site	In the surrounding area
			[]	[]

- 오염

Pollution

Factors adversely affecting site <sup>38</sup>	Actual threat <sup>29</sup>	Potential threat <sup>29</sup>	Within the site	In the surrounding area
			[]	[]

- 지질학적 사건

Geological events

Factors adversely affecting site <sup>39</sup>	Actual threat <sup>29</sup>	Potential threat <sup>29</sup>	Within the site	In the surrounding area
			[]	[]

- 기후변화 및 혹독한 날씨

Climate change and severe weather

Factors adversely affecting site <sup>40</sup>	Actual threat <sup>29</sup>	Potential threat <sup>29</sup>	Within the site	In the surrounding area
			[]	[]

이외 다른 위협에 대한 기술

Please describe any other threats (optional): (This field is limited to 3000 characters)

(법적 보호)

국제적, 지역적, 국내적 보전 지위를 기술하고, 람사르습지 경계와의 관계에 대해 설명

### 5.2.2 Legal conservation status

*Please list any other relevant conservation status, at global, regional or national level and specify the boundary relationships with the Ramsar Site:*

Global legal designations

국제적 법적 지정

유네스코 세계유산 /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 기타 국제적 지정

Global legal designations

Designation type <sup>41</sup>	Name of area	Online information url	Overlap with Ramsar Site <sup>42</sup>

지역적(국제적) 지정

유럽연합 Natura 2000 / 기타 국제적 지정

Regional (international) legal designations

Designation type <sup>43</sup>	Name of area	Online information url	Overlap with Ramsar Site <sup>42</sup>

국가적 법적 지정

National legal designations

Designation type	Name of area	Online information url	Overlap with Ramsar Site <sup>42</sup>

법적 지정 이외

Non-statutory designations

Designation type <sup>44</sup>	Name of area	Online information url	Overlap with Ramsar Site <sup>42</sup>

(IUCN 보호지역 분류, 2008)

해당 분류에 체크

- Ia 엄격한 자연 보존지역
- Ib 야생지역: 야생지 보호를 주 목적으로 관리되는 지역
- II 국립공원: 생태계보호 및 휴양을 위해 보호되는 지역
- III 천연기념물: 특정 자연적 특성의 보전을 위해 관리되는 보호지역
- IV 서식지 / 생물종 관리지역: 간접적 관리를 통한 보전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보호지역
- V 경관보호지역: 육상/해양 경관 보전 및 휴양을 위해 관리되는 보호지역
- VI 관리자원 보호지역: 자연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관리되는 보호지역

### 5.2.3 IUCN protected areas categories (2008)

- Ia Strict Nature Reserve
- Ib Wilderness Area: protected area managed mainly for wilderness protection
- II National Park: protected area managed mainly for ecosystem protection and recreation
- III Natural Monument: protected area managed mainly for conservation of specific natural features
- IV Habitat/Species Management Area: protected area managed mainly for conservation through management intervention
- V Protected Landscape/Seascape: protected area managed mainly for landscape/seascape conservation and recreation
- VI Managed Resource Protected Area: protected area managed mainly for the sustainable use of natural ecosystems

(주요 보전 방안)

주석으로 제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 사항 기술

- 법적 보호

### 5.2.4 Key conservation measures

Legal protection

Measures <sup>45</sup>	Status <sup>46</sup>

- 서식지

Habitat

Measures <sup>47</sup>	Status <sup>46</sup>

- 생물종

Species

Measures <sup>48</sup>	Status <sup>46</sup>

- 인간 활동

Human Activities

Measures <sup>49</sup>	Status <sup>46</sup>

- 기타 관련 사항 기술

Other: (This field is limited to 3000 characters)

(관리 계획 수립)

대상 습지에 특화된 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관리 계획 대상의 범위

관리 계획 이행 점검 및 업데이트 절차 유무

관리 효과성 평가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

웹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관리 계획이 있다면 링크를 제시하고, 없다면 추가자료(Additional material) 섹션에 첨부

**5.2.5 Management planning**

Is there a site-specific management plan for the site?

50

Is the management plan/planning implemented?

Yes /  No

The management plan covers

51

Is the management plan currently subject to review and update?

Yes /  No

Has a management effectiveness assessment been undertaken for the site?

Yes /  No

Please give link to site-specific plan or other relevant management plan if this is available via the Internet or upload it in section 'Additional material': (This field is limited to 500 characters)

해당 습지가 공식적인 접경지 습지라면, 경계를 공유하고 있는 타 당사국들과 공유하고 있는 관리 계획의 유무

해당 습지와 관련된 람사르센터, 교육센터, 방문자 시설 등이 있다면 관련 내용 기술  
관련 웹사이트 주소

If the site is a formal transboundary site as indicated in section Data and location > Site location, are there shared management planning processes with another Contracting Party?

Yes /  No

Please indicate if a Ramsar centre, other educational or visitor facility, or an educational or visitor programme is associated with the site: (This field is limited to 1000 characters)

URL of site-related webpage (if relevant):

(복원 계획 수립)

특정 습지에 대한 복원 계획 유무 및 이행 여부

복원 계획이 있다면 대상 범위 기술(람사르습지 전체 / 일부)

현재 복원 계획에 대한 검토 및 수정 여부

해당 람사르습지에 대한 일반적 위협 또는 본 RIS에 파악된 위협 해소를 위한 복원이 진행되고 있다면 관련 내용 기술

추가 정보 기술

### 5.2.6 Planning for restoration

Is there a site-specific restoration plan?

Has the plan been implemented?

Yes /  No

The restoration plan covers:

Is the plan currently being reviewed and updated?

Yes /  No

Where the restoration is being undertaken to mitigate or respond to a threat or threats identified in this RIS, please indicate it / them: (This field is limited to 1000 characters)

Further information (This field is limited to 2500 characters)

(모니터링)

이행되고 있거나, 계획된 모니터링 관련 기술

- 수계 / 수질 / 토양 / 식물군락 / 식물종 / 동물군집 / 동물종(상세 기술) / 조류

기타 모니터링 관련 정보 기술

### 5.2.7 Monitoring implemented or proposed

Monitoring <sup>54</sup>	Status <sup>55</sup>

Please indicate other monitoring activities:

(This field is limited to 3000 characters)

## 6. 추가 보고서 및 문서

(참고 문헌 목록)

### 6.1 Additional reports and documents

#### 6.1.1 Bibliographical references

(This field is limited to 3000 characters)

(추가 보고서 및 문서)

- 동식물 분류 목록(온라인 양식으로 업로드)

- 상세 생태적 특성 기술서(온라인 양식으로 업로드)

- 국가 또는 지역 습지 목록에서의 습지 관련 기술 내용(온라인 양식으로 업로드)

- 람사르협약 조항 3.2 관련 보고서(온라인 양식으로 업로드)

※ 람사르협약 조항 3.2: 당사국은 '영토내에 있는 람사르습지의 생태적 특성에 변화가 일어날 경우 즉시 관련 정보를 람사르협약 사무국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 습지 관리 계획(온라인 양식으로 업로드)

- 기타 발간된 문헌 온라인 양식으로 업로드)

### 6.1.2 Additional reports and documents

- i. taxonomic lists of plant and animal species occurring in the site (see section 4.3)  
-UPLOAD via online form-
- ii. a detailed Ecological Character Description (ECD) (in a national format)  
-UPLOAD via online form-
- iii. a description of the site in a national or regional wetland inventory  
-UPLOAD via online form-
- iv. relevant Article 3.2 reports  
-UPLOAD via online form-
- v. site management plan  
-UPLOAD via online form-
- vi. other published literature  
-UPLOAD via online form-

Please note that any documents uploaded here will be made publicly available.

(습지 사진)

최소 하나 이상의 습지 사진 제출

- 저작권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

### 6.1.3 Photograph(s) of the Site

Please provide at least one photograph of the site:

File	Copyright holder	Date on which the picture was taken	Caption

I certify that I am the photographer, the valid holder of rights over the photograph(s), or an authorized representative of the organization which is the valid holder of rights over the photograph(s), and I hereby assign an irrevocable, perpetual and royalty-free right to use, reproduce, edit, display, transmit, prepare derivative works of, modify, publish, affix logos to, and otherwise make use of the submitted photograph(s) in any way, to the Ramsar Convention Secretariat, its affiliates and partners, for non-commercial purposes in conjunction with the mission of the Ramsar Convention. This use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internal and external publication and materials, presentation on the websites of the Ramsar Convention or any affiliated body, and any and all other communication channels with copyright attributed to the holder in all published forms. The full accuracy of all data submitted rests with the submitter, or organization submitting the photograph(s). In submitting, I hereby agree to the aforementioned terms, personally or on behalf of the organization of which I am an authorized official, certifying that the Ramsar Convention Secretariat, its affiliates and partners are explicitly held harmless for any and all costs, expenses, or damages arising from use of the submitted photograph(s) and any additional information provided.

(지정 인증 문서 및 관련 데이터)

지정 인증 문서(온라인 양식으로 업로드)

- 지정 일자

- 희망 인증서 발급 부수

#### 6.1.4 Designation letter and related data

Designation letter\*

-UPLOAD via online form-

Transboundary Designation letter

-UPLOAD via online form-

Date of Designation

Number of certificates wished (*The online RIS only accepts numeric values*)

# 맺음말

## 중복지정지역의 증가

국제보호지역은 자연자원의 보호와 이를 이용한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장소로서 그 의미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국제보호지역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국제보호지역 지정 건수는 물론, 중복지정지역도 늘어나고 있다.

국제보호지역들은 각각의 지정 목적이 있다. 람사르습지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내륙과 연안 습지를 보호하는 곳이며, 생물권보전지역은 생물다양성이 뛰어난 해양·연안·육상 생태계를 지정,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곳이다. 세계지질공원은 지형지질학적 유산을 보호·활용하기 위한 곳이며, 세계유산은 문화와 자연을 아우르며 인류 전체에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제공하는 지역을 지정하여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국제보호지역은 상호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 람사르습지와 생물권보전지역은 대상이 습지였을 경우 거의 중첩되며, 세계지질공원과 생물권보전지역 또한 지질다양성이 높은 지역은 생물들에게 다양한 서식처를 제공하여, 생물다양성이 뛰어난 곳이 많다. 세계유산은 등재 기준에서 나타나듯이 다른 세 가지 국제보호지역을 모두 충분히 포괄할 수 있다. 따라서 한 지역에 대한 국제보호지역 프로그램의 중복지정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일지도 모른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가 생물권보전지역(2002년) 지정을 시작으로 세계유산(2007년) 등재, 세계지질공원(2010년) 인증을 받았으며, 제주도의 몇 지역이 람사르습지로 등록되었다. 국내에서도 이제는 제주도만이 아니라 생물권보전지역과 세계유산(신안 다도해, 고창, 순천), 생물권보전지역과 세계지질공원(연천) 등 중복지정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다.

국제보호지역이 늘어나면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는 이를 지역 홍보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중복지정으로 인해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이 다양한 정보로 인해 혼란스러워하기도 한다. 또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한정된 예산을 서로 확보하고자 국제보호지역 안에서 경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동일한 지역이 중복지정되어 있으면 관리 기구마다 모니터링 등 비슷한 활동을 중복 실행하여 예산, 인력, 시간이 낭비되기는 문제를 낳기도 한다.

제주도의 경우를 살펴보면 중복지정된 곳들을 관리하는 데 여러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점차 경험이 쌓이면서 관리 기구를 통합·조율하고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림으로써 지역사회에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관리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는 국제보호지역 지정 취지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할 수 있다. 지역마다 상황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지정지역 관리에 대한 해법은 그 지역의 관리자와 지역사회가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제시하는 몇 가지 사례가 해법 모색에 참고가 되기를 기대한다.

## 관리 부서의 통합

국제보호지역들은 지정 목적이나 대상 지역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에도, 현장에서 중복지정지역에 대한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는 현실적으로 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각 국제보호지역 프로그램의 담당 부서가 중앙정부에서부터 지방정부까지 모두 다르며 이로 인해 부서별 관리 정책과 계획, 그리고 실행이 상이하여 예산의 중복지원 또는 부족, 보전 사업이 상충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복지정 보호구역 통합 관리의 핵심은 관리 조직 및 관리 계획의 통합이다. 대부분의 중복지정지역은 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지질공원, 람사르습지 등으로 관리를 주도하는 관리 조직이 서로 분리되어 있고, 상호 간의 정기적·공식적 소통 채널이 없는 상태로 개별 관리되고 있다. 관리 계획 또한 타 지정보호구역에 대한 고려 없이 수립·이행되고 있어 계획 상의 상충과 중복 활동이 발생한다.

따라서, 중복지정된 국제보호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부서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각 지정지역 담당 부서의 업무를 통합하고 조율할 수 있는 상위 부서나 상위 관리자가 있으면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중국의 경우 세계유산을 담당하는 담당 부처가 최근 3년 사이에 주택도시농촌개발부Ministry of Housing and Urban-Rural Development에서 자연자원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그리고 새롭게 개편된 생태환경부Ministry of Ecology and Environment로 바뀌는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에는 환경보호국에서 국립공원과 국제보호지역을 총괄하도록 하여 보호지역관리 체계를 일원화하였다. 지자체의 경우 우리나라 신안군에서는 유네스코의 국제보호지역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실·과를 하나로 통합, 세계유산과로 개편하여 생물권보전지역과 람사르습지 관리를 일원화함과 동시에 세계유산과 지질공원의 추진도 같은 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 동일한 지역 지정

각 국제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대상 지역이 일치하지 않고 조금씩 다른 것도 통합 관리의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된다. 효율적인 중복지정지역의 관리를 위해서는 해당 국제보호지역의 구획을 일치시키는 게 도움이 된다. 제주도는 4개의 국제보호지역으로 모두 지정된 곳이며, 제주도의 세계유산본부(제주세계유산센터)에서 관리를 총괄하고 있다. 그러나 지정된 지역이 상이함에 따라 보호지역별 프로그램이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세계유산의 명성에 다른 세 가지의 프로그램이 묻히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생물권보전지역도 도 전체로 확대되고, 세계유산지역도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이런 문제는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안의 경우에는 생물권보전지역을 2단계에 걸쳐 추진하였다. 1단계에서는 주요 지역만을 핵심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였으며, 이후 지정효과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이 높아져 신안군 전체로 생물권보전지역을 확대하게 되었다. 그 후에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신안군 전체 지역의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확대 지정하였다. 이로써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과 국내법에 근거한 보호지역이 일치하게 되었으며, 세계유산지역으로 제안된 곳도 역시 동일한 지역이다. 신안군에서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람사르습지도 동일한 면적으로 확대 지정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동일한 지역에 동일한 면적의 보호지역이 지정되면 각 프로그램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 세계유산의 유산지역에 대한 철저한 보전 철학은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생물다양성 보전과 관리에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세계유산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유산 완충구역과 생물권보전지역의 완충지역은 핵심 보호지역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하고,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충분히 넓은 지역을 포함하는 협력지역은 유산(생태)관광, 유산(생태)교육, 인식 증진 등을 위한 장소로 활용되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하나의 국제보호지역이 지정되고 또 다른 국제보호지역을 준비할 경우, 준비단계에서부터 구획화에 대한 고민과 계획을 통해 중복지정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불필요한 예산과 인력의 낭비는 최소화할 수 있다.

### 소통 강화 및 협력 시스템 마련

통합 관리에 있어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다른 보호지역에 대한 이해와 각 보호지역 담당자들, 이해 당사자들 간의 원활한 소통이다. 보호구역별로 특성과 관리상 강조되는 부분들이 상이하므로 통합 관리 계획의 수립부터 이행까지 모든 단계에서 상시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중복지정지역의 경우, 각 지정지역의 규모와 상황, 여건에 따라 관리 부서의 통합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하나의 부서에서 중복지정지역을 통합 관리하면 비슷하나 서로 다른 국제보호지역 간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의 부서에서도 담당자가 서로 다른 독립된 업무에 집중하고, 실제로 다른 업무자와 정보공유가 되지 않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한다. 더욱이 통합 관리를 하고 있지 않거나 불가능할 경우, 중복지정지역이라 할지라도 각 지정지역의 현황과 관리·운영에 대한 정보는 거의 공유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실제로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국제보호지역을 관리·운영하는 경우, 각 국제보호지역이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지역에서 활동하는 질 높은 인력 확보 등에서 서로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기도 하고, 중복된 관리 활동이나 예산 집행 등 관리 효율성을 저하하고 불필요한 노력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각 지정지역의 업무 담당자 간에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것에서 기인하기도 하고, 지역 전체적인 관점에서 지정지역과 지역사회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데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불필요한 중복된 노력과 예산 집행, 해당 지역이 경쟁관계에 놓이는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고 실질적인 협력이 될 수 있도록 각 국제보호지역 간 가치와 의미, 특성, 관리·운영과 관련한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통합적인 관점에서 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 부서 및 업무 담당자 간 정기적인 협의회의, 교류회의 등의 협력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통합 관리 계획 수립

협력 시스템 중의 하나로 통합 관리 계획 수립을 검토할 수 있다. 관리 부서가 통합 또는 단일화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 부서들이 함께 통합적인 관리 계획을 세운다면 해당 보호지역을 관리하는 데 중복이나 예산 낭비를 피하고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물론, 관리 조직의 통합이 이루어지면 중복지정지역의 통합 관리 계획은 더욱 새롭게 작성되어야 한다. 기존의 개별 관리 계획은 통합 계획 작성의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단기 관리 계획뿐만 아니라 중장기 관리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여 예산, 업무, 자원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추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해당 국제보호지역의 분야별 이해 당사자들을 선별하여 통합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서는 대상 지역의 분야별 위협 요소, 필요한 관리 활동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 개별 관리 계획과의 비교검토를 거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기존 관리 활동들은 개선하고, 모니터링과 같이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관리 활동들은 통합하고, 통합 관리에 필요한 새로운 관리 활동들은 추가하여야 한다.

### 경험 및 정보의 축적

보호구역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 관리자들이 가진 역량이다. 특화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느 수준의 정보와 지식은 습득할 수 있겠지만 이는 실제 장기간의 관리 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과는 비교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호구역 관리는 정부가 주도하고 있고 정부의 정책상 정기적인 인사이동이 필수적으로 따른다. 이러한 이유로 보호구역 관리를 통해 경험을 쌓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쌓아온 지식과 경험 자산도 온전히 전달되기는 어렵다.

2008년 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이후 습지 보전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과 제도적 장치들이 엄청나게 성장했다. 하지만 냉정하게 지난 10년간 습지 관리라는 측면에서는 큰 발전이나 성과를 얻을 수 없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보호구역 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이나 개인을 육성하는 것이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는 데 꼭 필요하다.

## 전문가 확충

우리나라에서는 보호지역관리를 주로 해당 지자체에서 맡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보호지역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순환보직제에 따라 수시로 이동하여 보호지역 관리를 위한 지식과 경험이 체계적으로 축적·전달되기가 쉽지 않은 여건이다. 세계지질공원은 지질공원마다 지질 전문가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 업무 연속성과 질적 관리에 도움이 되고 있다. 다른 국제보호지역에서도 전문가 혹은 전문 관리자를 배치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지역을 관리할 수 있고, 각 국제보호지역 간의 교류와 협력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 중복지정지역 관리 제도화

개별 보호구역에 대한 법적 관리 방안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은 갖추어져 있으나 통합 관리에 관한 사항들은 아직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제도적 뒷받침이 실현된다면 인적, 정책적 변화에도 통합 관리의 기초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지자체장의 이해 증진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내의 국제보호지역 관리는 주로 지자체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장의 국제보호지역에 대한 인식과 관심은 보호지역 관리에 매우 중요하다. 한때는 지자체장들이 자신의 임기 중에 새로운 업적을 쌓는 데 신경을 많이 썼다면 지금은 해당 지역이 지닌 자산 중 하나로 국제보호지역을 이해하고 활용하려는 지자체장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국제보호지역 지정 건수 늘리기에 앞서 국제보호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정된 곳을 잘 관리·운영하여 그 지역을 외부에 홍보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면 아주 바람직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국제보호지역 관련 국내 정부 부처나 기관에서 보호지역 관리자들과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한다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 통합 홍보

국제보호지역을 지정하면 해당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로고의 영향력이 크기에 세계 여러 곳에서 지금도 국제보호지역 지정을 위해 애쓰고 있다. 그런데 중복지정된 곳은 여러 로고가 혼재한다. 방문객들에게는 홍보 효과를 높인다기보다는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안내판을 각각 세우는 게 아니라 중복지정된 곳을 통합하여 소개한다면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요즘 제주도에서는 지질공원 행사에 생물권보전지역 로고도 같이 포함하여 제주도가 생물권보전 지역으로도 지정되어 있다는 것을 함께 홍보하고 있다. 제주도의 생물다양성뿐 아니라 지질유산도 가치가 크기 때문에 방문객들은 이를 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서 유익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여러 제안을 당장 실현하기가 어렵다면, 홍보물 제작부터 함께 시작할 수 있다. 이

런 노력으로 국제보호지역이 우리가 가진 자연자원을 보전하면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 국제보호지역 - 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람사르습지

초판 1쇄 인쇄 2019년 12월 19일

초판 1쇄 발행 2019년 12월 19일

기획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지은이 김은영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과학청년팀장  
문경오 (재)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사무국장  
정수정 환경교육연구소 소장  
유완상 국가지질공원사무국 책임연구원  
서승오 동아시아람사르습지센터 센터장

펴낸곳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펴낸이 김광호  
주소 서울시 중구 명동길(유네스코길) 26  
전자우편 sc@unesco.or.kr  
홈페이지 www.unesco.or.kr

편집 김은영 최연수  
감수 조도순  
교열 윤문 박기원  
디자인 진민선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9

ISBN: 979-11-90615-01-3 [03450]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간행물등록번호: SC-2019-BK-6

이 책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기획하여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부의 지원으로 수행한 연구의 결과물입니다. 동 출판물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과 방향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하며,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내용을 이용할 때에는 유네스코(UNESCO Open Access Repository, <http://en.unesco.org/open-access/>)의 이용약관을 준수해야 합니다.

비매품/무료



9 791190 615013  
ISBN 979-11-90615-01-3

